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9.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9.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I. 서 론

- 본 심층평가는 2019년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본 특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 본 연구는 제도 현황, 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제도 현황) 제도의 개요, 제도의 운영 현황과 주요국의 저축지원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함
- (타당성 평가) 정부 개입의 근거와 필요성, 지원방법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여타 정부정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함
- (효과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재산형성 효과, 수혜자의 특성 등을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납세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 결론으로 타당성, 효과성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과세특례의 목표와 합치하는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고 세수효과를 분석함

II. 제도 현황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생계형 저축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임
 - (정책 대상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임

- (가입방식) 금융회사 및 6대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 등 포함) 가입 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
- (가입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5천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없음
- (세제혜택) 2019년까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가입 현황) 2018년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약 427만명이며 해당 계좌의 한도 설정금액의 총합은 128조 8,657억원임
 - 계좌당 평균한도는 1,604만원, 가입자당 약 2개의 계좌를 가져 가입자당 평균 한도는 약 3천만원임

<표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명, 억원, 만원)

기준년월	계좌 수	가입자 수	총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평균 한도
2018. 12	8,035,364	4,270,259	1,288,657	1,604	3,018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자 유형별 현황)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92.5%인 약 395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
 - 다음으로 장애인이 6.7%인 약 28.5만명 그리고 상이자가 0.5%인 약 2만명 순

<표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 억원, 만원)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운동 부상자
계좌 수 (비중)	7,435,646 (92.54)	536,983 (6.68)	7,308 (0.09)	39,687 (0.49)	13,498 (0.17)	1,729 (0.02)	513 (0.01)
가입자 수 (비중)	3,951,333 (92.53)	285,321 (6.68)	3,376 (0.08)	19,778 (0.46)	9,386 (0.22)	771 (0.02)	294 (0.01)
총한도금액 (비중)	1,198,401 (93.00)	80,879 (6.28)	1,172 (0.09)	6,602 (0.51)	1,220 (0.09)	283 (0.02)	100 (0.01)
계좌당 평균 한도	1,612	1,506	1,604	1,663	904	1,635	1,950
가입자당 평균 한도	3,033	2,835	3,473	3,338	1,300	3,666	3,403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자당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설정 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곤 평균 약 3천만원선임
- (가입금액 규모별 분포) 2018년 12월 기준, 전체 비과세종합저축 중 한도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비중이 24.6%로 나타남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한도를 지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하나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만원)

가입규모	계좌 수	비중	가입자 수	비중	총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100만원 이하	179,021	2.2	147,262	3.4	1,334	75
300만원 이하	759,860	9.5	553,211	13.0	16,995	224
500만원 이하	961,961	12.0	634,842	14.9	43,893	456
1,000만원 이하	2,155,169	26.8	1,154,644	27.0	191,058	887
2,000만원 이하	1,979,762	24.6	842,102	19.7	321,708	1,625
3,000만원 이하	982,750	12.2	277,391	6.5	266,335	2,710
4,000만원 이하	397,481	4.9	122,141	2.9	144,933	3,646
5,000만원 이하	619,360	7.7	538,666	12.6	302,401	4,882
합계	8,035,364	100	4,270,259	100	1,288,657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조세지출규모)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대한 2018년 기준 조세지출규모는 3,206억원임
 - 조세지출예산서상 동 항목 조세지출 규모는 2011년 3,284억원에서 2014년 4,434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7년 실적치 3,149억원, 2019년 전망치 3,413억원 수준을 나타냄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 9개 중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9년 전망 기준 42.14%인 5,146억원에 이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27.95%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냄

- (해외사례)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사 국가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
 - 미국은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경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저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금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저축원금 550만엔 한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Ⅲ.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함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저축률 제고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또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 부담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현재 한국의 총저축률은 36.3%로 독일,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가계저축률도 2010년 4.1%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7.6% 수준
- 또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 관점, 사회정책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 (지원대상의 적절성) 본 과세특례의 가입대상이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
 -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전체 장애인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자가 11.3% 존재
 -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
 -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소득요건을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
 - 그러나 재산요건을 설정한 과세특례 상품은 없는 상황

- (지원방식의 적정성) 본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의 비과세방식,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5천만원 납입한도 및 다양한 가입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과세특례방식: 금융소득 비과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방식이 보다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과세·감면방식은 적절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적용 금융상품의 가입률 보다는 높은 수준
 - 조합 등의 예탁금 가입률은 2016년 전체 가입 대상자의 77.3%인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가입률이 각각 0.49%, 0.08%
 - 그러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동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 본 과세특례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저해하는 효과는 없음
 -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로 장기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그러나 본 과세특례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저해하는 효과는 없음

- (납입한도: 5천만원) 납입한도는 세수손실이라는 조세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규모와 자산이동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 총납입한도와 함께 저축원금 발생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가입 금융상품의 다양성) 본 과세특례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법정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납입한도액 내에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
 -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결과, 본 과세특례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예·적금에 집중되어 있음
 - 예·적금 성격의 금융상품 97.05%, 채권 등 1.42%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0.23% 순으로 저축 성격의 금융상품에 편중
 - 이는 가입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에 한계가 있을 의미

- (유사·중복 여부)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 국세청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합 등 예탁금 가입자의 84.61%,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의 79.02% 그리고 조합 등 출자금 가입자의 52.18%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 저축자들의 중복 가입이 많은 상황
- 또한 현행 조세지출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용 중

IV. 효과성 평가

- (제도의 활용도) 은행연합회 자료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약 53.2%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
 -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본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36%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납세자료 기준 상대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약 70%가 다른 과세특례 상품을 활용 중인 반면 비가입자 중 다른 어떤 특례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5%를 차지
 - 가입자 중 약 70%가 다른 과세특례 상품을 이용 중이며, 그 중 대부분은 조합 예탁금·출자금 대상 과세특례임
- (가입자 특성)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 중인 저축자일수록 본 과세특례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소득 하위 5분위의 가입률은 평균 약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분위의 가입률은 약 69%임
 - 금융소득 상위 3분위가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약 62.5%가 비과세종합저축을 보유 중이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약 0.8%에 해당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금융소득은 전체의 1.3%
- (경제적 효과성)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 자산이동, 자산형성지원 등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2012~2017년간 가입 자격이 걸린 1954년생과 1955년생 간의 저축 행태 등을 비롯한 평균적인 정책효과를 비교한 결과
 - 데이터 제약으로 자산이동 효과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또한 계좌당 약 5만원의 비과세 혜택(계좌당 약 33만원의 이자 발생)이 나타나 측정가능한 정도의 행태 변화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판단
- (설문을 통한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전후를 비교하여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1.1%를 차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조사됨
 - 반면, 해지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이 저축률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지 이유의 상당수가 목돈 마련 등을 이유로 제시
-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9.4%로 나타남
- 그 중 가입자의 79.1%가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매우 또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가입자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의 재산형성 지원효과를 인지
 - 해지자의 경우도 30.2%가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재산형성지원효과는 높은 것으로 파악

V. 결론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는 충분하고, 저축지원과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단기적으로는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 제도의 설계상 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

가되며, 현행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됨

- 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과세특례제도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사·중복 제도를 통합하여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건의함

목 차

I. 서론	21
II.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현황	25
1. 제도의 현황	27
가.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27
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연혁	29
2. 운영 현황	31
가. 가입 현황	33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34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36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38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38
나. 비과세종합저축의 위상	40
4. 해외사례	42
가. 미국	42
나. 영국	46
다. 캐나다	47
라. 호주	49
마. 일본	52
바. 프랑스	55
사. 해외사례의 시사점	57
III. 타당성 분석	59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61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61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65
2. 지원대상의 적정성	68
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68
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77
3. 지원방식의 적정성	85
가. 과세특례방식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85
나.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및 중도인출의 허용	91
다. 납입한도	93
라. 가입 금융상품	96
4.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99
가. 과세특례 금융상품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99
나.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105
IV. 효과성 분석	121
1. 제도의 실효성	123
가. 절대적 활용도	123
나. 상대적 활용도	127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129
가. 개요	129
나. 자료	131
다. 분석모형	135
라. 분석 결과	137
3. 수혜자 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158
가. 금융소득 수준별 수혜자 분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 기준	158
나. 소득수준별 수혜자 분포: 비과세금융소득 기준	159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61
1. 분석 결과의 요약	163
가. 타당성 분석	163

나. 효과성 분석	166
2. 제도 개선방안	167
참고문헌	174
<부록 I> 부표	179
<부록 II> 설문조사 분석	185
1. 설문조사의 개요	191
2. 설문분석의 결과	195
가.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 효과	195
나. 비과세 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206

표 목 차

<표 II-1> 기존 저축지원 상품과의 비교	28
<표 II-2> 조세지출 현황	29
<표 II-3> 비과세종합저축의 연혁	29
<표 II-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33
<표 II-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4
<표 II-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5
<표 II-7>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7
<표 II-8>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38
<표 II-9>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39
<표 II-10>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40
<표 II-11>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41
<표 II-12> Saver's credit(2019)	44
<표 II-13> 미국 노인·장애인 세액공제의 예	45
<표 II-14> 캐나다 RDSP 소득별 보조금	48
<표 II-15> 캐나다 TFSA 연도별 납입한도	49
<표 II-16> 호주 super co-contribution 소득별 납입액별 보조금	51
<표 II-17>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55
<표 III-1> 경제활동인구(2018년 기준)	73
<표 III-2>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비교	74
<표 III-3> 연령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75
<표 III-4> 장애인 연구현황(2017년 기준)	78
<표 III-5>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2018년 기준)	79
<표 III-6>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현황(2017년 기준)	81
<표 III-7>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 인구 현황(2017년 기준)	83
<표 III-8>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지원방식 비교	86

<표 III-9> 금융소득구간별 금융소득자 인원 현황(2012년 기준)	89
<표 III-10> 만 65세 이상 금융소득 현황(2017년 기준, 구간별 1,000명)	90
<표 III-11>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납입한도 비교	93
<표 III-12> 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상품 현황(가입자 3,611명 기준)	98
<표 III-1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 현황(가입자 3,611명 기준)	99
<표 III-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복 가입 수 현황(N=3,611명, 65세 이상 저축자)	101
<표 III-15> 비과세종합저축 중복 가입자의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현황 (N=3,611명, 65세 이상 저축자)	102
<표 III-16>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103
<표 III-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요건	105
<표 III-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106
<표 III-19>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유형	108
<표 III-20>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110
<표 III-21>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115
<표 III-22>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 요약	118
<표 IV-1> 금융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125
<표 IV-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상품 종류	126
<표 IV-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 및 가입현황	127
<표 IV-4> 비과세종합저축 외 다른 과세특례 상품 보유 여부	127
<표 IV-5> 비과세종합저축 및 타 특례 상품 중복 보유자의 과세 특례 상품 구성 ...	128
<표 IV-6> 연도별·출생연도별 가구수	131
<표 IV-7> 기초통계 1954년생(2012~2017년 평균)	133
<표 IV-8> 기초통계 1955년생(2012~2017년 평균)	134
<표 IV-9>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37
<표 IV-10>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41
<표 IV-11>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42
<표 IV-12>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소득 5분위 기초통계	143
<표 IV-13> 금융소득 5분위별 자산 규모	144
<표 IV-14> 금융소득 5분위별 소득 규모	146

<표 IV-15> 자산 및 소득 변수의 상관관계	148
<표 IV-16> 저축액 구간별 평균 저축 금액 및 가구 비율	149
<표 IV-17>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평균 저축금액 및 가구 비율	150
<표 IV-18>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평균 저축금액 및 가구 비율	151
<표 IV-19> 저축액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152
<표 IV-20>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152
<표 IV-2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	153
<표 IV-22> 저축액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만 65세 이상 가구)	153
<표 IV-23>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만 65세 이상 가구) ...	153
<표 IV-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 (만 65세 이상 가구)	154
<표 IV-25> 금융소득 분위별 가입현황	159
<표 IV-26> 금융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160
<표 IV-2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현황	160
<표 V-1> 국세청 미시자료 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 (N=10,000, 금융소득분위별 1,000명)	169
<표 V-2> 가입대상 개선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71
<표 V-3> 가입대상 개선 2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자 제외	173
<부표 I-1> 가입대상 개선방안 1: 소득분위별 가입자 및 조세지출액 분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79
<부표 I-2> 가입대상 개선방안 2: 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자 제외)	179
<부표 I-3>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총 납입한도 4천만원으로 인하	180
<부표 I-4>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총 납입한도 3천만원으로 인하	180
<부표 I-5>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181

<부표 I-6> 가입대상 개선방안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총 납입한도 4천만원 인하	181
<부표 I-7> 가입대상 개선방안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총 납입한도 3천만원 인하	182
<부표 I-8> 가입대상 개선방안 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182
<부표 I-9> 가입대상 개선방안 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총 납입한도 4천만원 인하	183
<부표 I-10> 가입대상 개선방안 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금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총 납입한도 3천만원 인하	183
<부표 I-11> 가입대상 개선방안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184
<부표 II-1> 조사 설계	185
<부표 II-2> 서울/인천 지역 주민등록 인구현황 - 2018년 12월 말 기준	186
<부표 II-3> 표본할당(안) 만 65세 이상 400명 기준	186
<부표 II-4> 실사지점 선정 400명 기준	186
<부표 II-5> 조사방법별 최종 표본 수	187
<부표 II-6> 조사내용	187
<부표 II-7> 응답자 특성	188
<부표 II-8>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	190

그림 목 차

[그림 II-1] 65세 이상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현황	36
[그림 II-2] 2018년도(전망치)의 조세지출 규모	41
[그림 III-1]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62
[그림 III-2] 한국의 가계저축액과 가계저축률 추이	63
[그림 III-3]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67
[그림 III-4]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	69
[그림 III-5] 총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계	70
[그림 III-6] 연령별 주민등록 등록 인구분포(2018년말 기준)	71
[그림 III-7]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현황(2015년 기준)	72
[그림 III-8] 만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 추이	73
[그림 III-9]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현황(2016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기준)	79
[그림 III-10] 월소득 구간별 분포(2016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기준)	80
[그림 III-11]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기준)	82
[그림 III-12]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자 분포(2017년 기준)	91
[그림 IV-1] 저축액 기준 - 자산총액 65세 이상	154
[그림 IV-2] 저축액 기준 - 순자산액 65세 이상	155
[그림 IV-3] 저축액 기준 - 금융자산 65세 이상	155
[그림 IV-4] 저축액 기준 - 정상소득 65세 이상	155
[그림 IV-5] 저축액 기준 - 금융소득 65세 이상	156
[그림 IV-6]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인식 정도	156
[그림 IV-7] 비과세종합저축의 효용성: 목돈마련에 도움 정도	157
[부그림 II-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	189
[부그림 II-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	190

[부그림 II-3]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191
[부그림 II-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상황(1)	192
[부그림 II-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상황(2)	193
[부그림 II-6]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및 가입동기(1)	194
[부그림 II-7]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및 가입동기(2)	194
[부그림 II-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195
[부그림 II-9]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가입 자격(복수응답)	195
[부그림 II-1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저축 종류(복수응답)	196
[부그림 II-1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중 중도 인출 경험 및 이유	196
[부그림 II-12] 비과세 종합저축 개선방향	197
[부그림 II-13] 비과세 종합저축의 효용성: 목돈 마련에 도움 정도	198
[부그림 II-14] 비과세 종합저축의 효용성: 저축률 향상 정도	198
[부그림 II-15]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기간(해지자 기준)	199
[부그림 II-16] 비과세 종합저축의 해지 이유	199
[부그림 II-17] 비과세 종합저축의 재가입 의향(해지자 기준)	200
[부그림 II-18] 비과세 종합저축 인지 정도	200
[부그림 II-19] 비과세 종합저축에 비가입한 가장 큰 이유	201
[부그림 II-20]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1)	201
[부그림 II-21]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2)	202

I. 서론



I. 서론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9년도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2019년 12월 31일)을 앞두고 동 제도의 연장, 재설계,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
 - 2018년 조세지출규모: 3,206억원(2019년 3,413억원 추정)

- 노년층,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본 심층평가의 대상
 - 가입대상자: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상이자 ⑤ 기초생활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과세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과 「조특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본 과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본 후, 정책목적과 대상, 그리고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위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함
 - 특례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과 필요한 자료의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함
 - 이외에 특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분석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의 현황과 해외사례, 유사 재정사업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본 과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로서 정부개입 근거와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그리고 타 과세특례제도 및 재정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함
- 제4장에서는 효과성 평가부분으로 본 과세특례의 활용도(절대적, 상대적 활용도), 경제적 효과로서 저축효과, 자산이동효과 및 자산형성지원효과 그리고 형평성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부록>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분석을 기술함

Ⅱ.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현황



II.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가.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 (정책 목적)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특례임
 - 2014년 10월 법 개정 시 중복되는 과세특례제도인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재설계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함

- (정책대상자 및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과 「조특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 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정책대상자와 비과세종합저축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을 1세씩 상향('15년: 만 61세, '16년: 만 62세, '17년: 만 63세, '18년: 만 64세, '19년: 만 65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6대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포함) 일 것과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비과세종합저축을 취

급하는 금융회사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및 출금하는 비과세 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수혜 내용)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함

- 여기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공제회는 6개 직역의 공제회

-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표 II -1> 기존 저축지원 상품과의 비교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근거조문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9조
도입연도	2015.1.1. 명칭변경 (2000.10.21.)	2000.10.21.	1999.12.28.
일몰기한	2019.12.31.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재설계	2014.12.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세 이상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3천만원	• 20세 이상: 1천만원 •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 3천만원
의무납입기간	-	-	1년 이상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②)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⑤)

□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예산서상 동 항목 조세지출 규모는 2011년 3,284억원에서 2014년 4,434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7년 실적치 3,149억원, 2019년 전망치 3,413억원 수준을 나타냄

<표 II -2>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전망)	2019 (전망)
소득세	3,284	3,992	4,290	4,434	3,647	3,742	3,149	3,206	3,41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 연혁

<표 II -3> 비과세종합저축의 연혁

명칭	제개정 년월일	개정 내용
생계형 저축	2000.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상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저축상품: 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 1인 1통장, 문구표시(“생계형저축”) ·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이 2,000만원 이하 · 취급기관: 은행, 보험, 신탁 등 금융기관 · 계약체결 또는 해지, 이전시 생계형저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자 확대조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취급기관 추가: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200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통장 삭제, 문구표시 유지

명칭	제개정 년월일	개정 내용
	2003.12.30.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저축상품 추가: 투자신탁
	2004.7.26	· 가입연령 하향조정: 60세 이상의 노인 · 가입한도 상향조정: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
	2004.12.31	· 가입대상자 확대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06.12.30	· 일몰기한 연장: ~2008년말 · 가입대상자 확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2008.12.26	· 일몰기한 연장: ~2011년말 · 가입대상자 축소: 60세 이상의 노인(여성 55세 조건 삭제)
	2010.2.18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취급기관 확대 조정: 과학기술인공제회
	2011.12.31	· 일몰기한 연장: ~2014년말
비과세 종합 저축	2014.12.23	· 일몰기한 연장: ~2019년말 · 가입연령 상향조정: 65세 이상인 거주자 · 가입한도 확대조정: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저축 계약금액 차감한 금액) - 생계형저축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통합(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액 차감) - 계약금액총액 계산방법, 운용관리방법 제시
	2015.2.3	· 가입절차 및 한도 명시화 -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 모든 가입 금융기관 및 공제회총액이 5천만원 이하 (전입시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금융소득은 과세
	2016.2.5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중도인출허용(조특령 제82조의2 제3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특법 및 조특령, <http://www.law.go.kr/lsJoHstProc.do?joHstNo=151&lsJoEfYdSeq1=1512618&lsJoEfYdSeq2=1514875&lsiSeq=206422&joSeq=48798516&gubun=1&mode=100&lsiSeqs=53131,5364,6386,54893,55621,6096,66205,76552,78441,90473,98310,111849,112369,113166,120467,165311,177671>, 검색일자: 2019. 4. 24.

<http://www.law.go.kr/LSW/lsJoHstProc.do?joHstNo=81&lsJoEfYdSeq1=1507103&lsJoEfYdSeq2=1524149&lsiSeq=208292&joSeq=49458906&gubun=1&mode=100&lsiSeqs=54727,58254,57897,59092,62374,66868,102732,168104,180918,183033>, 검색일자: 2019. 4. 24

2. 운영 현황

-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금융권 및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두 합산하여 5천 만원을 한도로 함

- (금융권 상품) 별도의 상품이 아닌 일반 금융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보험)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 보험상품의 자격대상이 되면 비과세종합저축 보험 특약 가입
 - 일반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에 보험차익(보험금 -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함

- (공제회 상품)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가입방법)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승인을 받는 방식

- (대한지방행정공제회)¹⁾ 「한아름목돈예탁」 공제회 회원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이 있는 경우,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예치할 수 있음
 - (가입방법) 온라인으로 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확인원 등
 -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고, 이자지급방식이 만기 시 지급, 또는 매월 지급으로 구분되며, 만기 이자지급식인 경우 1년 이상이면 2.95%, 매월 이자지급식인 경우 2.91%(6개월 미만 단기 가입이면, 만기지급식 2.45%, 매월 지급식 2.44%)

- (군인공제회)²⁾ 「목돈수탁/비과세종합저축」 공제회 회원 중 자격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1) 행정공제회, <http://www.poba.or.kr/product/sizable04.jsp?gMenuCode=CT02050500>, 검색일자: 2019. 4. 24

2) 군인공제회, <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85>, 검색일자: 2019. 4. 24

- 이자는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하며, 가입기간 2년인 경우 만기지급식 금리는 2.78%, 매월지급식 금리는 2.74%
 - 「목돈수탁저축」은 100만원 이상 7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 (경찰공제회)³⁾ 「목돈수탁복지저축」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총 3년 이상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자격 여부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설정 가능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일 1건으로 제한
 - 만기 일시지급식이면 연복리 2.758%를, 매월 이자지급식이면 단리로 2.72%
 - 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을 1세씩 상향(2015년 만 61세, 2016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
- (한국교직원공제회)⁴⁾ 「목돈급여」 연복리 2.7%로,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상품이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가입기간에 제한 없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적립형은 3년형은 277만원, 5년형은 166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
- (대한소방공제회)⁵⁾ 「목돈수탁급여」 공제회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누구나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범위 내에서 1인 10계좌까지 분산납입 가능
- 해당 상품에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
 -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가능하고 이자지급방식은 매월 이자지급방식, 만기 시 이자지급방식으로 구분
 - 3년 기준으로 만기 이자지급방식 및 매월 이자지급방식 금리는 2.9%
- (과학기술인공제회)⁶⁾ 공제회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목돈(일시금형)」과 「목돈마련(적금형)」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음

3) 경찰공제회, <https://www.pmaa.or.kr/www/1461127058280/content.do>, 검색일자: 2019. 4. 24

4)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s://www.ktcu.or.kr/SV/SV-P030T01.do>, 검색일자: 2019. 4. 24

5) 대한소방공제회, <https://www.focu.or.kr/www/contents.do?pid=HBSLT1001>, 검색일자: 2019. 4. 24

6) 과학기술인공제회, <https://www.sema.or.kr/mtlty/large/busIntrLump.do?menuId=MEU201700191>, 검색일자: 2019. 4. 24

- 「목돈(일시금형)」의 가입한도는 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연금지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연금지급형은 3.4% 변동금리이며, 나머지는 모두 고정금리(3년식인 경우 3.4%)
- 「목돈마련(적금형)」의 가입한도는 3년형 월 265천원, 5년형 월 155천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복리 3.4%를 적용
- 해당 상품 가입자 중 자격요건이 되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 가입 현황

- 2018년 12월 말 기준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약 427만명이며 해당 계좌의 한도 설정금액의 총합은 128조 8,657억원임
 - 2015년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좌 수와 가입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계좌당 평균한도는 1,604만원, 가입자당 약 2개의 계좌를 가져 가입자당 평균한도는 3천만원임
 - 한도 3천만원의 기존 생계형저축이 2015년 1월 이후 한도 5천만원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며, 계좌당 평균한도는 증가 추세에 있음
 - 공제회 가입분의 경우 공제회별로 가입상품이 상이하고 통계작성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비과세종합저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입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

〈표 II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명, 억원, 만원)

기준년월	계좌 수	가입자 수	총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평균 한도
2015.12	8,783,445	4,575,643	1,285,890	1,464	2,810
2016.12	8,463,116	4,446,513	1,294,802	1,530	2,912
2017.12	8,178,355	4,337,577	1,289,446	1,577	2,973
2018.12	8,035,364	4,270,259	1,288,657	1,604	3,018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규모별 가입현황에서 전체 비과세종합저축 중 한도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계좌 수가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이 24.6%로 나타남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한도인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하나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이하 소액가입자보다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계좌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저축여력이 있는 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도가 저소득층보다 높을 수 있음을 의미

〈표 II -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 억원, 만원)

가입규모	계좌 수	비중	가입자 수	비중	총한도금액	계좌 당 평균 한도
100만원 이하	179,021	2.2	147,262	3.4	1,334	75
300만원 이하	759,860	9.5	553,211	13.0	16,995	224
500만원 이하	961,961	12.0	634,842	14.9	43,893	456
1,000만원 이하	2,155,169	26.8	1,154,644	27.0	191,058	887
2,000만원 이하	1,979,762	24.6	842,102	19.7	321,708	1,625
3,000만원 이하	982,750	12.2	277,391	6.5	266,335	2,710
4,000만원 이하	397,481	4.9	122,141	2.9	144,933	3,646
5,000만원 이하	619,360	7.7	538,666	12.6	302,401	4,882
합계	8,035,364	100	4,270,259	100	1,288,657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와 가입액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가입유형별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함

- 2018년 12월 말 현재 가입자 유형별 현황에서 65세 이상이 92.5%인 약 395만명, 장애인이 6.7%인 약 28.5만명 그리고 상이자가 0.5%인 약 2만명 순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42만명임을 고려할 때 약 53% 정도의 65세 이상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
 - 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65만명 중 가입은 9천명선에 그쳐 1%도 미치지 못하는 가입률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저축여력이 본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음
- 가입자당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설정 한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곤 약 3천만원선에서 평균한도를 형성하고 있음
 - 계좌당, 가입자당 평균 한도는 대략적으로 유사한 가운데 낮은 저축여력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한도 금액이 다른 가입대상자에 비해 낮은 수준

〈표 II -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 억원,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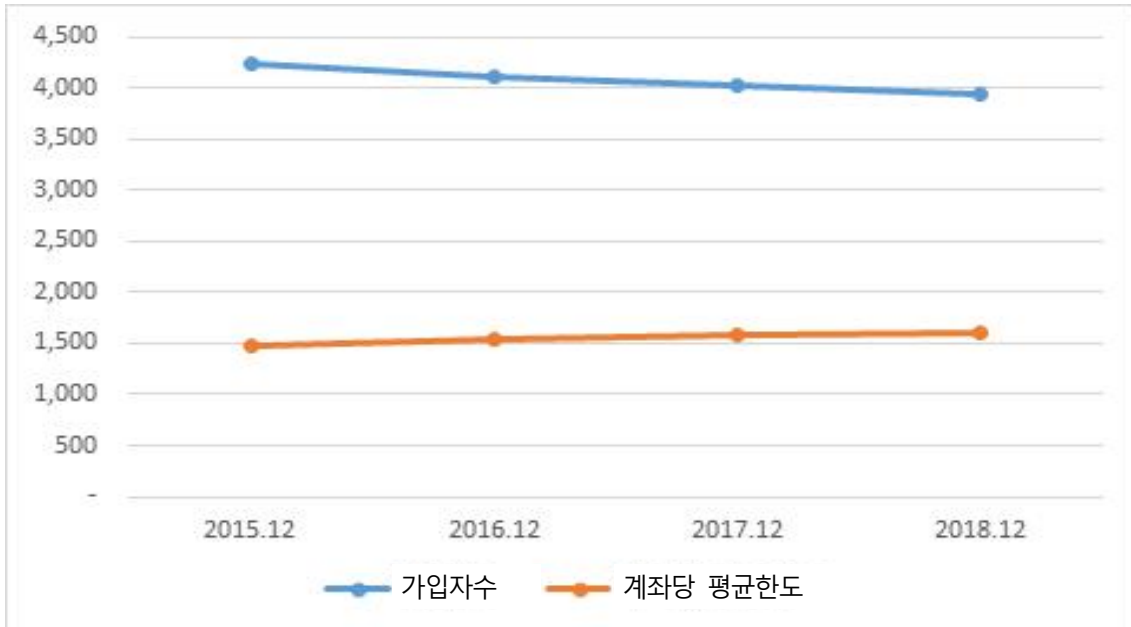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운동 부상자
계좌 수 (비중)	7,435,646 (92.54)	536,983 (6.68)	7,308 (0.09)	39,687 (0.49)	13,498 (0.17)	1,729 (0.02)	513 (0.01)
가입자 수 (비중)	3,951,333 (92.53)	285,321 (6.68)	3,376 (0.08)	19,778 (0.46)	9,386 (0.22)	771 (0.02)	294 (0.01)
총한도금액 (비중)	1,198,401 (93.00)	80,879 (6.28)	1,172 (0.09)	6,602 (0.51)	1,220 (0.09)	283 (0.02)	100 (0.01)
계좌당 평균 한도	1,612	1,506	1,604	1,663	904	1,635	1,950
가입자당 평균 한도	3,033	2,835	3,473	3,338	1,300	3,666	3,403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65세 이상 대상자의 가입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계좌당 평균 한도는 1,500만원선을 유지하는 추세
 - 이러한 추세는 2015년 제도 개편 시 가입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60세 이상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가입대상자가 축소되어 나타난 결과

[그림 II -1] 65세 이상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현황

(단위: 명, 만원)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 2018년 12월 말 가입자 연령별 가입 현황에서, 가입자 수는 65세부터 69세 사이가 28%, 약 120만명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입자당 평균 한도 금액은 70~74세가 3,12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
 - 가입자는 65~69세가 28%, 70~74세가 24.2%, 75~79세가 20.5%를 차지하여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한편, 가입자당 평균한도 또한 3,100만원 선으로 가장 높은 저축여력을 보임

- 본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65세 미만 가입자 또한 약 41만명 수준이며 가입자당 평균 한도는 2,782만원으로 65세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
 - 이는 본 과세특례제도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을 반영한 내역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낮은 저축여력을 반영하여 가입자당 평균 한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II -7>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만원, %)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대	90세 이상	
남성	계좌 수	320,179	828,595	765,875	659,342	498,056	37,616
	비중	10.30	26.65	24.63	21.20	16.02	1.21
	가입자 수	198,732	472,656	416,971	346,850	265,435	25,883
	비중	11.51	27.38	24.15	20.09	15.37	1.50
	한도금액	56,090	146,522	131,921	112,200	84,092	6,048
	비중	10.45	27.29	24.57	20.90	15.66	1.13
	계좌당 평균 한도	1,752	1,768	1,722	1,702	1,688	1,608
가입자당 평균 한도	2,822	3,100	3,164	3,235	3,168	2,337	
여성	계좌 수	369,513	1,463,698	1,254,702	1,037,327	742,115	58,346
	비중	7.50	29.72	25.47	21.06	15.07	1.18
	가입자 수	206,432	726,179	615,037	528,458	422,401	45,225
	비중	8.12	28.55	24.18	20.77	16.61	1.78
	한도금액	56,628	220,970	190,967	159,303	115,730	8,186
	비중	7.53	29.39	25.40	21.19	15.39	1.09
	계좌당 평균 한도	1,532	1,510	1,522	1,536	1,559	1,403
가입자당 평균 한도	2,743	3,043	3,105	3,014	2,740	1,810	
합계	계좌 수	689,692	2,292,293	2,020,577	1,696,669	1,240,171	95,962
	비중	8.58	28.53	25.15	21.12	15.43	1.19
	가입자 수	405,164	1,198,835	1,032,008	875,308	687,836	71,108
	비중	9.49	28.07	24.17	20.50	16.11	1.67
	한도금액	112,717	367,493	322,888	271,503	199,822	14,234
	비중	8.75	28.52	25.06	21.07	15.51	1.10
	계좌당 평균 한도	1,634	1,603	1,598	1,600	1,611	1,483
가입자당 평균 한도	2,782	3,065	3,129	3,102	2,905	2,002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65세 이상 가입자 수에서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 가입자보다 약 57%가량 더 많은 반면, 가입자당 평균 한도는 남성이 약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65세 미만 가입자의 남녀 성비는 100:104로 65세 이상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남녀 모두 유사한 수준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저축지원”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번호는 10번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저축지원 분야 조세특례의 감면액과 비중은 2016년 1조 5,115억원(4.04%), 2017년 1조 4,319억원(3.61%), 2018년 1조 4,420억원(3.44%) 그리고 2019년에 1조 4,696억원(3.10%)으로 평균 약 3.55% 수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 -8>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 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22,426	5.99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2	연구개발	24,976	6.67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3	국제자본거래	27	0.01	24	0.01	4	0.00	4	0.00
4	투자촉진	16,397	4.38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5	고용지원	3,619	0.97	1,742	0.44	3,315	0.79	4,202	0.89
6	기업구조조정	1,135	0.30	921	0.23	1,439	0.34	1,581	0.33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	-
8	지역균형발전	20,071	5.36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9	공익사업지원	4,754	1.27	5,006	1.26	6,063	1.45	6,152	1.30
10	저축지원	15,115	4.04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11	국민생활안정	118,900	31.76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12	근로·자녀장려	16,223	4.33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13	기타직접국세	13,742	3.67	14,080	3.55	15,055	3.60	15,241	3.21
14	간접국세	89,877	24.00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15	외국인투자	1,876	0.50	2,121	0.53	1,973	0.47	2,064	0.44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927	0.78	2,316	0.58	2,149	0.51	2,255	0.48
17	기업도시	56	0.01	75	0.02	54	0.01	56	0.01
18	지역발전	-	-	0	0.00	-	-	-	-
19	농협구조 개편	415	0.11	480	0.12	515	0.12	538	0.11
20	공적자금 회수	-	-	-	-	-	-	-	-
21	수협구조개편	70	0.02	44	0.01	-	-	-	-
22	사업재편 계획	-	-	-	-	-	-	-	-
23	기타	21,830	5.83	22,369	5.64	24,100	5.76	25,871	5.46
	합계	374,436	100.0	396,769	100.00	418,598	100.00	474,125	1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및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p. 17 및 p. 19

- 이는 국민생활안정(30.07%), 간접국세(21.95%), 근로·자녀장려(12.15%), 중소기업(6.55%), 연구개발(5.98%), 지역균형발전(5.87%) 및 기타직접국세(3.21%)이 큰 조세지출규모를 나타냄
-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중·저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액은 2017년 17조 9,776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65.61%를 기록, 중·저소득층이 가장 큰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9조 3,043억원, 24조 4,108억원으로 66.41%, 70.43%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 특히 고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은 2017년 9조 4,228억원에서 2018년 9조 7,632억원, 2019년 10조 2,465억원으로 증가폭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낮은 수준

〈표 II -9〉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179,776	65.61	193,043	66.41	244,108	70.43
	② 고소득자	94,228	34.39	97,632	33.59	102,465	29.57
	계	274,004	100.0	290,675	100.00	346,573	100.00
(2) 기업	① 중소기업	66,501	55.72	72,751	58.70	77,193	62.59
	② 중견기업	5,775	4.84	5,836	4.71	4,690	3.80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24,372	20.42	23,972	19.34	20,176	16.36
	④ 기타기업	22,704	19.02	21,389	17.26	21,280	17.25
	계	119,353	100.00	123,947	100.00	123,339	100.00
(3) 구분곤란		3,412		3,976		4,213	
총 계		396,769		418,598		474,12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p. 21

- 「조세특례제한법」상 2019년 저축지원 분류기준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9개이며, 조세지출 전망치는 총 1조 2,212억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42.14%인 5,146억원에 이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27.95%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냄
 - 이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5% 2,503억원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4.86% 순임

- 2019년부터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1.11%로 135억원을 나타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규모는 해지 또는 만기가 되어야 산정되기 때문에 조세지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

〈표 II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19년 전망	비중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503	20.50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322	2.64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99	0.81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0.32	0.00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413	27.95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4	4.86
7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5,146	42.14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추정근란)	-
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135	1.11
합계		12,212.3	1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pp. 78-81

나. 비과세종합저축의 위상

- 타 저축지원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 비교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두 번째로 큰 저축지원 조세지출임을 알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의 외형으로 볼 때, 저축지원 과세특례 중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이 가장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수준
 -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는 달리, 업종, 소득종류 및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 정책 수혜자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II -2] 2018년도(전망치)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pp. 67~70

- 조세지출 규모가 아닌 가입자와 납입액 수준을 비교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합 예탁금·출자금 다음으로 큰 수준이며, 가입금액은 조합 예탁금보다 적지만 조합 출자금보다 큰 수준
 - 가입자 기준으로는 조합 출자금이 43.69%, 조합 예탁금 21.94%이며 이어서 비과세종합저축이 15.39%임

<표 II -11>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단위: 명, %, 억원)

구분	가입자		납입액		비고(자료 기준연도)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비과세종합저축	4,521,000	15.39	949,457	28.42	2013년말 자료
조합 예탁금	6,447,095	21.94	1,552,818	46.49	인원: 2015년말 자료
조합 출자금	12,837,794	43.69	713,826	21.37	금액: 2013년말 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98,105	7.14	46,800	1.40	2018.4월말 자료
연금계좌	2,974,121	10.12	61,496	1.8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46,000	1.18	11,177	0.33	2015년말 자료
우리사주조합	89,058	0.30	2,845	0.09	
소기업소상공인	68,845	0.23	1,519	0.05	
투자조합 출자 등	1,880	0.01	317	0.01	
계	29,383,898	100	3,340,255	100	

주: 1.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생계형저축이며, 각 금융상품별 자료기준 연도가 상이함
 자료: 이상엽·윤성만(2018) p. 48, <표 II-1>; 이상엽·한종석(2017) 및 홍범교 등(2014)을 활용하여 저자 제작성

- 또한 납입액 기준으로는 조합 예탁금이 46.49%, 비과세종합저축 28.42%, 조합 출자금 21.37%, 연금계좌 1.8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4% 순
- 특히, 1인당 평균 가입금액도 조합 예탁금 2,409만원, 비과세종합저축 2,100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1,686만원 그리고 조합 출자금 556만원 순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저축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4. 해외사례

가. 미국

1) ABLE account⁷⁾(장애인)

- ABLE 계좌는 장애인의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 조세지원제도로, 계좌의 소득을 적절한 장애경비로 지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며, ABLE 계좌의 소득은 계좌 소유주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ABLE 계좌는 2014년 ABLE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는바, 수혜자는 ABLE 계좌 소유주이며, 계좌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 적절한 장애경비(Qualified disability expense)에는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인이 건강, 독립,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비용들이 포함됨
 - 적절한 장애경비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때(즉, 장애를 입었을 때) 발생한 비용도 포함됨
 - 구체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직업훈련비, 금융관리비, 행정서비스비용, 법정비용, 관리비, 장례·매장비용 등이 포함됨
 - (정책대상자) 시각장애 혹은 기타 적절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지정된 수혜자는 (한 번에) 하나의 ABLE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음
 - 26세 이전에 시각장애 혹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ABLE 계좌를 취득할 수 있음
 - 장애인 본인이 ABLE 계좌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법정대리인 등 후견인이 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계좌를 취득할 수 있지만, ABLE 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장애인 본인임

7) IRS, "publication 907 tax highl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returns," Jan 9, 2019

- (수혜내용) ABLE 계좌에 잔액이 적격한 장애경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비율) 적격한 장애경비를 초과한다면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비과세 한도가 결정됨
 -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장애경비 지출액 / 계좌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이자)소득액 = 비과세 한도
 - 예를 들어, 2019년 8월 2일 ABLE 계좌 잔액이 2,400달러인데(2,000달러는 장애관련 수급액이고 400달러가 이자수익), 2019년 동안 적격 장애경비로 1,600달러를 지출하였다면, 비과세 한도는 $[\$1,600/\$2,400] \times \$400 = \266.67 달러
 - 따라서 $\$400 - \$266.67 = \$133.33$ 달러는 장애인의 2019년 총소득에 포함됨
- (가입 한도) ABLE 계좌는 Section 529에 계좌이전을 포함하여 연간납입한도 및 누적잔액한도가 적용됨
 - ABLE 계좌에 저축할 수는 있지만, 납입금은 소득공제되지 않음
 - (연간납입한도) ABLE 계좌의 총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증여세배제액(gift tax exclusion) + 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추가납입액 으로 계산
 - 2019년 기준 연간증여세 배제 금액은 15,000달러⁸⁾
 - 고용된 장애인의 추가납입 한도는 $\min[\text{지정장애수당금, 최저소득한도}]$ 로 계산
 - 최저소득한도(poverty line)는 미국 본토에서는 12,140달러, 하와이는 13,960달러, 알래스카는 15,180달러
 - (누적잔액한도) 연간 누적잔액한도는 Section 529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Section 529는 주정부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저축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계좌별로 300,000달러 이상을 한도로 두고 있음
 - 하지만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은, ABLE 계좌에 잔액이 100,000달러까지는 SSI의 2,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지만, ABLE 계좌 잔액이 100,0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SSI의 현금지급 혜택은 ABLE 계좌가 100,000달러 미만이 될 때까지 중지됨⁹⁾
 - 수혜자의 SSI 현금지급 자격이 정지되는 동안에도 Medicaid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음

8) National Resource center, <http://ablenrc.org/news/top-three-questions-january-2019>, 검색일자: 2019. 4. 15

9) National Resource center, <http://ablenrc.org/about/what-are-able-accounts>, 검색일자: 2019. 4. 15

-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금 중 이자 수익 부분을 환급해야 함
 - 환급은 소득세가 결정되는 4월 15일 이전까지 ABLE 프로그램을 통해 해야 하는데, 환급하지 않을 경우 초과납입액에 대해서 6%의 소비세(excise tax)가 과세됨
- (계좌이전) ABLE 계좌의 잔액은 다른 ABLE 프로그램 간 계좌로 이전 가능
 - 또는 ABLE 계좌 전부 혹은 일부를 적격한 가족구성원의 계좌로도 이전할 수 있음
 - 만일 모든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ABLE 계좌를 해지하고 이전해야 함
 - ABLE 프로그램 간 계좌 이전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Section 529 계좌(tuition account)에서 Section 529A ABLE 계좌로의 이전은 2017년 12월 22일 이후로 부과금 없이 이전이 가능해졌음

2) Saver's credit(저소득층)

-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의 노후자금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IRA계좌나 직장연금 등 적격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일반적으로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저소득 및 중소득층에는 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함
 - 개인의 조정 총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50%, 20%, 10%로 차등 적용됨
 - 부부합산 소득이 38,5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50%, 38,500달러 초과 41,500달러 이하는 20%, 6만 4천달러 이하는 10% 적용

〈표 II -12〉 Saver's credit(2019)

(단위: 달러)

credit rate	부부공동	세대주	다른 신고 유형
납입액의 50%	AGI ≤ 38,500	AGI ≤ 28,875	AGI ≤ 19,250
납입액의 20%	38,501 ~ 41,500	28,876 ~ 31,125	19,251~20,750
납입액의 10%	41,501 ~ 64,000	31,126 ~ 48,000	20,751~32,000
납입액의 0%	> 64,000	> 48,000	> 32,000

자료: IRS 웹사이트,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19. 4. 22.

3)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publication 524, publication 554)(노인·장애인)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일정 소득 이하라면 특별한 세액공제(credit)를 받을 수 있음¹⁰⁾
 - (정책대상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이지만 장애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Credit)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요건) 독신인 경우 조정총소득이 17,500달러 이상이거나 비과세되는 사회보장수당이나 연금, 장애연금 등이 5,000달러 이상이면 세액공제(Credit)를 받을 수 없음
 - 부부합산 조정총소득이 20,000달러 이상이거나 사회보장수당 등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 만일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조정총소득이 25,000달러, 사회보장수당 등이 7,500달러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 별거 중인 부부의 경우엔 조정총소득이 12,500달러, 사회보장 등 수당이 3,750달러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표 II -13> 미국 노인·장애인 세액공제의 예

(단위: 달러)

항목	금액	비고
1	initial amount based on filing status	5,000 (독신, 장애, 퇴직의 초기 지정값)
2	taxable disability pension	13,000
3	initial amount (1과 같은 값)	5,000
4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700
5	Excess adjusted gross income	2,800 (13,100-7,500)÷2
6	(4) + (5) = \$700+\$2,800	3,500
7	(3) - (6) = 5,000-3,500	1,500
8	(7)×15%	225
9	Schedule R, line 21에서 정하는 credit limit	111 **\$225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schdule R에 기입하면 IRS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 같은데, 공개된 값이 아님
10	최종 credit	111

자료: IRS(2019),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p. 8

10) IRS,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2019. 1. 23

- (예) 58세이며, 독신이고, 2016년에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퇴직하였으며, 비과세되는 사회보장수당은 700달러, 과세되는 이자소득이 100달러, 과세되는 장애 연금이 13,000달러인 경우
 - 조정소득을 계산하면 13,100달러(\$13,000+\$100)
 - 신청인 특성과 조정소득을 적용하여 계산된 공제액(Credit)은 111달러

나. 영국

1) Pension credit

- 영국 정부는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제도를 운영¹¹⁾
 - 이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주는 보조금으로서 비과세함
 - 연금 크레딧은 확정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으로 구성
 - (정책대상자) 확정크레딧은 주(weekly) 소득이 독신이면 167.25파운드 이하, 부부이면 255.25파운드 이하인 경우 지급
 - 저축크레딧은 연금 등 은퇴 목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독신은 13.73파운드, 부부는 15.35파운드까지 지급
 - 간병인 급여, 장애급여(severe disability premium) 등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음

2) 기타 장애인을 위한 제도

- 장애인에 대한 과세 특례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세 면제 혹은 50% 감면¹²⁾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서비스는, 장애인의 여건에 맞춘 제품들로 침대, 계단리프트, 휠체어, 보조기구 등이며 장애인용 자동차도 포함

11)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pension-credit/print>, 검색일자: 2019. 4. 19

12)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financial-help-disabled>, 검색일자: 2019. 4. 19

- 장애급여(Dissability premium) 방식으로, 소득보전이나 실업수당(JSA), 고용보조(ESA), 주거급여 등 4가지 소득에 추가하여 다음의 3종류의 장애프리미엄을 제공¹³⁾
 - 3가지 장애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 개 이상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① disability premium) 독신이면 주급으로 34.35파운드, 부부라면 주급으로 48.95파운드
 - (② enhanced disability premium) 독신이면 주급으로 16.80파운드, 부부이면서 어느 한 명만 적격 장애가 있다면 24.10파운드
 - (③ severe disability premium) 독신이면 주급으로 65.85파운드, 부부이면서 모두 적격장애라면 131.70파운드
 - 4가지 소득은, ① 소득보전(income support) ② 실업수당(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JSA)) ③ 고용보조(income 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④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단, 고용보조(ESA)수당을 받고 있다면 ① 장애급여(disability premium)를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장애급여인 ② enhanced나 ③ severe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음
 - 수급액은 Benefit cap 한도의 적용을 받음¹⁴⁾
 - 런던 내 지역은, 부부인 경우 및 한부모가정인 경우 주당 442.31파운드, 독신인 경우 주당 296.35파운드
 - 런던 외 지역은, 부부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주당 384.62파운드, 독신인 성인은 주당 257.69파운드

다. 캐나다

- 노인·장애인·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Tax free savings accounts)와 장애인을 위한 저축지원제도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이 있음

1)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RDSP)¹⁵⁾(장애인)

13)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disability-premiums-income-support/print>, 검색일자: 2019. 4. 19

14)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benefit-cap/benefit-cap-amounts>, 검색일자: 2019. 4. 19

15)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rdsp.html>, 검색일자: 2019. 4. 19

- 저축지원제도(Registered Savings plan)는 은퇴자금마련, 교육자금마련, 장애인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장애인지원저축의 경우 납입금에 대한 과세혜택은 없으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 대하여 비과세
 - (정책대상자) 60세 미만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고, RDSP를 인출할 수 있는 때는 59세에 도달한 해로 함
 - 단, RDSP 간 계좌 이전을 위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가능함
 - RDSP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RDSP 계좌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납입한도는 평생 20만캐나다달러까지이고 수혜자가 59세가 되는 연말까지 납입할 수 있음
 - RDSP에서 인출할 때에는 비과세되지만, 투자수익에는 과세됨

- 캐나다 정부에서는 RDSP 계좌에 납입액에 매칭하여, 가구 순소득에 따라 300%, 200%, 100%씩 보조금(grant)을 지급함
 - 수혜자가 출생한 때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가구 순소득에 따라 일종의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을 지급하는 것으로, RDSP 계좌에 납입한 액수에 따라 매칭하여 지급하는 것
 - 매칭 보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1년의 3,500캐나다달러이며, 수혜자는 평생 동안 최대 70,000캐나다달러까지 받을 수 있음
 - 수혜자의 가구 순소득이 93,208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500캐나다달러까지의 납입에 대해서는 납입금 1캐나다달러에 3캐나다달러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최대 1,500캐나다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납입금이 1,000캐나다달러 이상이면 납입금 2캐나다달러당 1캐나다달러씩을 보조하여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보조금 지급

〈표 II -14〉 캐나다 RDSP 소득별 보조금

(단위: 캐나다달러)

수혜자의 가구 순소득(2018기준)	보조금	최대 금액
\$93,208 미만		
첫 \$500	\$1 납입시 \$3 보조	1,500
그다음 \$1,000	\$1 납입시 \$2 보조	2,000
\$93,208 이상		
첫 \$1,000	\$1 납입시 \$1 보조	1,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2018),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p. 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0.html>, 검색일자: 2019. 4. 19

1) Tax free savings accounts(TFSA)¹⁶⁾

- 개인이 TFSA 계좌에 납입 시에는 조세혜택이 없으나, TFSA 계좌를 통해서 이자, 배당, 투자수익 등을 얻는 경우 보유할 때와 인출할 때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
 - (가입한도) TF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매년 정해져 있어서, 납입한도 이하로 납입하면 미사용 한도액은 이연이 가능하고,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다음해에 납입한도가 증가
 - 납입한도는 2019년 기준 6,000캐나다달러
 - 단, TFSA 한도를 초과하면 매달 최고 초과금액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이 과세됨
 - TFSA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되지 않음

<표 II -15> 캐나다 TFSA 연도별 납입한도

(단위: 캐나다달러)

년도	납입한도
2009~2012	5,000
2013~2014	5,500
2015	10,000
2016~2017	5,500
2018	5,500
2019	6,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contributions.html>, 검색일자: 2019. 4. 19

- 대부분 TFSA 계좌를 통한 투자수익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해 6월 30일까지 TFSA 신고서(TFSA return)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될 수 있음

라. 호주

- 저소득층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매칭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Super co-contribution 과 LISC 제도가 있고, 장애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장애신탁에는 과세특례를 제공
 - Super co-contribution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퇴직연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액에 따라 일정부분 보조금을 주는 제도

16)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html>, 검색일자: 2019. 4. 19

- Low income super contribution(LISC)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직접 급여를 주는 제도
-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은 일반 신탁과 달리 장애인에게는 과세표준을 다르게 적용함

1) Super co-contribution¹⁷⁾(저소득층)

- Super co-contribution 제도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의 퇴직저축 장려를 위한 것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최소 20호주달러,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 (정책대상자) 가입자 연령이 71세 이하이면서, 퇴직연금계좌를 하나 이상 가입하고, 비적격 납입한도 이상¹⁸⁾으로 납입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두 가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총소득이 고소득기준(2018~2019년 52,697호주달러) 미만
 - 총소득의 최소 10%가 근로나 사업소득이어야 함
 - 만일 고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은 세후소득에서 납입한 것이어야 함
 - (수혜내용) 총소득이 저소득기준액(2018~2019년 37,697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1,000호주달러를 납입하였다면, 최대 보조금인 500호주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총소득 및 가입자의 계좌 납입액에 따라 보조금이 <표 II-16>과 같이 감소
 - 가입자가 이미 은퇴하여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한 퇴직연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 가입자가 소득신고할 때에도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지급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1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printfriendly.aspx?url=/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super-co-contribution/>, 검색일자: 2019. 4. 22

18) 호주는 사적연금 납입방식을 세제 적격(concessional) 및 비적격(non-concessional)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음, 세제 적격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세전 급여 중 일부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주는 것이고, 비적격은 근로자가 세후 급여에서 납입하는 것임. 세제 적격 납입한도와 비적격 납입한도가 별도로 존재함. 2019-2020년 비적격 납입한도는 100,000호주달러임.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page=4>, 검색일자: 2019. 4. 22

<표 II -16> 호주 super co-contribution 소득별 납입액별 보조금

(단위: 호주달러)

총소득	계좌 납입액			
	1,000	800	500	200
36,813 미만	500	400	250	100
39,813	400	400	250	100
42,813	300	300	250	100
45,813	200	200	200	100
48,813	100	100	100	100
51,813 이상	0	0	0	0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printfriendly.aspx?url=/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super-co-contribution/#Supercocontributionamounts> 검색일자: 2019. 4. 22

2) LISC(low income super contribution)¹⁹⁾(저소득층)

- LISC 제도는 2017년 7월 LISTO 제도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저소득자가 은퇴저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호주달러,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 (정책대상자) 적격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으며, 연간 총소득이 37,000호주달러 미만이고, 소득의 10% 이상이 사업이나 근로소득인 경우 LISC 보조금을 직접 은퇴저축계좌(super fund)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미 은퇴하였고, 보존연령²⁰⁾에 도달하여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LISC 급여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3)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²¹⁾(장애인)

-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은 장애인의 숙소와 간병에 대해서, 장애인의 가족 및 간병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에게는 주거 및 간병비용을, 장애인 가족에게는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정책대상자) 적격 장애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특별장애신탁에 가입

1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printfriendly.aspx?url=/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Low-income-super-contribution/>, 검색일자: 2019. 4. 22

20) 보존연령(preservation age)은 가입자가 그들이 은퇴할 때 퇴직연금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며, 생일에 따라 다름

21) 호주 국세청,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special-disability-trusts/you-need-know/benefits>, 검색일자: 2019. 8. 26

- 적격 장애의 요건은, 16세 이상의 경우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의 적격자이거나, D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수급자인 경우, 주 7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경우 등에 해당
- 16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 평가(Disability care load assessment) 결정에 따른 간병인을 필요로 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혜내용) 특별장애신탁에서 수혜자인 장애인의 주거비용과 간병비용을 지불 해주며, 장애인을 간병하는 가족에게는 추가 보조금(gifting concession), 자산조사면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추가 보조금; gifting concession)은 장애인의 가족 중 연금 수급자거나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Veteran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50만호주달러를 한도로 지급함²²⁾
 - (자산조사면제; asset test assessment exemption)는 장애지원연금 및 사회보장료 납부 등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자산조사를 681,750호주달러 한도(2019년 기준)까지 면제해주는 혜택²³⁾
 - (조세감면) 특별장애신탁에는 고소득자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특별장애신탁의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혜자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또한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도 면제함

마. 일본

- 일본의 이자 소득 비과세 제도는 ①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 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이자 비과세제도가 있으며,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금 350만엔까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금 5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22) 예를 들어 적격 장애인이고 특별장애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고, 그의 어머니는 연금수급자로 30만호주달러를 받고, 그의 할아버지는 Veteran 연금의 수급자로 20만호주달러를 받는 경우,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출처: 호주 국세청, <http://guides.dss.gov.au/guide-social-security-law/4/14/4/20>, 검색일자: 2019.8.26.)

23)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별장애신탁에 가입되어 있는 성인이 있는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40만호주달러를 신탁에서 간병 및 주거비용으로 수급받고 있는 경우, 주택자산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자산평가에서 면제되고, 수급받는 40만호주달러도 한도 이하이므로 자산조사에서 면제되어, 이들의 장애연금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출처: Andreyev, <https://andreyev.com.au/2015/05/20/what-is-a-special-disability-trust-and-why-would-you-need-one/>, 검색일자: 2019. 8. 26)

1)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및 소액채권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한도의 특례(障害者等の少額預金・少額公債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に係る限度額の特例)²⁴⁾

- 장애인의 소액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장애인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 소액채권(공채) 이자소득에 비과세 하는 장애인등의 특별 소액채권 비과세제도를 운영
 - 일반적으로 예금과 공사채 등의 이자는 15.315%에 주민세 5%를 더하여 총 20.315%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장애인은 이에 대하여 비과세
 - (소액저축 비과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저축은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특정유가증권으로 4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4종류의 저축원금 합계액 350만엔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소액채권 비과세) 국채 및 지방채의 액면 총액 350만엔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위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는 별도의 제도
 - (정책대상자) 소액저축 및 소액채권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를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장애자수첩 등 확인서류를 제출한 대상자
 - (소액저축 비과세) 최초로 예금하는 날에 비과세 저축신고서(「非課税貯蓄申告書」)를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액채권 비과세) 최초로 국채나 지방채를 구입하는 날에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特別非課税貯蓄申告書」)를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한도는 없지만 원금 350만엔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2)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이자 비과세 제도(勤労者財産形成住宅貯蓄・年金貯蓄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 재형 비과세제도는 재형주택저축과 재형연금저축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저축 원금 총 5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4) No.1313 「障害者等のマル優(非課税貯蓄)」,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3.htm>, 검색일자: 2019. 4. 22

- 재형주택저축과 재형연금저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계좌를 통합하여 원금 550만엔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동시에 가입하였을 경우, 재형연금저축에서 생명보험의 보험료, 생명공제의 공제부금,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불입액 385만엔까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65만엔에 대해서 재형주택저축의 비과세 한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재형주택저축) 근로자의 주택구매를 위한 재산형성 지원제도로, 55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계약에 한하여 5년 이상 급여공제 방식으로 정기납입한 경우 550만엔 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²⁵⁾
-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5년간 소급하여 과세
 - 다만, 2016년 4월 1일 이후에는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유로 인해 노동자가 비과세 저축을 인출할 경우 소급과세하지 않는 특례 인정²⁶⁾
- (재형연금저축)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제도로, 5년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60세 이후 연금 개시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요건으로 원금 550만엔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²⁷⁾
- 55세 미만의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약만 허용
 - 퇴직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형연금저축의 적립기간 종료일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개시일 이전에 인출하면 5년간 소급하여 과세

2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m/taxanswer/1316.htm>, 검색일자: 2019. 4. 22

26) 비과세 ‘재해 등의 사유’

- ① 노동자가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으로 노동자 본인 또는 노동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해에 의해 파괴, 유실, 반파, 침수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은 것
- ② 노동자가 지불한 의료비 중 노동자 본인 또는 지불시 노동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 200만엔을 넘은 경우
- ③ 노동자가 배우자와 사별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독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④ 노동자가 특별장애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⑤ 노동자가 고용보험법에 규정하는 특정수급자격자나 특정사유에 의한 이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2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m/taxanswer/1319.htm>, 검색일자: 2019. 4. 22

바. 프랑스

- 프랑스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대다수의 저축상품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함
 - 그 중에서도 가입요건에 소득한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통예금저축(LEP)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저축지원제도는 없음
 - 일반적인 장애수당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²⁸⁾이 지원됨

1) 보통예금저축(LEP, Livret d'Épargne Populaire)

- 보통예금저축(LEP)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축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소득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²⁹⁾
 - 가족 구성원과 규모를 통해 가족계수를 계산하여 보통예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한도를 규정함
 - 예를 들어, 독신자는 가족계수가 1이며, 부부의 경우 2, 여기에 부양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0.5가 가산되고 3번째 아이부터는 1씩 가산됨
 - (가입한도) 보통예금저축은 최소 30유로 이상 최대 7,700유로까지 납입 가능

<표 II -17>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단위: 유로)

가족계수	소득한도
1	19,779
1.5	25,060
2	30,341
2.5	35,622
3	40,904
3.5	46,185
4	51,466

주: 이후 가족계수가 0.5씩 증가할 때마다 소득한도는 5,282유로씩 증가
 자료: 프랑스 행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67>, 검색일자: 2019. 4. 22

28) 프랑스 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242>, 검색일자: 2019. 4. 22

29) Britline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 <https://www.britline.com/savings-lep.html>, 검색일자: 2019. 4. 22

2) 이자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기타 상품

- A저축(Livret A)은 대중적인 저축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한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³⁰⁾
 - 연령 및 소득 제한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음
 - 납입한도는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22,950유로까지로 하며, 우체국에서 가입하면 최소 1.5유로만 납입해도 되고, 조합이 A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76,500유로까지 납입할 수 있음

- 청색저축(Livret Bleu)은 A저축과 같은 성격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만든 저축상품으로, 원칙적으로 A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색저축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연령 및 소득 제한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음
 - 납입한도는 최소 15유로 이상 최대 22,950유로까지로 하며, 법인은 최대 76,500유로까지 납입 가능
 - A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지속성장저축(LDDS)은 산업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저축으로 가입대상자를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한정하며, 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 납입한도는 최소 15유로 이상 최대 12,000유로까지로 함

- 청소년 저축(Livret Jeune)은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1,600유로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 단·중기적금(CAT)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자는 연령제한 및 소득제한 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한도도 존재하지 않음
 - 단, 불입한 금액은 일정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가입 시에 적금불입액, 기간, 이자율 등을 계약하고, 적금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계약해야 함

30) Britline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 <https://www.britline.com/savings-livret-a.html>, 검색일자: 2019. 4. 22

사. 해외사례의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미국은 장애인(ABLE계좌), 저소득층(Saver's credit),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ABLE 계좌를 통해 장애경비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과세혜택을 받거나, 총소득요건에 따라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축 시에 보조금을 제공(Pension credit)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모든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 (Tax-Free Savings Accounts)와 장애인을 위한 저축지원제도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를 두고 있음. 장애인 RDSP의 경우 계좌에 납입한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며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프랑스는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있음
 - 호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납입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해주며(Super co-contribution, LISC(low income contribution)) 장애인의 경우 장애신탁 순수입에 대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Special disability trust)
 -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원금의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는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을 통해 저축원금 550만엔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비과세종합저축의 타당성 평가는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평가로는 저축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적이 적절한지와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 지원대상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와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어떠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또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과세특례방식, 의무가입기간, 납입한도 및 가입 금융자산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의 타 조세지출제도 및 재정지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평가
 - 다양한 과세특례 및 조세지출제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파악
 -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 실태를 분석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하 “취약계층”)의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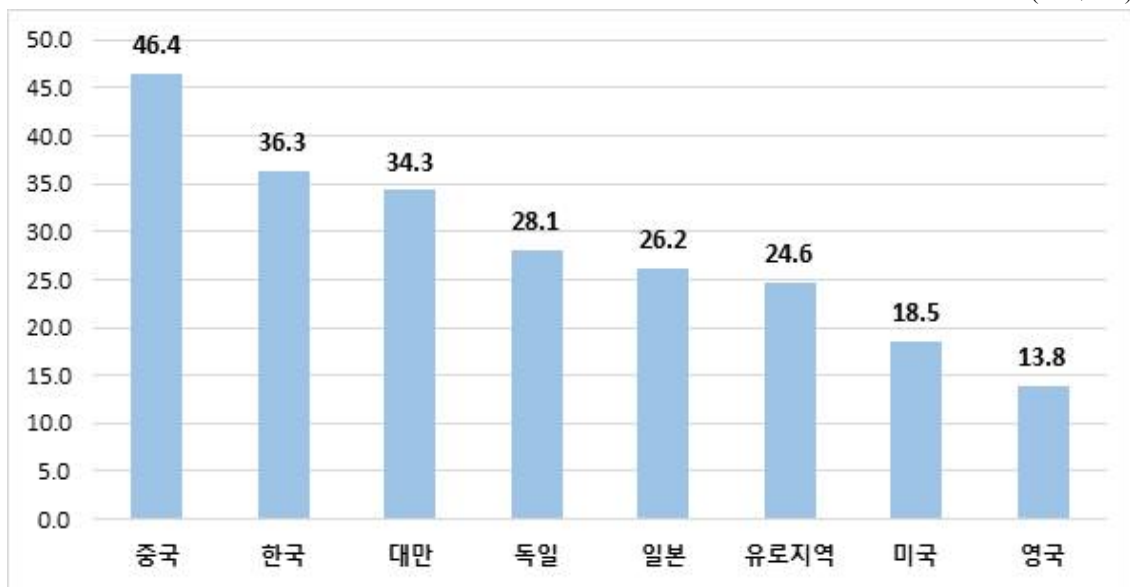
있으며,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축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 먼저,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다루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현재의 가계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유인정책을 펼침으로써 미래의 가계소비력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가계저축의 효과는 거시 및 미시경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이러한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

[그림 III-1]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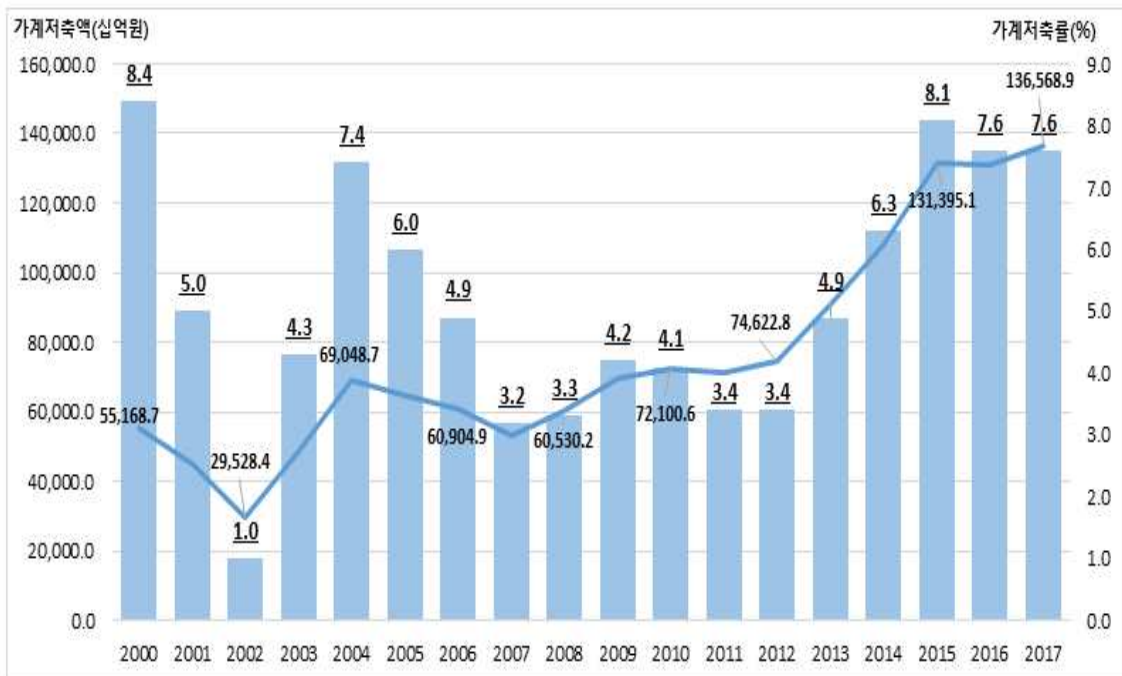
주: 각국의 총저축률은 OECD 추정치(=(고정자본소모+순저축):GNDI)이며, 중국의 총저축률은 1-(최종소비+GDP), 대만의 총저축률은 총저축+GNI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자: 2019. 4. 6.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그림 III-1]에서와 같이, 2017년 현재 36.3%로 대만, 독일, 일본, EU, 미국 및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 중국 46.4%에 이어 한국은 36.3%로서 대만 34.3%, 독일 28.1%, 일본 26.2% (2016년 총저축률), EU 국가 평균 24.3%, 미국 18.3% 및 영국 12.5%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총저축률은 2008년 32.9%에서 2012년 34.2%, 2016년 36.1% 그리고 2017년 36.3%, 2018년 34.8%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

- 또한 [그림 III-2]와 같이, 가계저축률은 2010년 4.1%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8.1%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6년과 2017년에는 7.6% 수준
 - 또한 가계순저축액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약 60조 5,302억원에서 2012년 74조 6,228억원, 2015년 131조 3,95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36조 5,689억원까지 증가
 - 그러나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추세를 동반한 저축률의 증가현상은 소득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거 불안, 고용시장의 불안 및 노후생활의 불안 등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

[그림 III-2] 한국의 가계저축액과 가계저축률 추이



주: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순저축액÷(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자: 2019. 4. 6.

- 그러나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최근 투자재원에 대한 가계저축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자본시장 개방과 글로벌화로 인해 낮아지고 있음
 - 국제적 자본이동은 저축-투자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계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는 국제적 자본이동성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됨
 - 결국, 국제적 자본이동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경제에 있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계저축률 제고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오용협·이인구, 2007)

- 한편, 저축이 미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저축의 세후수익률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재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저축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축에 과세할 경우, 미래 소비를 제약하여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이는 미래 소비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축에 대한 과세는 저축을 감소시켜 미래 소비를 축소하는 대체효과를 지님(Besley and Meghir, 2001)

- 또한 저축에 대한 과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동일한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세후소득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소비의 감소와 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소득효과도 존재
 - 따라서 저축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후수익률 하락은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나타나며, 동시에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한 총효과의 크기를 단정할 수 없음(전병목·홍범교, 2006)

- 한편, 현행 우리나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측면에서 금융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4%가 비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최저세율(6%)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서민 및 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결과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은 6% 세율인 반면, 금융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접점(5,22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금융소득의 세부담이 비금융소득에 비해 높으며, 7,22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의 평균세율이 14%로 일정하다가 초과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1억 1천만~1억 3천만원 구간이 비금융소득자와 금융소득자의 세부담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이 됨(3.2~3.9%)(이상엽·윤성만, 2016)
- 따라서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5,22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이상의 저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의 투자재원 역할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저축이 미래 소비의 페널티라는 점 그리고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저축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

-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적 개방경제라 하더라도 완전한 국제적 자본이동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의 투자촉진과 경제성장의 유인효과는 존재하며, 총저축률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가계저축률은 총저축률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가계저축률 제고의 필요성은 존재
- 이와 더불어, 미래 소비의 재원이 되는 현재의 저축에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미래 소비의 가격 인상에 따른 현재 저축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금융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과세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저축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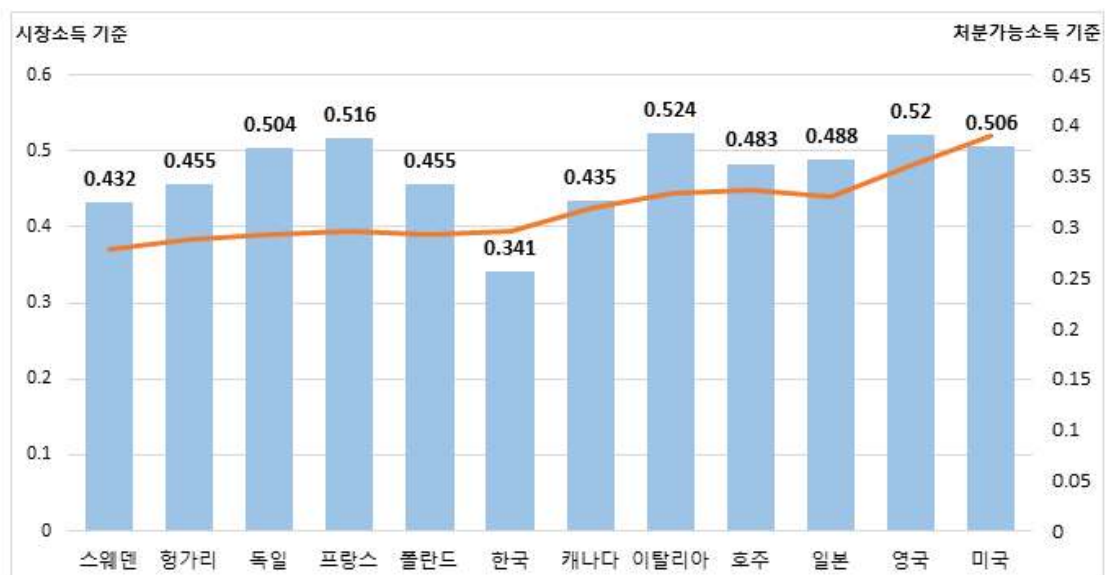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산형성지원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의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Sherraden(1991)의 주장에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 필요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면세점에 있기 때문에 저축 및 자산형성을 위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혜택 대부분이 고소득층으로 쏠리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자산형성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노동 제공의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
 - 정부의 공공부조가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저축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부 최저소득층은 은행계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금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로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에 단순히 공공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인적·물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한창근, 2007)
 - 또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응(매칭)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함(신동면, 2009)
- 이러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사회투자 관점, 사회정책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을 들 수 있음
- 사회투자 관점(social investment): 자산은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정의됨.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단지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Sherraden(1991)은 저축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면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회정책 관점(social policy): 개인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임

-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므로 소규모의 보조금만으로도 자산형성지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theories of saving): Sherraden(2006)은 소득수준, 개인의 선호도 및 정부정책 등 제도적인 요인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이때, 사회·경제적 관계, 규칙 및 인센티브, 그리고 조직과 가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규, 절차 및 국가기관 등이 제도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을 통한 불평등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국은 2015년 기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통계청 자료로도 지니계수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295와 0.341로 OECD 주요 국가 평균 0.317과 0.472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최제민 등(2018)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원인의 하나로 금융소득 불평등효과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금융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I-3]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통계청(<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 접속일자: 2019. 4. 6.

-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후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 및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순 가계저축률의 제고 목적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의 저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과 노후자금의 마련을 도모한다는 정책목적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취약계층에만 과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 저축률의 제고보다 특정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성격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노후생활자금을 늘림으로써 향후 정부가 보조해야 할 재정지출 부담의 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자산형성에 개입하는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2. 지원대상의 적정성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총 7가지 가입자격으로 구분되며, 소득의 종류와 소득이나 자산수준의 제한도 없음
- 총 7가지 가입자격 구분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정책상 특정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본 지원대상의 적정성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만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지원대상이며 본 연구의 지원대상 적정성 판단 범위로 가정하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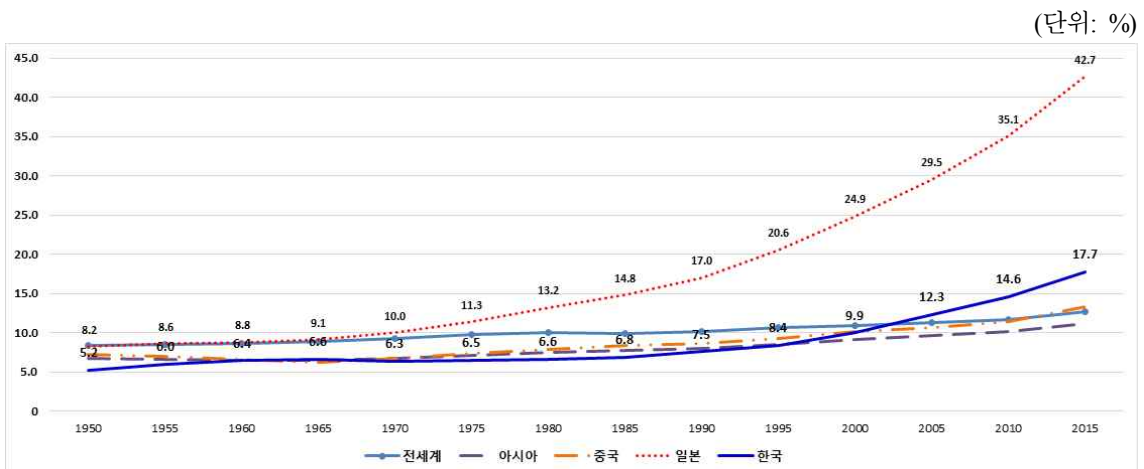
- 먼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검토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함

- 먼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광범위한 노인복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본 평가는 이러한 노인복지 관련 제도적 고찰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World Bank가 발표한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0대 후반에 이미 아시아의 평균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비중을 초과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도에 아시아의 평균 노인 비중은 8.0%, 한국은 7.5%였지만 2000년도에는 아시아 평균 비중이 9.1%, 한국 9.9%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아시아권에서 노인 비중 높은 나라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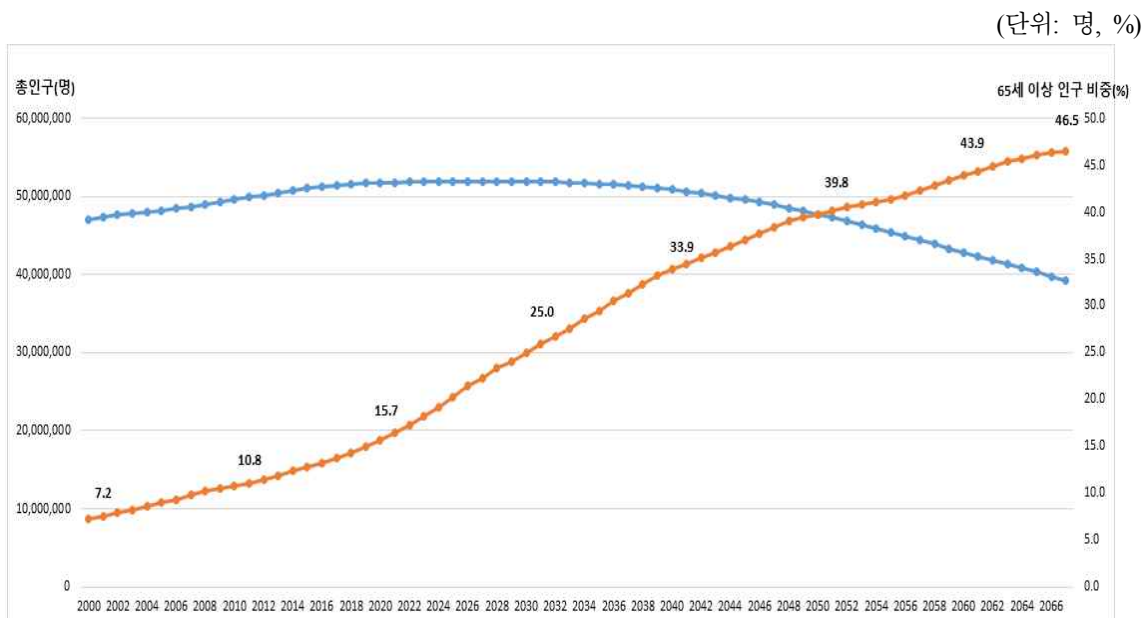
[그림 III-4]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자: 2019. 4. 6.

- 또한 2000년도와 2005년도에 전 세계 노인 비중이 각각 10.9%, 11.3%였지만, 한국은 9.9%, 12.3%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전 세계 평균 노인 비중을 초과하게 되었음
 - 특히 2015년도 전 세계와 아시아의 평균 노인 비중이 각각 12.6%, 11.2%였지만 한국은 17.7%로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향후 인구 추이를 나타낸 한국은행의 2067년까지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9년 총 5,171만명에서 2028년에 최고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이며,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2028년 최고치 5,194만명에서 2040년 5,086만명, 2050년 4,774만명, 2060년 4,284만명 그리고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하며, 또한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19년 14.9%에서 2020년 15.7%, 2030년 2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 그리고 2067년 4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계결과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그림 III-5] 총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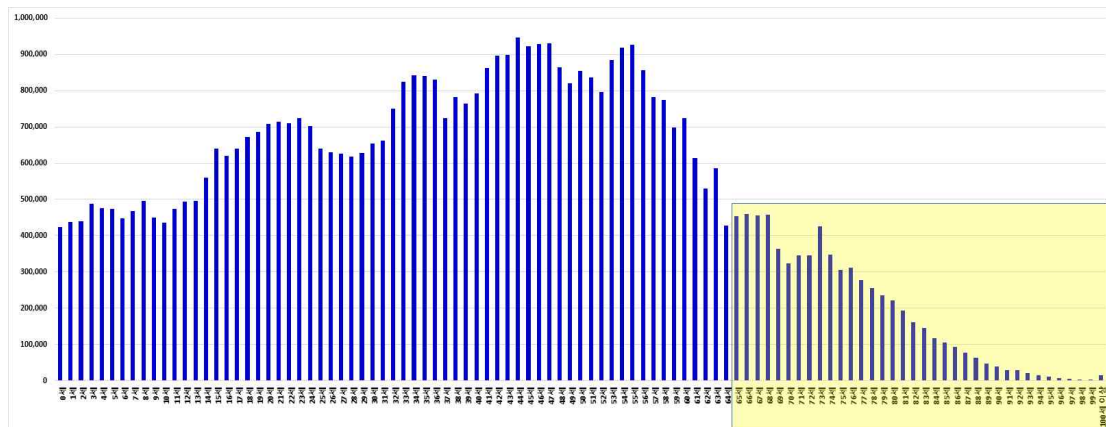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자: 2019. 4. 6.

- 2018년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전체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85%로 약 765만명이며, 만 34~60세 사이의 인구가 44.03%로 가장 높은 수준
 - 만 10세 이하 연령대는 연령별 평균 45.8만명으로 만 44세의 48.4%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인구절벽 현상이 존재
 - 특히 인구 자연 감소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말 매년 만 65세 이상의 인구에 합류하는 매년 인구는 향후 20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오히려 만 65세 이상 인구에 합류되는 매년 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예상
 - 따라서 향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여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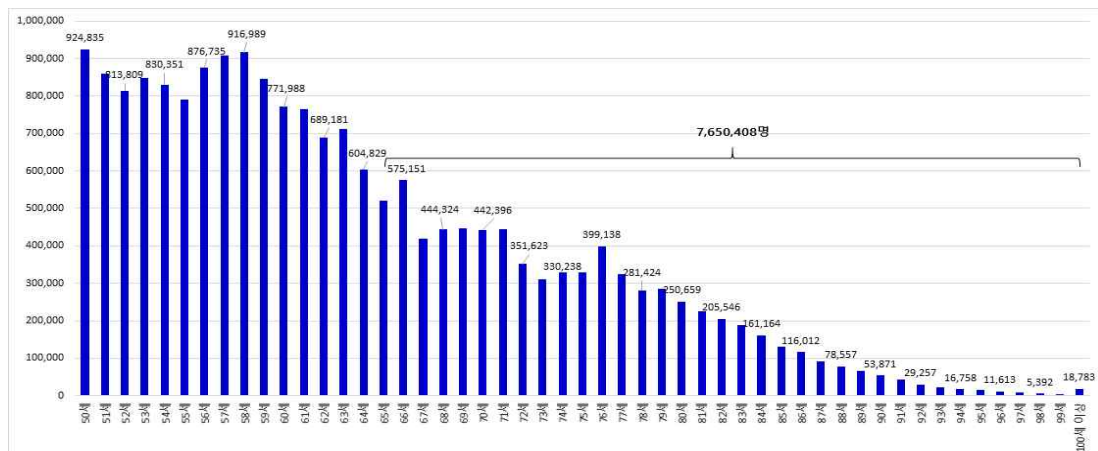
[그림 III-6] 연령별 주민등록 등록 인구분포(2018년말 기준)

패널 A: 전체 인구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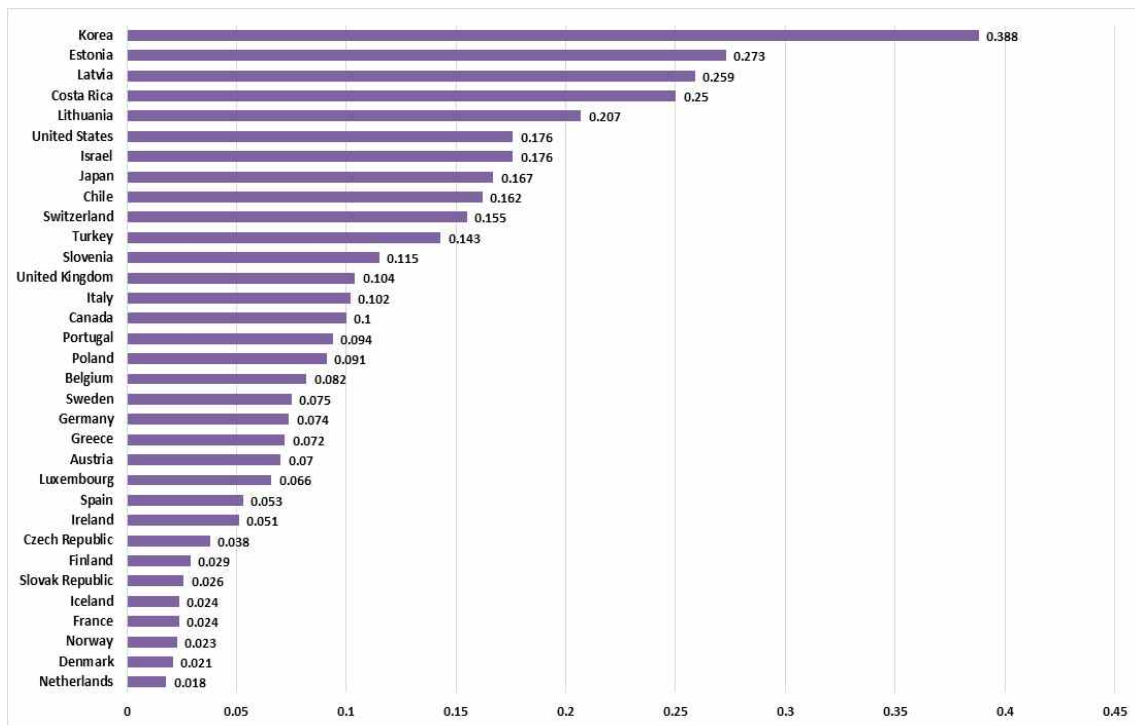
패널 B: 만 50세 인구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27.101.213.4/index.jsp#>), 접속일자: 2019. 4. 6.

- 이러한 만 65세 이상 인구 증가현상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5년 0.38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전 세계 평균은 0.112로 미국 0.176, 영국 0.104, 독일 0.074, 프랑스 0.024 및 일본 0.167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빈곤율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냄
 - 이러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노인세대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경험하며,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소득 또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음(안서연, 2018)

[그림 III-7]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현황(2015년 기준)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OECDStat_Metadata/), 접속일자: 2019. 4. 6.

-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는 만 15세 이상 총 4,441만명 중 17.12%인 총 760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32.8%인 249만명으로 고용률은 31.9% 수준
 -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2016년 30.7%에 비해 2018년에 31.9%로 상승하였지만,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임(김복순, 2014)

<표 III-1> 경제활동인구(2018년 기준)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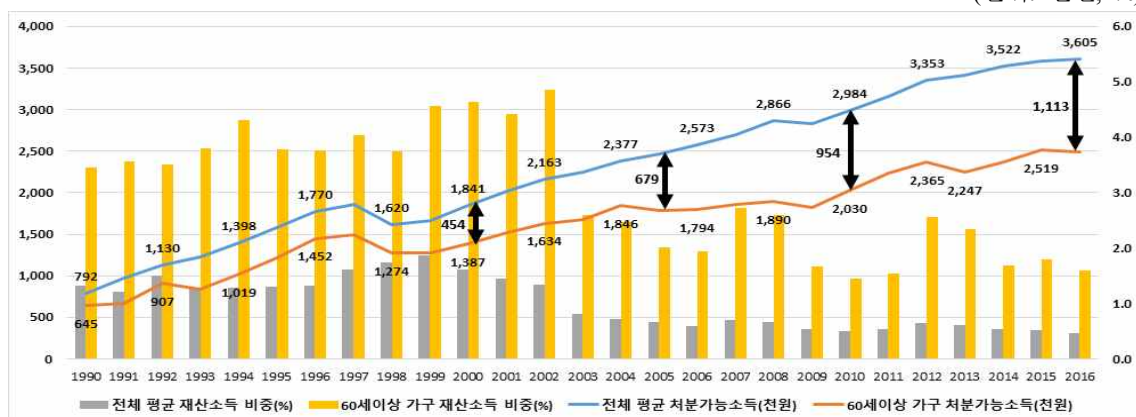
구분	15~64세	65세 이상
인구	36,806	7,603
경제활동인구	25,508	2,494
취업자(근로자, 사업자)	24,376	2,429
실업자	1,132	65
비경제활동인구	11,300	5,108
경제활동참가율	69.3	32.8
고용률	66.2	31.9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1.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와 만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전체 가구와 만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차이가 2000년도 45만 4천원 이었던 것이, 2005년 67만 9천원, 2010년 95만 4천원 그리고 2016년 111만 3천 원으로 2000년 대비 145%가 증가하였음
 - 이는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전체 소득 중 재산소득의 비중은 2003년 전후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재산소득 비중도 낮은 수준
 - 특히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재산소득 비중이 낮는데 그만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

[그림 III-8] 만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 추이

(단위: 천원, %)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1.

- 그러나 기존 소득기준으로만 빈곤율을 측정할 경우(소득빈곤율 A)에 만 25~64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컸지만, 소득과 순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소득과 순자산 결합 빈곤율 B)에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³¹⁾
 - 만 25~64세의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약 1%p(B-A)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만 25~64세 근로연령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만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기준 빈곤율보다 약 17%p(B-A)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보유 비중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
- 이는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 기준보다 소득과 순자산 기준으로 측정된 빈곤율을 이용한 결과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높을 경우 근로연령층보다 오히려 빈곤율이 낮으며, 노인 중에서도 자산수준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설정은 수직적 형평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표 III-2〉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비교

(단위: %)

구 분	소득빈곤율(A)			소득과 순자산 결합 빈곤율(B)		
	전체인구	25~64세	65세 이상	전체인구	25~64세	65세 이상
2012	16.1	11.7	49.3	15.7	12.2	31.7
2013	16.5	11.8	48.4	15.9	12.5	30.9
2014	16.3	11.4	48.4	15.4	12.0	30.9
2015	16.3	11.5	47.0	15.3	11.9	30.8
2016	15.9	10.9	46.9	15.0	11.7	29.3

주: 1. t년도의 소득이 Y_t , t년도 시작점에서의 순자산이 NW_{t-1} , ρ 는 이자율, n 은 연금화의 기간이라 할 때, t년도의 연금화된 소득(annuitized income) AY_t 은 $Y_t + (\rho \div (1 - (1 + \rho)^{-n})) \times NW_{t-1}$ 과 같음. 다만 주식의 소득(t년도)과 자산조사 측정 시점(t-1)과 통계청 자료의 측정 기준(소득 측정, t-1, 자산시점이 t)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본 연구에서의 t년도의 연금화된 소득은 t-1기의 소득(전년도 12월 31일 기준)과 t기(3월 31일 기준)의 자산의 합으로 가정

자료: 안서연(2018)의 <표 4>를 인용

31) 안서연(2018)은 Brandolini and Smeeding(2010)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즉 순자산을 현금화하여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산을 연금화한 후 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 특히 2018년 국세통계연보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근로소득자가 약 186만 명³²⁾으로 이중 만 60세 이상자는 약 14.5%인 27만명이며, 1인당 총급여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
 - 만 60~69세의 1인당 총급여액은 7,300만원이며, 만 70세 이상자는 1억 1,50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또한 만 60세 이상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비중도 전체의 31.8%인 점을 감안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동일하게 고소득자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결과임

〈표 III-3〉 연령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종합소득 신고인원		1인당 총급여액	1인당 소득금액	결정세액	
	인원합계	비중			1인당 세액	비중
전체평균	1,861	100	51.5	33.0	18.6	100
30세 미만	181	9.7	16.3	11.8	0.9	1.1
30세 이상	413	22.2	31.8	22.2	3.0	8.3
40세 이상	533	28.6	50.9	34.2	6.7	23.6
50세 이상	463	24.9	66.6	43.4	11.4	35.1
60세 이상	222	11.9	73.0	41.7	15.4	22.6
70세 이상	49	2.6	115.3	49.4	28.3	9.2

주: 1. “결정세액 비중”은 전체 결정세액 합계액 대비 해당 연령 결정세액 합계액 비중을 의미하며, 위의 인원수 중 국세통계연보상 “기타”로 분류된 20,522명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2018 국세통계연보(https://www.nts.go.kr/info/info_05.asp), 접속일자: 2019. 4. 3

- 이상에서 고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 수준이 높아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
 -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소득의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가처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임

3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근로소득자는 총 1,881,726명으로 여기에 연령 미상 20,522명을 제외한 1,861,204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형성된 자산은 소득의 원천이 되어 소비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나 노년시기의 질병, 실직 및 가족해체 등과 같은 경제적 시련에 따라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음(Wolff, 2010)

□ 다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일률적인 지원대상 설정으로 대상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근로연령층보다 근로소득 수준은 낮아질 수는 있어도 현금화가 가능한 보유 자산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빈곤수준이 낮을 수 있고,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도 자산수준에 따라 빈곤수준이 다를 수 있음
- 향후 만 65세의 노인계층이 총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연령 자체보다는 자산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일정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 중에서 재산수준 요건을 가입대상으로 설정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납세협력비용이나 가입절차의 단순화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수준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증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 또한 가입절차에서 가입신청자의 재산수준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며, 재산상황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재산수준 파악이 곤란
- 따라서 만 65세 이상 가입요건에 추가적으로 소득수준 요건을 설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신청자의 소득수준을 금융기관에서 국세청 납세확인자료 또는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전년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본 평가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으로 상대적인 빈곤율이 높거나 경제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대한 사전 확인과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별도의 소득수준이나 자산요건의 설정을 이슈로 다루지 않고자 함

- 노인복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이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목적과 기본이념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67만명으로 등록 장애인은 약 251만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50.5%인 약 127만명을 차지하고 있음
 - 등록 장애인은 2005년에는 170만명이었던 것이 2011년 252만명, 2014년 250만명 그리고 2017년 251만명으로 2005년 대비 47.8%가 증가
 - 이러한 장애인 인구규모는 2017년 총인구 5,136만명 중 4.89% 수준

- 장애 15개 구분기준으로 세부 장애인 규모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 순을 나타냄

<표 III-4> 장애인 연구현황(2017년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추정수(A)	등록장애인수(B)	등록률(% C=B/A)
계	2,668	2,511	94.1
지체장애	1,278	1,267	99.1
뇌병변장애	307	250	81.6
시각장애	267	253	94.7
청각장애	288	272	94.3
언어장애	21	19	92.0
지적장애	223	195	87.5
자폐성장애	24	23	95.4
정신장애	116	100	86.2
신장장애	84	79	93.9
심장장애	6	6	88.6
호흡기장애	14	12	83.8
간장애	11	11	100.0
안면장애	3	3	84.3
장루·요루장애	16	14	91.7
뇌전증(간질)장애	10	7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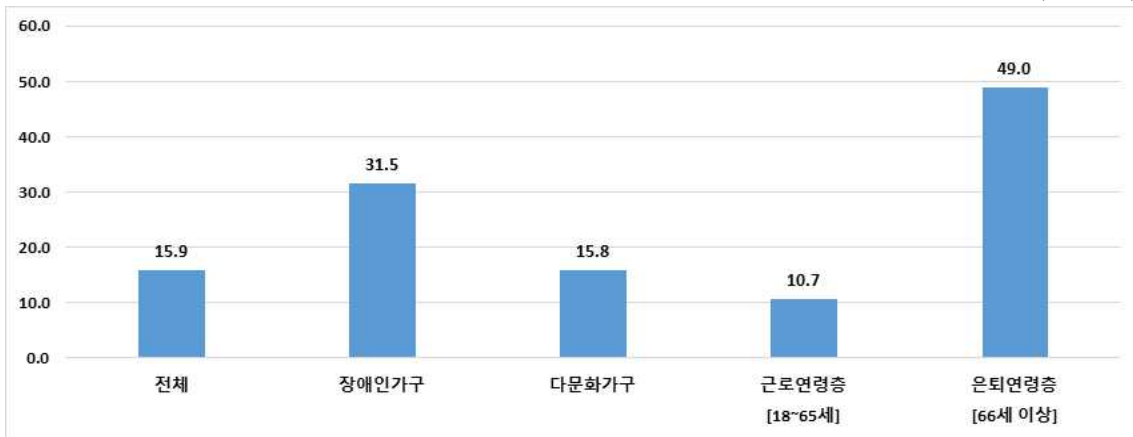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및 근로연령층(가구주 만 18~65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전체 가구는 15.9%와 근로연령층(가구주 만 18~65세)이 10.7%인 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31.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가구에 대한 빈곤탈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
 - 물론 노인가구라 할 수 있는 은퇴연령층(만 66세 이상)의 49%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산수준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노인가구보다 빈곤율이 높은 수준
- 또한 2018년 기준 만 15세 이상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63.1%, 60.7%인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각 37%, 34.5%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60% 수준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낮음
-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림 III-9]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현황(2016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표 III-5>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2018년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장애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인구(15세 이상)	44,182	2,495	1,252
경제활동인구	27,895	923	565
취업자(근로자, 사업자)	26,822	862	532
실업자	1,073	61	33
비경제활동인구	16,287	1,572	687
경제활동참가율	63.1	37.0	45.1
고용률	60.7	34.5	42.5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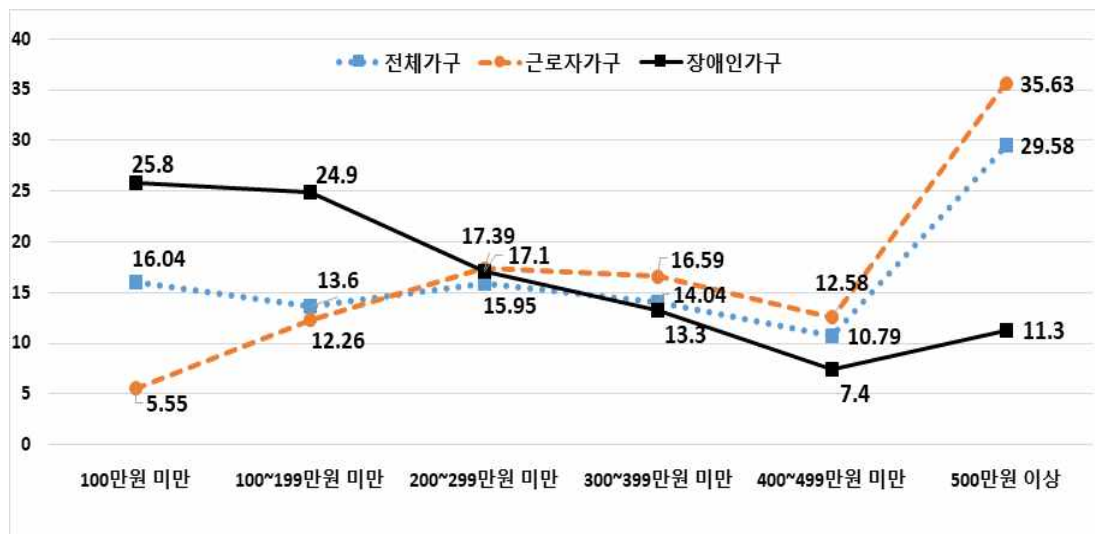
- 특히 장애인가구의 월소득 구간 분포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약 51%를 차지
 - 전체가구 또는 근로자가구와 다르게 장애인가구의 분포가 월소득 200만~299만원을 기준으로 미만구간에서는 월등히 높지만 초과구간에서는 급격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가구가 대체로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

- 특히, 전체 가구와 근로자가구에 장애인가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 및 근로자가구와는 반대의 비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분포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저소득 및 고소득구간에서 한국의 경우, 장애인가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는데 이는 장애인가구의 소득 차이가 미국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양극화 현상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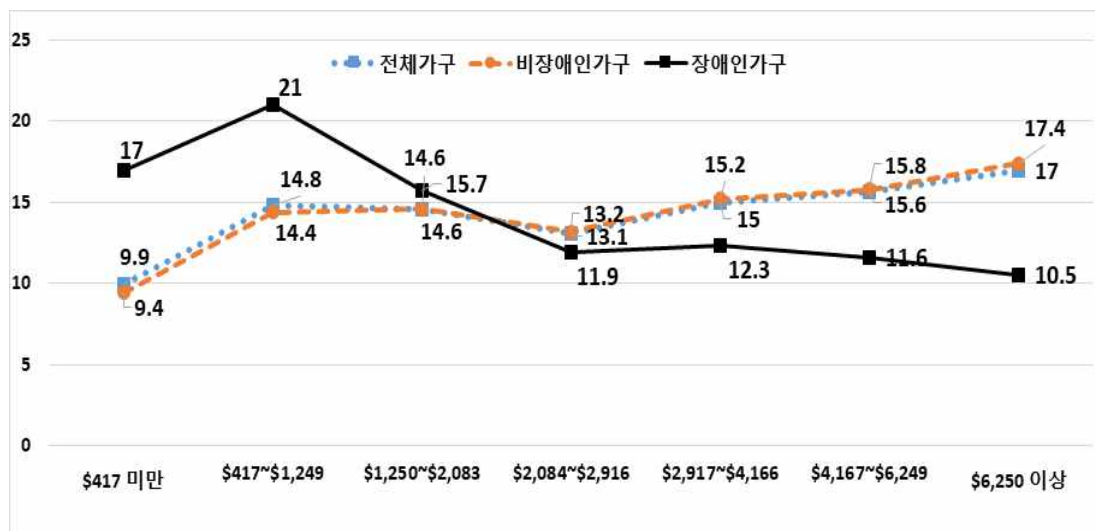
[그림 III-10] 월소득 구간별 분포(2016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기준)

(단위: %)

<패널 A: 한국>



<패널 B: 미국>



자료: 통계청(<http://kosis.kr>)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접속일자: 2019. 4. 6.

-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빈곤율과 소득분포에서 장애인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타당성은 분명히 존재
 - 장애인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빈곤율 수준이 높은 동시에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분포에서도 일반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과세특례에서 장애인 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바, 특히 경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
 - <표 III-6>에서 장애인가구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 전체 장애인가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중 일정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초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7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58만명으로 94.3%가 일반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수급자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4년에는 14.3%가 감소한 133만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내다가 2017년에는 158만명에 이르고 있음

〈표 III-6〉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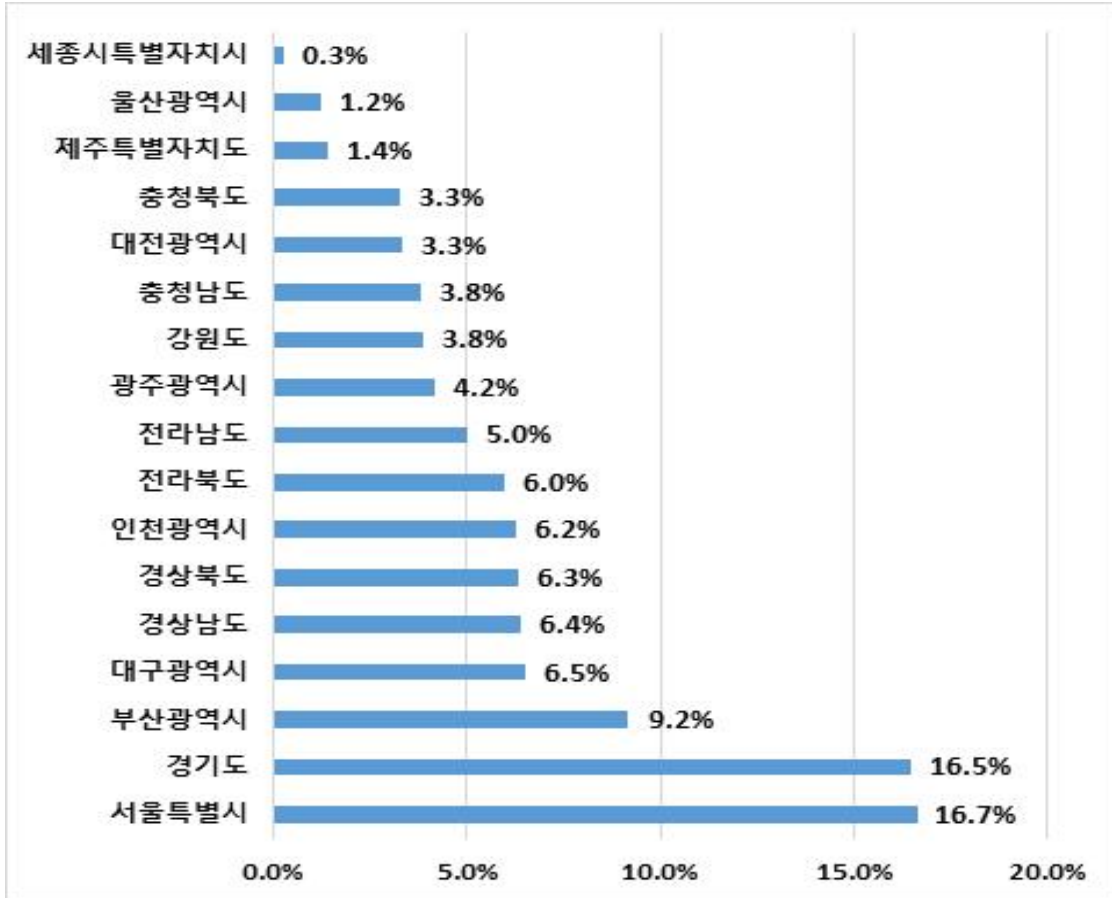
(단위: 천명)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10년	1,550	1,458	92
2011년	1,469	1,380	89
2012년	1,394	1,300	94
2013년	1,351	1,259	92
2014년	1,329	1,237	91
2015년	1,646	1,554	92
2016년	1,631	1,540	91
2017년	1,582	1,492	90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체로 서울, 경기, 부산 및 대구 순으로 밀집되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밀집도는 총인구 밀집도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그림 III-11]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 또한 2017년 현재 일반수급자는 약 149만명으로 54.2%가 여성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자가 28.9% 정도임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지원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자인 43만명이 동 과세특례의 중복 지원대상이 됨
 - 따라서 일반수급자 중 만 64세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약 106만명이 동 과세특례 대상이 됨

<표 III-7>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 인구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

	계	남성	여성	비율
계	1,491,650	682,893	808,757	100
비율	100	45.8	54.2	
만 15세 미만	205,687	105,778	99,909	13.8
만 15~64세	855,414	431,951	423,463	57.3
만 65세 이상	430,549	145,164	285,385	28.9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9. 4. 6.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결정되며,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수준으로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동 과세특례 지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충분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규정

- 위의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사업자 등 고소득층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여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여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동 과세특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문제가 존재

- 소득과 순자산 결합기준을 산출된 빈곤율 분포에서 고액자산가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전체 장애인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장애인도 11.3% 존재
 -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본 과세특례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이하자에 대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재산수준 요건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가입 조건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가입요건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³³⁾
 - 이에 반해, 가입요건으로서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없는 상황으로 만약 재산수준을 설정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가입신청자가 재산수준 확인 및 재산수준 증빙이 곤란
 - 금융기관은 가입신청자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신청자는 이러한 재산수준을 증빙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소요
 - 또한 아직까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재산정보를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이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과세관청이 저축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검증기능이 곤란

33)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로서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15개)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20억원,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과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 금융·보험업은 80억원,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및 도·소매업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및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이다.

-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또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한 수준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한정하며, 추가적으로 생애소득 주기를 고려할 때, 일정금액의 총연금수령액 이하의 연금소득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3. 지원방식의 적정성

가. 과세특례방식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방식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 중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 방식이 적절
 - 조세지출 규모만큼 재정지출로 지원한다면 정책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출 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저축행위를 유인하여 재산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 과세특례방식은 크게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며, 간접감면은 준비금,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가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등이 존재
 - 소득공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개인연금계좌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비과세종합저축과 더불어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발생한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표 III-8〉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지원방식 비교

	구분	가입대상자	지원방식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가소득자	금융소득 비과세 (장려금은 증여세·상속세 비과세)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무제한 (투자자)	배당소득 저율과세 한도초과자 분리과세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금융소득 비과세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자 (투자자)	출자금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회원 및 준회원	금융소득 비과세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비과세 비과세금액 초과분 저율분리과세
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군복무자	이자소득 비과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방식이나 세액공제방식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 2018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 중 82.1%인 약 1,478만명이 면세점 구간에 있음
 - EET방식이나 TEE방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어떤 방식이 저소득 계층에 보다 효과적인지는 실증연구된 바 없는 상황
 - 따라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민 및 중산층에는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현상은 개인연금계좌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음(김학수 등, 20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저소득층에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만큼 결정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인데 만약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자 중 82.1%에게는 소득공제와 같은 효과가 없지만 결정세액이 있는 322만명의 근로자는 면세점 이하 또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

- 실질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이 보다 저축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의 가입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조합 등의 예탁금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전체의 77.3%이고 전체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1조 9,280억 원의 약 74.5%를 점유
 -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의 경우 가입률이 각각 0.49%, 0.08%로 매우 낮고, 전체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각각 0.26%, 0.01%로 낮은 수준

- 한편, 「조특법」상 과세특례방식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재정지원 형태의 대응(matching)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책대상자의 저축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
 - 매칭지원은 정책대상자의 저축지원을 위해 저축자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동일한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
 - 그러나 정부의 매칭비율을 높일 경우, 전체적인 참여율과 납입액은 늘어나지만 실제 정책대상자의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실증연구의 결과(Duflo et al., 2006; Harvey et al., 2007)

- 비과세종합저축은 예·적금, 투자신탁, 보험저축, 공제저축,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은행, 증권사, 보험사, 조합, 우체국 및 각종 기금 등 금융사 전체이며 6대 법정 공제회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다양한 형태의 저축이 가능
 - 이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별도로 출시된 특정 금융상품이라기보다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표시만 하면 혜택 수혜가 가능
 -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이 모든 금융기관 및 일반 금융상품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기 용이하며, 저축가입액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 소득과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책대상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세부담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동 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면세점에 있더라도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 형태의 과세특례 방식일 경우에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정책 수혜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동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연평균 금융소득은 약 111만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자의 84.13%를 차지하는 수준(<표 III-9> 참조)
- 2017년 만 63세(1954년생)의 금융소득 분위(10분위)별 무작위 표본추출 자료(국세청 미시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의 평균 수익률이 2.215%로서 가입한도액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107,500원이 금융소득으로 추정됨

- 이러한 비과세 금융소득 수준은 2012년 기준 전체 금융소득자의 4,992만명 중 84.13%인 4,200만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자 상당부분이 동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I-9> 금융소득구간별 금융소득자 인원 현황(2012년 기준)

(단위: 명, %)

금융소득구간	인원수	비중
0원	1,432,873	2.79
10만원 이하	33,413,158	65.06
50만원 이하	5,870,157	11.43
100만원 이하	2,716,809	5.29
500만원 이하	6,260,473	12.19
1,000만원 이하	919,298	1.79
1,500만원 이하	323,552	0.63
2,000만원 이하	195,158	0.38
2,000만원 초과	225,973	0.44
계	51,357,451	100

자료: 이상엽·윤성만(2016)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평균 비과세 금융소득 110만원은 금융소득 분위 중 9분위의 일부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음
 - 금융소득 9분위는 109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1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가 일부 포함되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만 가입할 경우 금융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자의 8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금융소득 분위 중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비율이 5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자들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
 - 이에 반해 금융소득분위 8분위~10분위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은 79.1~84%로 다른 금융소득분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하 소득분위에 비해 금융소득도 높은 수준
 - 이 결과는 만 65세 이상자 중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

<표 III-10> 만 65세 이상 금융소득 현황(2017년 기준, 구간별 1,000명)

(단위: 원, %)

금융소득 분위	금융소득 범위	비중
1분위	1~97	0.7
2분위	98~559	0.8
3분위	560~2,057	1.5
4분위	2,059~7,087	3.6
5분위	7,088~30,531	9.6
6분위	30,545~168,243	34.3
7분위	168,597~502,004	66.0
8분위	502,169~1,093,926	79.1
9분위	1,093,946~2,402,770	84.0
10분위	2,403,648~29,160,802,996	81.5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또한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는 문턱효과가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 근접한 금융소득 수준인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게는 타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종합과세 기준금액 범위에서 벗어날 유인이 존재
 - [그림 III-12]의 201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문턱 2천만원~3천만원 사이의 금융소득자가 전체 13.4만명 중 35.5%인 4.7만명으로 비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비과세종합저축 납입한도액까지 가입하게 되면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문턱 2천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원내용으로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저축 등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정책대상자들의 세후 금융수익률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책지원대상자들 간 수평적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납입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금융소득 수익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크게 해칠 수준은 아님
- 이에 반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한정하여 판단해 보면, 5천만원이 납입 한도로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행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과의 중복가입으로 판단한다면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한 다른 비과세 과세특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하는 방법이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림 Ⅲ-12] 금융소득 구간별 금융소득자 분포(2017년 기준)



자료: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나.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및 중도인출의 허용

- 의무가입기간은 과세특례 금융상품별로 상이하며, 의무가입기간이 없는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존재
 -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또는 3년)이고,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설정
 - 이에 반해,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은 의무가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비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동성 수준이 낮은 저축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축적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높은 저축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
 -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해치는 효과는 없음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출시된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지정하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을 일괄해서 설정하기 곤란
 -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가 가입기간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법정 공제회의 경우에는 목돈수탁이라는 명목으로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 잔여 가입한도, 최소 납입액, 가입기간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거나 유동성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은 정책대상자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비해서 조세지출 규모가 큼
 - 2019년의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규모는 3,413억원으로 과세특례 금융상품 중 조합 등 예탁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
 - 이와 마찬가지로 조합 등 예탁금도 의무가입기간 없어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동성 수준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축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목돈지출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
 - 또한 가입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

문에 저축 또는 투자선호, 저축여력 및 향후 재정상황 등을 저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유인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과 중도인출의 허용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다. 납입한도

- 각 과세특례 금융상품별로 납입한도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납입한도의 설정은 자산이동효과와 수직적 형평성 문제에 직결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총납입한도가 5천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 2천만원(5년간 1억원), 조합 등 예탁금 3천만원 및 조합 등 출자금 1천만원
 - 소득공제방식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등은 각각 200만~500만원, 240만원, 400만원씩 소득금액에서 공제
 - 따라서 과세특례 금융상품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
 - 특히, 납입한도의 규모에 따라 기존 저축자들에게 귀속되는 혜택이 결정됨

〈표 III-11〉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납입한도 비교

	구 분	납입(공제)한도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 200만원~500만원(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 240만원(소득공제)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연 240만원(비과세)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액면가액 2억원 이하(분리과세), - 5천만원 이하(저율과세)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5천만원(비과세)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출자금 연 400만원(소득공제) - 액면가액 1,800만원(비과세)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출자금 1천만원(비과세) - 예탁금 3천만원(저율과세)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연 2천만원(비과세, 저율분리과세)
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월 40만원(24개월 이내, 총 960만원 이내)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 납입한도는 세수손실이라는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 제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
 - 연간 또는 월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이 일반 금융자산을 과세특례 금융상품으로 일시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이 점진적으로 적립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들이 더 많은 자산이동이 가능한 반면,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자영업자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이 많은 계층을 차별하는 문제가 존재
 -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에는 월 납입한도처럼, 짧은 기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입이 정기적인 계층에 비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음

- 또한 총 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와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모두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가입한도까지 즉시 납입할 수 있는 개인이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
 - 총 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기존의 축적된 자산을 이동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
 - 또한 분기·월 납입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이, 연 또는 월 납입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설정되는 것이 특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또는 5년,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음³⁴⁾

- 따라서 총납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연 납입한도를 설정할 경우 여전히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즉 연 납입한도까지 저축여력이 있는 저축자와 그렇지 않은 저축자 간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 그러나 총납입한도만을 설정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수직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납입한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발생하나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과 같이,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현행 총납입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모두를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징수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비과세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가 가능
 - 정부는 납입한도만을 관리 설정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된 납입액을 확인하여 잔여한도까지만 가입시키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특히 총납입한도 설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그 금융소득 한도 내의 저축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하게 됨

34) 「조특법」 제93조의5 제1항에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복무전환자를 해당 적금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볼 수 있다.

- 한편, 총납입한도만을 설정하고 그 저축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여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내지 고소득자에게 과세특례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의 종류, 자산운용 능력 및 납입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액자산가의 경우 전문자산관리사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누릴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저축원금에 발생하는 금융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원금 발생 금융소득에 대한 한도설정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
 - 예컨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설정
 - 물론 저축원금 발생 금융소득 한도를 설정한다 해도 그 한도 내에서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라. 가입 금융상품

-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과세특례별 투자 대상 금융상품이 서로 상이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이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법정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납입한도액 내에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나,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상품별로 여러 계좌에 저축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운용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조합 등의 예탁금 등은 특정 상품에 한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은 투자금지대상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자산 범위에 포함
- 저축수준이 낮은 계층의 저축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선호도가 낮은 개인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가진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 또한 최근 일반적인 자산형성의 방법이 단일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운영 및 관리하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편입자산 구성이 필요
 -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산형성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편입자산 범위를 투자금융상품까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퇴직연금의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Negative 운용규제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방식
 -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투자금지대상: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과세종합저축에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이는 연령, 소득, 자산 및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하나의 계좌에 여럿의 금융자산을 편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비과세종합저축은 다양한 개별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
- 이로 인해 금융지식이나 이해도가 낮은 저축의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

□ 국세청 미시자료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적금·부금·예탁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정기예금, 저축예금, 국내공모투자신탁 투자조합 신탁, 보험 및 국내외 사모투자ETF 등 총 21개 금융상품으로 다양
- 그러나 국세청 미시자료(10,000명)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금융상품은 적금·부금·예탁금에 96.37%가 집중되어 있으며, 파생결합상품 1.56%, 집합투자기부 1.01%, 채권 0.43% 및 주가연계증권 0.42% 순
- 이러한 분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비해 금융상품별 분산도가 낮은 수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
-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이 하나의 계좌를 신탁형 또는 일임형 형태로 저축 또는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표 III-12> 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상품 현황(가입자 3,611명 기준)

(단위: 개, %)

구분	상품 구분	계좌수	비중
이자소득 발생 상품	소계	6,506	98.52
	국공채	3	0.05
	회사채	17	0.26
	환매조건부 채권	8	0.12
	적금·부금·예탁금	6,364	96.37
	저축성보험	11	0.17
	파생결합상품	103	1.56
배당소득 발생 상품	소계	98	1.48
	집합투자기부	67	1.01
	주가연계증권(ELS)	28	0.42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3	0.05
계		6,604	100.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더구나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계좌 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 계좌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특례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국세청 미시자료(10,000명)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3,611명은 평균 1.83개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49.13%는 2개 계좌 이상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3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20% 이상이며 최대 16개를 보유한 가입자도 존재

〈표 III-1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 현황(가입자 3,611명 기준)

(단위: 개, %)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입계좌 수
	가입자 수	비 중	
1개	1,837	50.87	1,837
2개	1,036	28.69	2,072
3개	447	12.38	1,341
4개	183	5.07	732
5개	61	1.69	305
6개	29	0.80	174
7개	10	0.28	70
8개	6	0.17	48
9개	1	0.03	9
16개	1	0.03	16
계	3,611	1	6,604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4.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가. 과세특례 금융상품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본 과세특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저축지원 과세특례제도는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등이 있으며,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조특법」상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9개와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은 지원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지원대상자들의 중복 가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
-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소득종류 및 농어민 여부에 따라 다양하며 중복 가입이 가능
 -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가입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수혜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요건 충족 사업소득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 가능
 - 만 65세 이상의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국세청 미시자료(만 65세 이상 금융소득 기준 10분위별 200명씩 5년치=10,000명)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중복가입 현상을 분석하고자 함
 - 만 65세 이상 저축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배당기업 배당, 개인연금저축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8개
 - 이러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들과의 중복 가입현상을 분석함
- 국세청 미시자료상 8개 과세특례 금융상품 가입자는 56.05%이며,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금융소득은 약 78.3억원 수준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자를 보면, 조합 등 출자금 가입자 3,708명(37.08%)에 이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3,611명(36.11%)을 나타내며, 조합 등 예탁금 1,579명(15.79%) 및 세금우대저축 963명(9.36%) 순
 - 과세특례 금융상품별 금융소득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42.3억원(전체의 54%)에 이어 비과세종합저축은 15.6억원(19.95%), 조합 등 예탁금 9.3억원(11.87%), 세금우대저축 5.9억원(7.51%) 및 조합 등 출자금 3.6억원(4.57%) 순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3,611명)의 53.59%가 조합 등 출자금에 가입했으며, 37%와 21.07%가 각각 조합 등 예탁금과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등 중복가입 수준이 높음
 - 특히 조합 등 예탁금 가입자의 84.61%,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의 79.02% 그리고 조합 등 출자금 가입자의 52.18%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 저축자들이 중복 가입이 많은 상황
 - 이는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기축적된 자산이 많거나 저축여력이 높은 소수의 저축자가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Ⅲ-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복 가입 수 현황
(N=3,611명, 65세 이상 저축자)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대비 비중
		가입자수	가입률	
합계	6,570	4,179	63.61	100
조합 등 출자금	3,708	1,935	52.18	53.59
조합 등 예탁금	1,579	1,336	84.61	37.00
세금우대종합저축	963	761	79.02	21.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87	59	67.82	1.63
고배당기업 배당	121	51	42.15	1.41
개인연금저축	107	34	31.78	0.9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5	3	60.00	0.08

주: 1. 위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만 65세 이상 저축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복가입을 분석한 것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 가입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금융소득은 25.3%인 15.39억원 수준이며 이 중 조합 등 예탁금과 세금우대저축이 가장 많은 수준
 -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 가입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금융소득 15.39억원은 비과세종합저축의 금융소득 15.62억원보다 적은 수준

- 이것은 만 65세 이상 저축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조세지출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
-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 가입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 조합 등 예탁금의 금융소득이 8억원으로 전체 조합 등 예탁금 금융소득의 86.03%이며, 세금우대저축은 약 5억원으로 전체 세금우대저축 금융소득의 84.11%를 차지

<표 III-15> 비과세종합저축 중복 가입자의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현황
(N=3,611명, 65세 이상 저축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가입자		비과세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금융소득 대비 비중
		비과세·감면금 용소득	전체 대비 비중	
합계	6,268	1,585	25.29	100.0
조합 등 출자금	358	217	60.63	13.7
조합 등 예탁금	930	800	86.03	50.5
세금우대종합저축	588	495	84.11	3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66	46	69.95	2.9
고배당기업 배당	4,230	14	0.34	0.9
개인연금저축	95	12	13.14	0.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	1	34.13	0.0

주: 1) 위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금융소득은 1,562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 저소득층은 단일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한도까지 저축액 부족
 - 따라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별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통합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몰종료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을 통합 가능

〈표 III-16〉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구분	도입 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p>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 하도록 유도(조특법 제86조 의3)</p>	<p>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대표·소상공인</p>	<p>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 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 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p> <table border="1"> <tr> <td>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d> <td>공제한도</td>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p>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서민·중산층의 주택미련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 2항)</p>	<p>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소득자</p>	<p>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 소득 공제</p>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p>	<p>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 원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 (조특법 제87조의2)</p>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p>	<p>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비과세</p>								
<p>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p>수익률 확보로 리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임대 주택관리업 육성 및 임대 주택시장 안정화(조특법 제 87조의6)</p>	<p>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한 자</p>	<p>-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5% 저율과세 -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p>								
<p>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기 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 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조특법 제88조의4)</p>	<p>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우리사주조합원</p>	<p>- 출자금액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p>								

구분	도입 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 의욕 고취(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농협·수협·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	- 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이자소득 비과세(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조특법 제91조의18)	ISA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농어민(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수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able>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4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200만원	그 외	200만원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4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200만원										
그 외	2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장기저축 장 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 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자 등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보험료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보험: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연금계좌세액 공제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 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 400만원*(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을 추가) 한도로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또 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5%) *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는 300만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나.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현행 조세지출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용 중임
- (농어민 목돈마련 저축) 금융위원회의 사업으로 농어민 자산형성을 지원
 - (정책대상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일반 저축 가입 대상자, 저소득 저축 가입 대상자, 저축 가입 제한자의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요건

구분	요건
일반 저축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헥타르 초과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 - 5톤 초과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양식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선원 -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저소득 저축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농업인 (단,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는 제외함) -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어업인 -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 이하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농업인 -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저축 가입 제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자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의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가입자 외 세대원 소득 불포함)

자료: 농협 홈페이지,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D0230R.view>, 접속일자: 2019. 5. 20

- (지원방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에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저축기간, 계약만료 여부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표 III-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단위: %)

사유	저축 구분	계약(저축) 기간	장려금 지급률(평균잔액 기준)
계약 만료	일반 저축	3년	2.7
		5년	7.5
	저소득 저축	3년	9
		5년	24
중도 해지	일반 저축	3년 이상	0.54
		4년 이상	3.36
	저소득 저축	3년 이상	3.75
		4년 이상	6.8
사망, 천재지변 등	일반 저축	3년	2.7
		5년	7.5
	저소득 저축	3년	9
		5년	24

자료: 농협 홈페이지,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D0230R.view>, 접속일자: 2019. 5. 20

- (의무보유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
 - (가입한도)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 금액의 최고 한도는 240만원으로 월납 저축은 5천원 이상, 분기납 저축은 1만 5천원 이상, 6개월납 저축은 3만원 이상 저축해야 함
- (희망·내일키움 통장)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근로빈곤층의 목돈마련을 지원
- (정책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I)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희망키움통장 I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지원방식)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장려금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6만원으로, 3년 만기 탈수급 시 3인 가구 최대 2,200만원 적립,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18만원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비율로 지원, 3년 만기 시 평균 720만원 지원

-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은 본인저축액과 동일비율로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내일키움장려금은 시장진입형의 경우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은 본인저축액의 1:0.5이 지원, 내일키움수입금은 사업단별로 차등지급되는데 월 최대 15만원이 추가 지원됨
 - (의무보유기간) 희망키움통장 I 은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 통장 3년 유지에 교육이수 조건이 추가로 있으며, 내일키움통장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해야 하며 교육이수도 해야 함
 - (가입한도) 월 저축액이 정해져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I 과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혹은 10만원을 선택하여 월불입할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 월불입액 한도 10만원
-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일반형의 경우,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방법으로 인턴기간 3개월 월 최대 3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 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추가 3개월,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전략직종형의 경우,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방법으로 인턴기간 3개월 월 최대 4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추가 3개월, 월 최대 40만원 지원
- (기업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간접비용(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정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 하는 법인(영리 및 비영리)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 기업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일반형의 경우,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1인당 200만원, 최대 250만원), 해당 직무 필요 장비 및 설비, 안전시설, 개인보호구 등 안전 관리 및 작업 용이성을 위한 제반비용, 사회보험료, 홍보비 등 지원
- 세대통합형의 경우, ① 채용형: 만 60세 이상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② 재고용형: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만 60세 이상 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③ 기술유지형: 단기 촉탁직 등 일시적인 기술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 업종 관련 15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 시 직·간접비 지원, 참여자 인건비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

○ (지원분야)

<표 III-19>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신규 설립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70% 이상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시장형 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모기업 및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70% 이상 (직장형) 20% 이상 (직장형)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or.kr/main.do>), 접속일자: 2019. 6. 3

○ (지원대상기업)

- 인증형: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상용근로자 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의 비율
- 모기업연계형: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사업을 운영 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 단체)에 등록된 법인

□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표 III-20〉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인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p>중여세 과세가액 불산입</p>	<p>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p>	<p>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p>	<p>관할 세무서에 신청</p>
<p>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p>	<p>등록장애인</p>	<p>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글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육상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과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 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p>	<p>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p>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 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세계혜택), 접속일자: 2019. 5. 20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 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기초급여 지급금액)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 지급금액)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표 III-21>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 (일반)	2만원	4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세제혜택), 접속일자: 2019. 5. 20

□ (장애수당)

-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포함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함.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및 시간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대상자 및 근무장소)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 (근무시간 및 급여)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주5일), 월 1,574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시간제: 주 20시간(일 4시간 이상), 월 787천원

□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대상자 및 근무장소)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참여형),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근무시간 및 급여) 월 56시간(주 14시간), 월 422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 (대상자 및 근무장소)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 (근무시간 및 급여) 주 25시간(일 5시간), 월 1,094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대상자 및 근무장소)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 (근무시간 및 급여) 주 25시간(일 5시간), 월 982천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에 사용될 자금을 대여
 - (대상자)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율 및 상환방법) 최고 연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

<표 III-22> 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 요약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 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 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 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 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 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 화 중복 감면 없음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포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 실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서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의 차량)은 제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 지카드’ 신청개시('14. 12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 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 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 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 50% 경증장애인(4급~6급):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7&PAGE=7&topTitle=공공요금 감면), 접속일자: 2019. 5. 20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본 연구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제도의 실효성, 경제적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으로 구분

- 제도의 실효성은 본 과세특례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적 활용도와 유사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하여 본 과세특례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상대적 활용도로 구분
 - 절대적 활용도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지원대상자(정책대상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
 - 또한 상대적 활용도는 유사 과세특례와 비교하여 정책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

-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국세청 납세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모형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계좌가 저축지원효과와 자산이전현상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정책목적인 자산형성지원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그리고 형평성 분석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수혜자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입률)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가입액)를 분석함

1. 제도의 실효성

가. 절대적 활용도

- 비과세종합저축의 절대적 활용도는 잠재적 가입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얼마만큼이 본 과세특례를 활용하고 있는지와 전체 소득과 기존 금융자산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이 본 과세특례에 납입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함

- 하지만 주 정책대상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은퇴를 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국세청 개인소득 자료를 통한 저축여력의 파악이 어려움
 - 또한 비과세저축 활용 여부, 납입금액과 개인의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음
 - 65세 이상 거주자 외에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격 요건과 근로 및 사업소득,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 여부 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자료 또한 부재함

- 본 평가에서는 과세특례의 주 정책대상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임을 고려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 여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활용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귀속연도 2013~2017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 중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총 1만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한 국세청 미시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함
 - 65세 이상은 은퇴 후 시점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통한 저축여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산 이동의 현황보다는 활용도 측면에서 상세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가입자 기준) 귀속연도 2013~2017년 기준, 금융소득이 있는 1954년 이전 출생자 10,000명 중 약 36.1%가 가입
 - 은행연합회가 제공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기준 시, 65세 이상 가입자가 2018년 12월 기준 총 395만명 수준으로 같은 시점 65세 이상 인구 742만명 중 약 53.2%가 가입된 것으로 조사됨
 - 두 자료의 가입률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샘플을 제공하는 국세청 납세자료의 특성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따른 샘플링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편차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금융상품 가입 시 간단히 비과세 신청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본 과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할 때, 60%에 미치지 않는 전체 가입률은 주 정책대상자인 노령층 대상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

<표 IV-1> 금융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원, 명, %)

금융 소득분위	금융소득 범위		가입자 수	표본수	가입률
	최솟값	최댓값			
1분위	1	97	7	1,000	0.7
2분위	98	559	8	1,000	0.8
3분위	560	2,057	15	1,000	1.5
4분위	2,059	7,087	36	1,000	3.6
5분위	7,088	30,531	96	1,000	9.6
6분위	30,545	168,243	343	1,000	34.3
7분위	168,597	502,004	660	1,000	66.0
8분위	502,169	1,093,926	791	1,000	79.1
9분위	1,093,946	2,402,770	840	1,000	84.0
10분위	2,403,648	29,160,802,996	815	1,000	81.5
합 계			3,611	10,000	36.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가입 상품) 앞서 설명한 2013~2017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 중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3,611명이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상품 중 정기예금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다음으로는 기타 저축성예금이 31.4%, 조합 등 예탁금이 11.1%의 비중임
 - 다양한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은퇴 후 저축여력에 한계가 존재하고 기존 계좌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신규 금융상품 가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비교적 노령층에 활용이 용이한 정기예금과 기타 저축성 예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3,611명의 가입자가 총 6,465개의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8개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상품 종류

(단위: 개, %)

상품종류	개수	비중
정기예금	2,697	41.72
정기적금	588	9.1
상호부금	107	1.66
주택부금	47	0.73
저축예금	55	0.85
ELD	3	0.05
기타 저축성 예금	2,030	31.4
MMDA	3	0.05
기타 요구불 예금	7	0.11
조합 등 예탁금	720	11.14
일반 예탁금	23	0.36
예보 개산지급금	2	0.03
기타	82	1.27
금융채	14	0.22
일반회사채	1	0.02
발행어음	2	0.03
기타채권	3	0.05
기타 보험	11	0.17
국내공모투자신탁 투자 조합	61	0.94
국내 사모투자 ETF	1	0.02
해외 사모투자 ETF	5	0.08
파생증권 (광산물)	3	0.05
합계	6,465	1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납입액 기준) 원천징수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특례에 해당하는 계좌의 평균 이자 발생액은 328,380원, 평균 이자율은 2.22%로 해당 계좌의 평잔액은 약 1,483만원임
 - 이자배당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파악하는 국세청 납세자료 특성상 특정 시점의 평잔액을 이자율과 이자발생액으로 역산하여 추정

- (가입자 유형) 연령조건 때문에 가입자 중 근로소득(약 13%) 및 사업소득(약 10%) 보유 여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대상자 중 38.1%만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였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39.8%가 가입

-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평균은 각각 약 1,900만, 2,200만원이며, 은퇴자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퇴자보다 오히려 저축여력이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

<표 IV-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 및 가입현황

(단위: 개, 천원,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452(12.5)	3,159(87.5)	354(9.8)	3,257(90.2)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18,844천원	-	22,246	-
아니오	733(11.5)	5,656(88.5)	535(8.4)	5,854(91.6)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25,222	-	16,136	-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상대적 활용도

-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약 70%가 다른 특례 상품을 활용 중인 반면, 비가입자 중 다른 어떤 특례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약 65%를 차지
- 또한 다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금융상품을 활용 중인 사람 중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53% 수준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만 가입한 경우는 21%에 그쳐 활용도에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

<표 IV-4> 비과세종합저축 외 다른 과세특례 상품 보유 여부

(단위: 개,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여부	타 조세특례 상품 가입 여부		합 계
	예	아니오	
예(비중)	2,523	1,088	3,611
	25	11	36
아니오(비중)	2,205	4,184	6,389
	22	42	64
합 계	4,728	5,272	10,0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비과세종합저축 특례와 중복 수혜 중인 과세특례 중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 §88의 5)과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 §89의3)에 대한 사항이 각각 8.2%, 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상품의 특례 해당 사항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외에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18.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몰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비중이 4.7%로 조사됨

<표 IV-5> 비과세종합저축 및 타 특례 상품 중복 보유자의 과세 특례 상품 구성

(단위: 개, %)

특례코드	계좌수	비중	내역
NN	14,954	57.93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PE	1	0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PI	2	0.01	영농조합법인 배당
PK	8	0.03	농업회사 배당
PO	5	0.02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PP	2	0.01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
PR	3	0.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
PS	5	0.02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
PX	9	0.03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
PZ	12	0.05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SA	57	0.22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SB	3	0.0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SC	4	0.02	장기주택마련저축
SD	30	0.12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E	59	0.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F	1	0	선박투자회사 배당
SH	4,773	18.49	비과세 종합저축
SK	2,124	8.23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L	1,201	4.65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M	2,310	8.95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O	5	0.0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
SY	61	0.24	고배당기업 배당(조특법§104의27)
ZZ	183	0.71	기타
합계	25,812	1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가. 개요

- 본 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쟁점은 크게 저축효과, 자산형성 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로 구분됨
 - 저축효과는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축, 즉 납입 저축액이 증가하였는지를 의미
 - 자산형성 지원효과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함으로써 비과세 또는 감면을 통해 자산형성에 지원이 되었는지를 의미
 -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혜택을 통해 증가된 세후수익률만큼 자산형성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
 - 자산이동효과는 기(既)축적된 자산, 일반과세 금융상품의 투자액,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함을 의미

-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여부 외에도 개인의 소득, 자산 및 저축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존재
 - 이러한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어 간접적인 효과 분석이 요구되며, 본 평가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저축 증대 및 재산 형성 효과 분석
 - 2014년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입가능 연령제한을 60세에서 65세로 강화하고 가입가능연령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따라 2014년 당시 60세였던 1954년생은 2014년 이후 항시 가입 가능하나, 당시 59세였던 1955년생은 2019년 현재까지 가입 불가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별 소득, 자산, 조세지출 자료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여부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1954년생과 1955년생의 경우, 가입조건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준실험적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도입의 평균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2012~2017년간 두 집단 간의 저축 행태 비교를 통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효과를 비교
 - 1954년생과 1955년생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유사한 두 집단이라는 합리적 가정이 가능
 - 1954년생의 만 60세를 기점으로 저축액, 저축 형태(금융 혹은 실물 자산), 자산 형성의 변화와, 1955년생의 만 60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의 효과 측정
 - 가입요건 제한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됨에 따라 도입 초기 효과뿐 아니라 중기 효과도 파악 가능

-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추정된 결과는 각 집단(1954년생, 1955년생) 간의 평균적인 정책효과 차이를 나타냄
 - 한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평균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통하여 추정된 결과값에 각 1954년생의 가입률(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파악 가능)을 고려하여 계수를 조정하여 파악할 수 있음
 - 단,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효과가 집단에게 나타나는 평균적인 정책효과인지 가입한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평균적인 정책효과인지는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가입률 자체가 정책의 중요한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정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효과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즉, 상품에 가입한 개인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음

- 저축효과, 자산형성 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미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경제효과성 분석을 보완하고자 함
 - 65세 이상 중 소규모의 표본만을 보유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성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저축효과와 자산형성 지원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회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이를 반영한 표본추출을 통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 자산형성 지원효과 등을 인과적으로 밝힐 수 있

으나, 65세 이상이 되면 차별없이 가입조건이 주어지는 현 제도의 특성상 인과적 효과를 판별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과 같은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금융 및 실물자산수준 등의 통제변수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과 저축 및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를 인과적 효과로 주장하기에는 본 설문조사의 샘플링 방식 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함

나. 자료

-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및 미가입자 대상 설문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우선,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출생연도를 제공하지 않고 만나이만 제공하나 본 분석을 위해서는 출생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협조를 통하여 출생연도 변수를 제공받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나이, 세대원 수와 같은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가계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구의 저축 및 자산형성에 대한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
- (기초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1954년생 기준 매년 350여 가구, 1955년생 기준 매년 400여 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가구별 평균 조사 참여 횟수는 3.17회로 분석을 위한 적절한 표본 수가 존재함

〈표 IV-6〉 연도별·출생연도별 가구수

(단위: 가구)

구분	1954년생	1955년생	연도별 전체 가구수
2012	366	477	19,744
2013	340	409	18,594
2014	322	408	17,863
2015	349	413	18,031
2016	355	414	18,273
2017	354	413	18,497
전체연도 가구 수 단순총합	2,086	2,534	111,00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7>는 1954년생의 자산과 소득에 관련된 주요 변수의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의 평균값을 정리함

○ <표 IV-7>의 첫 번째 칸은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나타냄

- 1954년생의 평균적인 자산총액은 약 4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약 3억 6,500만원이 순자산액으로 구성됨
- 금융자산은 9,090만원 수준으로 순자산의 약 25%의 비중을 구성함
 - 저축액은 7,781만원으로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저축액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저축액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 평균적으로 1,049만원으로 저축액의 약 13.5%의 비중을 차지함
 - 주식 및 채권은 평균적으로 789만원을 보유함
- 1954년생은 평균적으로 3억 5,000만원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인 3억 3,320만원은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
 - 기타실물 자산은 1,738만원 보유
- 평균적인 부채총액은 7,588만원으로 이중 65%인 4,974만원은 금융부채
- 평균적인 재산소득은 373만원이며 이중 금융소득은 12만원에 불과하여 대체적으로 금융소득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V-7>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1954년생 가구를 근로 및 사업소득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함

- 전체 2,086가구 중 1,891가구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반면 195가구만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들의 경우 일정정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들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에 비하여 모든 재산 항목의 평균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총액과 금융부채 역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값이 높음
- 반면, 재산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가 24만원 높고, 금융소득은 5만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V-7>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칸은 1954년생 가구를 순자산액 5분위로 구분하여 이중 순자산액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들과 5분위 가구들의 평균값을 비교함

- 1분위 가구의 자산총액은 평균 2,591만원이며, 5분위 가구의 자산총액 평균은 11억 5,000만원으로 1분위 가구의 약 44배 수준으로 나타남
- 1분위 가구의 순자산액은 평균 719만원이며, 5분위 가구의 자산총액 평균은 9억 7,000만원으로 1분위 가구의 약 135배 수준으로 나타남
 - 1분위 가구는 자산총액 중 부채비중이 높아 순자산액은 전체 자산의 28%에 불과함
- 1분위 가구는 재산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득 역시 0에 근접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 IV-7> 기초통계 1954년생(2012~2017년 평균)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 여부		순자산액 5분위	
		유	무	1분위	5분위
자산총액	44,149.1	45,281.9	33,164.7	2,591.4	114,919.6
순자산액	36,561.1	37,573.7	26,741.6	719.4	97,175.0
금융자산	9,090.2	9,409.8	5,990.9	1,360.8	21,273.2
저축액	7,781.2	8,089.8	4,787.9	701.5	18,796.0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1,049.3	1,084.1	712.6	159.1	2,468.7
주식 채권 등	789.0	812.2	564.5	0.3	2,664.4
실물자산	35,058.9	35,872.0	27,173.8	1,230.6	93,646.4
부동산	33,320.6	34,020.4	26,534.5	1,019.7	90,010.5
기타실물자산	1,738.3	1,851.6	639.3	210.9	3,635.9
부채총액	7,588.1	7,708.2	6,423.1	1,872.1	17,744.6
금융부채	4,973.6	5,159.0	3,175.8	1,632.9	10,517.3
재산소득	373.3	371.1	394.8	2.8	1,131.0
금융소득	12.1	11.6	16.9	0.7	27.8
가구 수	2,086	1,891	195	352	55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8>은 통제집단인 1955년생의 자산과 소득에 관련된 주요 변수의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의 평균값을 정리함
 - 전체적으로 1954년생과 모든 변수의 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1955년생의 재산이 1954년생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임

- 한편 1955년생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의 자산총액과 순자산액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의 수는 작은 반면 몇몇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어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됨
- 1955년생의 순자산액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자산 및 소득은 대체적으로 1954년생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8〉 기초통계 1955년생(2012~2017년 평균)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 여부		순자산액 5분위	
		유	무	1분위	5분위
자산총액	46,853.5	46,842.7	46,988.0	3,117.2	112,520.3
순자산액	39,148.8	39,026.8	40,677.6	732.0	95,748.2
금융자산	10,696.9	10,965.4	7,331.8	1,547.1	24,310.7
저축액	9,698.6	9,984.8	6,111.0	738.9	22,907.5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1,187.8	1,219.2	794.1	137.9	28,826
주식채권 등	1,041.0	1,097.9	327.0	5.6	3,225.1
실물자산	36,156.6	35,877.4	39,656.2	1,570.0	88,209.6
부동산	33,839.0	33,422.2	39,063.3	1,363.2	83,182.1
기타실물자산	2,317.6	2,455.2	592.9	206.8	5,027.6
부채총액	7,704.7	7,816.0	6,310.4	2,385.1	16,772.1
금융부채	4,895.4	5,043.6	3,037.3	2,162.1	9,238.3
재산소득	383.7	351.9	782.2	12.5	1,118.0
금융소득	7.7	6.4	24.6	0.04	20.3
가구 수	2,534	2,319	185	412	74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설문자료는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여부, 가입 금액, 가입동기 및 제도인식, 개선안에 대한 자료로 구성
 - 최종 표본배분은 추정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수에 따른 비례배분을 통해 총응답 표본 수는 507명으로 가입자 258명, 해지자 43명, 미가입자 206명을 선정하였음
 -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인구 분포와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편의적 표본추출을 진행하였음

다. 분석모형

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비과세종합저축 경제적 효과 분석

□ 아래 회귀 분석식 (1), (2), (3)을 이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제도가 저축 및 자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y_{it} = \alpha + \beta_0 \cdot T_{2014} + \beta_1 \cdot D_{1954} + \beta_2 \cdot T_{2014} \times D_{1954} + \epsilon_{it}$$

$$(2) y_{it} = \alpha + \eta_t + \gamma_{\text{만나이}} + \beta_0 \cdot D_{1954,55} + \beta_1 \cdot D_{1954} + \beta_2 \cdot T_{2014} \times D_{1954,55} + \beta_3 \cdot T_{2014} \times D_{1954} + \epsilon_{it}$$

$$(3) y_{it} = \delta_i + \eta_t + \beta_0 \cdot T_{2014} \times D_{1954,55} + \beta_1 \cdot T_{2014} \times D_{1954} + \epsilon_{it}$$

○ 주요 변수

- y_{it} : 저축, 자산 등 관심변수
- T_{2014} : 2014년 이후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D_{1954,55}$: 1954년생 혹은 1955년생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D_{1954} : 1954년생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교차항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값이 핵심 변수

- 변수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는 관심군인 1954년생 코호트의 저축 및 재산 등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로 편입된 2014년 이후 비교군인 1955년생 코호트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측정

□ 식 (1)은 가장 기본적인 이중차분법 식으로 1954년생과 1955년생만 포함된 표본을 바탕으로 추정

- 계수 β_0 은 통제집단인 1955년생에서 나타는 관심변수(y)의 정책효과(2014년 이후의 값과 2014년 이전 값의 차이)를 측정
- 계수 β_1 은 통제집단인 1955년생과 1954년생 간의 관심변수값의 차이를 측정
- 계수 β_2 는 변수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로 정책효과 측정

- 식 (2)는 식 (1)의 추정식에 시간-고정효과와 만나이-고정효과를 포함한 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
 - 식 (1)은 가장 간소한 형태의 추정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와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
 - 따라서 식 (2)의 경우 시간-고정효과와 만나이-고정효과를 포함하여 추정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통제
 - 식 (2)의 계수 β_3 는 변수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로 식 (1)의 계수와 같은 정책효과 측정

- 식 (3)은 식 (1)의 추정식에 시간-고정효과와 개인-고정효과를 포함한 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
 - 개인-고정효과를 포함할 경우, 개인의 고정된 특성들은 모두 통제됨에 따라 개인 고유의 특성에 의한 여러 내생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식 (3)의 계수 β_1 는 변수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로 식 (1)의 계수와 같은 정책효과 측정
 - 식 (3)의 경우 추정에 활용되는 변동성은, 정책 시행 전후 변하는 개개인의 종속 변수값의 1954년생의 평균적인 변화와 1955년생의 평균적인 변화값의 차이

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간접적인 효과성 분석

- 저축효과, 자산형성 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의 인과적 분석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 저축, 자산형성 및 자산이동과 관련된 설문대상자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와 같이 서열척도로 구성된 설문의 특성상 순위별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본 과세 특례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추정치의 인과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소규모 표본추출 시 발생하는 샘플링 변이 문제로 추정치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요 설문결과를 제시하는 선에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완하고자 함

라. 분석 결과

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비과세종합저축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표 IV-9> 회귀분석 결과

- 관심변수인 교차항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값만 각 종속변수별 보고
- 각 칸은 각각 다른 회귀식(specification)을 나타냄
 - (1)은 회귀분석 식 (1)에 해당하며 보고된 계수값은 식 (1)의 계수 β_2 의 값
 - (2)는 회귀분석 식 (2)에 해당하며 보고된 계수값은 식 (2)의 계수 β_3 의 값
 - (3)은 회귀분석 식 (3)에 해당하며 보고된 계수값은 식 (3)의 계수 β_1 의 값

<표 IV-9>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단위: 만원)

구분	(1)	(2)	(3)
자산총액	-3270.0 (4293.6)	501.9 (4471.7)	-1400.8 (1322.3)
순자산액	-1535.8 (3614.7)	157.8 (3761.4)	-691.1 (1159.6)
금융자산	-1090.1 (1183.8)	-529.9 (1239.8)	-630.6 (508.6)
저축액	-691.9 (1102.8)	-260.7 (1154.9)	-367.0 (469.5)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115.1 (282.9)	160.9 (290.4)	206.7 (246.1)
주식 채권 등	15.2 (858.4)	35.7 (618.4)	-67.6 (191.8)
실물자산	-2179.8 (3674.0)	28.0 (3817.6)	-770.3 (1224.1)
부동산	-2176.3 (3574.2)	-176.0 (3707.7)	-814.6 (1194.6)
기타실물자산	-3.5 (280.2)	203.9 (309.3)	44.4 (127.1)
부채총액	-1734.1 (1186.6)	-659.0 (1239.0)	-709.8 (662.5)
금융부채	-823.8 (886.7)	-112.9 (925.5)	-365.9 (570.4)
재산소득	-47.9 (89.7)	-18.3 (92.0)	55.3 (67.6)
금융소득	6.6 (9.5)	7.2 (9.3)	1.2 (11.6)

주: 1. 각 값은 교차항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 값을 보고하고 있으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값

2. 적립·예치식저축 항목은 2017년 이전에는 자료 없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분석의 종속변수로는 자산, 부채, 소득 중 비과세종합저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주요 변수를 활용

□ (자산총액)

○ 비과세종합저축제도가 자산형성에 효과가 있을 경우 자산총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했을 경우 관심변수인 교차항 $T_{2014} \times D_{1954}$ 의 계수값은 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추정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은 자산총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식 (1), (2), (3)의 추정결과 추정식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계수값의 크기와 부호 모두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

- 또한 추정된 계수값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추정식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정책이 자산총액을 3,000만원 감소에서부터 500만원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책 자체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려움

- 이는 실질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가구의 자산총액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순자산액) 비과세종합저축제도가 자산총액에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에는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자산액에 대한 효과 추정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순자산액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경우 양(+)의 계수값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됨

○ 순자산액에 대한 추정 결과 역시 자산총액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결과가 추정됨

○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가구의 순자산액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됨

□ (금융자산) 비과세종합저축제도와 가장 밀접한 자산항목인 금융자산에 대한 효과 분석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금융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경우 양(+)¹⁾의 계수값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자산에 대한 추정 결과 역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결과가 추정됨
- (저축액,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세부항목인 저축액,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추정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인 결과가 추정
- 금융자산의 세부 항목 역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인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실물자산) 한편, 가능성은 낮지만 가구들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투자에 활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자산항목에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추정결과 실물자산과 관련 세부 항목에서 역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인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부채총액, 금융부채) 가구들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부터 이전된 소득을 자산형성이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을 경우, 부채총액 혹은 금융부채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부채 상환에 기여하였을 경우 음(-)의 계수값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됨
 - 부채총액 및 금융부채에 대한 추정 결과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나, 제한적인 제도에 비하여 부채가 많게는 1,700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결과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하여, 정책과 부채 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가구의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됨
- (재산소득, 금융소득) 한편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효과로 인하여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역시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결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양(+)의 계수값이 추정될 것으로 예상됨
 - 재산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추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못함
 - 금융소득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 값이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며, 경제적으로도 정책효과의 범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값이 추정됨
 - 다만, 표준오차가 매우 넓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종합) 분석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 자산형성, 소득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함
- 모든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축, 자산형성에 관련된 계수값은 경제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값이 아님
 -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이 가구의 경제상황에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추정식 식 (1)에서 뿐만 아니라, 만나이-고정효과, 시간-고정효과, 개인-고정효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발생하여 내생성 혹은 잘못된 추정방식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미미함
- 한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1954년생 전체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세부 특정 집단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정할 필요성이 있음
- <표 IV-10>은 가구들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 것임
-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음
 - 또한 추정된 계수들의 값은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계수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근로 및 사업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에 대하여 비과세종합저

축 제도의 효과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히 통계적 불확실성에 의한 우연으로서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처럼 여러 변수에 대한 검정을 여러 차례 수행할 경우 실제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추정된 계수값을 정책효과로 해석할 경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추정값임을 알 수 있음

<표 IV-10>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단위: 만원)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있음	근로 및 사업소득 없음
자산총액	-1361.2 (4042.9)	-351.3 (1396.7)
순자산액	-2062.8 (3021.1)	4.8 (1237.8)
금융자산	-4040.7* (2096.7)	-422.9 (547.1)
저축액	-3332.1 (2038.6)	-148.1 (503.7)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203.5 (282.2)	191.7 (271.6)
주식 채권 등	-163.8 (293.9)	-53.6 (214.0)
실물자산	2679.5 (3782.8)	71.6 (1293.1)
부동산	2649.9 (3780.1)	-74.3 (1263.8)
기타실물자산	29.6 (103.4)	145.8 (132.8)
부채총액	701.6 (2826.5)	-356.2 (627.7)
금융부채	1766.7 (2251.7)	-53.8 (532.4)
재산소득	63.3 (164.7)	79.4 (69.8)
금융소득	-1.4 (5.7)	4.4 (12.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11>은 순자산액 5분위 중 1분위에 속한 가구와 순자산액 5분위 가구에 대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효과를 분석함
-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검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들이 저축액이 높아 비과세종합저축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자산액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검정할 필요성 역시 존재함
 -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순자산액 기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음

<표 IV-11>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단위: 만원)

구분	순자산액 1분위 가구	순자산액 5분위 가구
자산총액	499.7 (335.6)	-1868.2 (4733.6)
순자산액	454.7 (324.9)	-15.5 (4346.3)
금융자산	-422.9 (547.1)	-1285.4 (1839.7)
저축액	-14.7 (109.4)	-678.1 (1693.8)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48.5 (33.1)	745.6 (949.8)
주식 채권 등	1.9 (1.3)	121.5 (752.9)
실물자산	351.9 (301.0)	-582.7 (4420.4)
부동산	339.8 (292.8)	-518.4 (4330.1)
기타실물자산	12.1 (51.7)	-64.3 (339.8)
부채총액	45.0 (479.3)	-1852.6 (2437.1)
금융부채	-171.3 (381.5)	-534.8 (2120.4)
재산소득	9.5 (12.1)	264.2 (284.3)
금융소득	-0.0 (0.1)	20.0 (51.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또한 추정된 계수들의 값은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인 계수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순자산액 분위와 관계없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금융소득 분위별 자산 및 소득규모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가구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제도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제한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적합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제도 가입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자산 및 기타 소득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소득 5분위별 주요 소득 및 자산 변수를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전체 18,497가구 중 금융소득이 없는 가구가 16,021가구로 나타남
 - 65세 이상의 가구 5,144 가구 중 금융소득이 없는 가구는 4,190가구
-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가구들의 자산 및 소득을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분석
- 금융소득 5분위 기초통계 <표 IV-12>

<표 IV-12>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소득 5분위 기초통계

(단위: 만원, 가구)

	전체		만 65세 이상	
	최댓값	가구 수	최댓값	가구 수
1분위	20	546	20	241
2분위	50	473	40	152
3분위	100	493	95	183
4분위	250	483	200	202
5분위	11,500	481	11,500	176
전체	11,500	2,476	11,500	95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금융소득과 가구의 자산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득 5분위별 가구의 자산총액, 순자산액, 금융자산, 저축액의 평균값을 계산함(<표 IV-13> 참조)

<표 IV-13> 금융소득 5분위별 자산 규모

(단위: 만원)

분류 기준		금융소득 5분위별 평균 금액					전체	금융소득 없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총액	전체	34,483	42,390	53,229	68,050	144,361	67,619	32,562
	만 65세 이상	26,938	32,867	38,883	55,810	147,785	58,582	27,039
순자 산액	전체	29,376	37,640	47,187	63,197	133,050	61,239	25,979
	만 65세 이상	23,158	29,836	35,687	53,188	140,667	54,663	23,503
금융 자산	전체	7,143	9,624	13,543	20,894	53,230	20,527	7,545
	만 65세 이상	3,099	5,070	6,450	12,090	49,088	14,444	3,332
저축 액	전체	6,095	8,662	11,849	18,936	48,639	18,501	5,421
	만 65세 이상	2,875	4,802	6,084	11,855	48,311	14,081	2,56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자산총액)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자산총액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표본 모두에서 금융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총액 역시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표본의 금융소득 5분위별 자산총액 금액은 대체로 유사하며 금융소득 5분위 가구를 제외할 경우 만 65세 가구의 자산총액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 자산총액이 약 2억 7,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46% 수준으로 나타남
 -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자산총액은 금융소득 5분위 가구 대비 18% 수준
 - 금융소득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기는 하나 그 증가 정도는 비교적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소득이 없는 가구의 평균 자산총액은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자산총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순자산액)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순자산액의 평균값은 자산총액의 평균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자산총액과 마찬가지로 전체표본과 만 65세 이상 가구에서 모두 금융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액 역시 증가하나 그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하다고 할 수 있음

- (금융자산)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금융자산의 평균값 역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함
 - 전체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값은 전체 평균 대비 35% 수준으로 자산총액에 비해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값은 5분위 가구 대비 13% 수준
 - 만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대비 금융자산의 평균금액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분포의 불평등 정도 역시 전체가구에 비해 심하게 나타남
 - 만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금액은 전체 가구 평균 대비 70%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액이 전체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값은 만 65세 이상 가구 전체 평균 대비 21% 수준에 불과함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값은 금융소득 5분위 가구 대비 6%에 불과하여 불평등 정도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축액) 저축액은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에 따른 분포 역시 금융자산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저축액의 경우 전체 만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전체 가구 평균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인가구의 저축액 평균금액이 전체가구에 비해 낮으나,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전체가구 평균과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음
 - 한편, 만 65세 이상 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2,900만원 수준이며 2분위 가구의 평균은 4,800만원 수준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 중 금융소득 2분위에만 속하여도 저축액이 비과세종합저축제도의 한도인 5,000만원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V-14>는 금융소득과 여타 주요 소득 항목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금융소득 5분위별 주요 소득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정리함
 - 소득항목 역시 자산항목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없는 가구와 금융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값은 모든 변수에 걸쳐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산항목과는 다르게 주요 소득항목은 금융소득과의 관계가 항상 증가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금융소득 5분위별 소득 규모

(단위: 만원)

분류 기준		금융소득 5분위별 평균 금액					전체	금융소득 없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 소득	전체	4,115	4,911	5,935	6,509	9,969	6,234	4,522
	만 65세 이상	1,982	2,404	2,501	3,302	6,525	3,267	2,083
근로 소득	전체	2,333	2,715	3,468	3,762	5,382	3,503	2,908
	만 65세 이상	336	539	481	615	1,552	680	590
사업 소득	전체	1,039	1,388	1,509	1,334	1,968	1,437	1,070
	만 65세 이상	563	688	509	772	1,581	804	395
재산 소득	전체	199	248	339	576	1,752	612	166
	만 65세 이상	211	311	358	537	1,795	616	230
이전 소득	전체	543	560	619	837	867	682	378
	만 65세 이상	873	866	1,154	1,377	1,598	1,166	868

주: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경상소득)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경상소득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표본 모두에서 금융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소득 역시 함께 증가
 - 만 65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은 모든 분위에 걸쳐 경상소득 평균액이 전체 표본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자산과는 다르게 소득의 경우 은퇴연령에 근접하거나 지남에 따라 소득이 전체가구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금융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상소득 금액은 만 65세 이상 가구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분위에 따른 경상소득 분포는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남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평균값이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표본 모두에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정도가 약하게 나타남
 - 특히, 만 65세 이상 가구에서는 금융소득 2분위 가구보다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득에 따라 반드시 증가하는 주요 자산항목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남
 - 따라서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근로소득의 분포의 불평등 정도는 비교적 작게 나타나지만, 만 65세 이상 가구 중 금융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1분위 가구의 4.6배 수준)
- (사업소득) 사업소득 역시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평균값이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표본 모두에서 근로소득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사업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 모두에서 금융소득 1~4분위 사이에서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금융소득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산소득) 금융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산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 모두에서 재산소득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산소득의 경우 만 65세 이상 가구와 전체 가구와의 차이가 전 분위가 걸쳐 미미하게 나타남
- (이전소득) 이전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5분위에 따른 각 분위별 평균값이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표본 모두에서 금융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정도가 약하게 나타남
 - 전 분위에 걸쳐 만 65세 이상 가구의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주요 소득 및 자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IV-15>에 정리함

<표 IV-15> 자산 및 소득 변수의 상관관계

	금융 소득	저축액	적립· 예치식 저축	입출 금이 자유 로운 저축	자산 총액	순자 산액	금융 자산	부동산	거주 주택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금융소득	1													
저축액	0.38	1												
적립· 예치식 저축	0.38	0.99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0.21	0.43	0.43	1										
자산총액	0.25	0.68	0.67	0.37	1									
순자산액	0.29	0.69	0.69	0.37	0.96	1								
금융자산	0.36	0.94	0.93	0.42	0.66	0.67	1							
부동산	0.17	0.47	0.47	0.29	0.96	0.91	0.43	1						
거주주택	0.16	0.29	0.29	0.19	0.53	0.54	0.20	0.57	1					
경상소득	0.19	0.42	0.41	0.36	0.53	0.51	0.45	0.46	0.38	1				
근로소득	0.09	0.24	0.24	0.15	0.24	0.23	0.29	0.18	0.25	0.67	1			
사업소득	0.04	0.19	0.17	0.25	0.25	0.23	0.18	0.20	0.13	0.57	-0.15	1		
재산소득	0.32	0.39	0.39	0.25	0.66	0.62	0.37	0.66	0.31	0.36	0.06	0.07	1	
이전소득	0.06	0.02	0.02	0.02	0.06	0.09	0.00	0.08	0.09	-0.08	-0.26	-0.08	0.05	1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5천만원 예금자의 자산 및 소득현황 분석 결과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인 5천만원 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한도인 5천만원까지 예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과세종합저축제도가 고액 자산가에게 비대칭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은퇴 후 평생 모은 자금을 모두 통장에 넣어둔 채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저축액에 따른 자산 및 소득의 분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가구의 예금 저축을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3가지 변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자 함
 -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를 각각 저축이 4천만원 이하, 4천만~6천만원 사이, 6천만~1억원 사이, 1억원 이상,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여러 자산 및 소득 변수에 대해 분석

- (저축액) <표 IV-16>는 전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가구를 저축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저축액 구간별 평균 금액과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가구 중 약 57%가 4천만원 이하의 저축액을 갖고 있으며 4천만~6천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는 약 11%, 6천만~1억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는 13%, 1억원 이상의 저축을 한 가구는 20% 수준
 - 만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 비해 저축액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약 74%가 4천만원 이하의 저축액을 갖고 있으며 4천만~6천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는 약 7%, 6천만~1억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는 8%, 1억원 이상의 저축을 한 가구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저축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806만원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1억원 이상인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2억 9,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16> 저축액 구간별 평균 저축 금액 및 가구 비율

(단위: 만원, 가구, %)

	전체		만 65세 이상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4천만 미만	1,227	10,457 (56.6)	806	3,821 (74.4)
4천만 이상~ 6천만 미만	4,939	1,999 (10.8)	4,903	368 (7.2)
6천만 이상~ 1억 미만	7,738	2,376 (12.9)	7,624	388 (7.6)
1억 이상	25,023	3,656 (19.8)	29,000	562 (10.9)
전체	7,171	18,488	4,697	5,13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적립·예치식 저축) <표 IV-17> 저축액의 하위 항목인 적립·예치식 저축의 경우 전체 표본과 만 65세 이상 가구 모두에서 저축액과 전 구간에 걸쳐 저축금액 및 가구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
 - 대다수 가구의 저축액은 대부분 적립·예치식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가구 중 4천만원 이상의 적립·예치식 저축을 보유한 가구는 26%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7>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평균 저축금액 및 가구 비율

(단위: 만원, 가구, %)

	전체		만 65세 이상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4천만 미만	1,221	10,716 (58.0)	794	3,851 (74.9)
4천만 이상~ 6천만 미만	4,931	2,034 (11.0)	4,913	372 (7.2)
6천만 이상~ 1억 미만	7,742	2,360 (12.8)	7,630	379 (7.4)
1억 이상	24,793	3,377 (18.3)	29,293	537 (10.4)
전체	6,767	18,487	4,575	5,13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표 IV-18>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의 경우 적립·예치식 저축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 중 95%가 4천만원 이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1%에 불과함
 - 만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97%의 가구가 4천만원 이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을 보유함

<표 IV-18>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평균 저축금액 및 가구 비율

(단위: 만원, 가구, %)

	전체		만 65세 이상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평균 금액	가구 수 (전체 가구 대비 비율)
4천만 미만	539	17,586 (95.2)	421	4,971 (96.8)
4천만 이상~ 6천만 미만	4,700	398 (2.2)	4,666	82 (1.6)
6천만 이상~ 1억 미만	7,420	253 (1.4)	7,395	37 (0.7)
1억 이상	24,574	226 (1.2)	30,490	46 (0.9)
전체	1,017	18,463	809	5,13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금액에 따른 가구의 자산 및 소득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만 65세 이상 가구의 주요 자산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을 표로 작성 정리하였음(<표 IV-19, 20, 21>)
- <표 IV-19>의 경우 저축액이 4천만원 미만, 4천만~6천만원 사이, 6천만~1억원 사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총자산액, 순자산액,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경상소득, 금융소득을 정리
 - 분석대상인 자산 및 소득 변수 모두 저축액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관심 대상인 4천만~6천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평균적인 자산총액은 약 3억 4,500만원, 순자산액은 약 2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약 2억 5,500만원은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금액의 61%인 약 1억 5,500만원은 거주주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은 평균적으로 7,257만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천만~6천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한 가구 경상소득 평균값은 5,075만원으로 나타나며 금융소득은 7.9만원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표 IV-19> 저축액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단위: 만원)

	저축액(전체 가구)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자산총액	17,303	34,595	45,306	90,478	37,242
순자산액	13,548	28,043	36,478	77,393	30,688
금융자산	2,824	7,257	10,458	28,092	9,281
부동산	13,657	25,491	32,391	58,325	26,177
거주주택	8,912	15,557	18,391	27,205	14,466
경상소득	2,923	5,075	6,126	8,909	4,751
금융소득	3.4	7.9	16.1	128.7	30.3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20>의 적립·예치식 저축을 기준으로 주요 자산 및 소득 변수의 값을 계산한 결과 저축액 기준의 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표 IV-20>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단위: 만원)

	적립·예치식 저축(전체 가구)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자산총액	17,728	36,132	46,562	93,310	37,240
순자산액	13,852	29,125	37,687	80,152	30,686
금융자산	2,970	7,761	10,980	29,035	9,281
부동산	13,892	26,461	33,065	60,169	26,176
거주주택	9,036	15,902	18,883	27,751	14,467
경상소득	2,980	5,189	6,243	9,065	4,751
금융소득	4	8	16	137	3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21>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금액 기준 상위 3%에 해당하는 가구로 자산 및 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V-2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전체 가구)

(단위: 만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전체 가구)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자산총액	32,906	91,289	107,229	183,570	37,028
순자산액	26,871	78,708	91,440	160,141	30,505
금융자산	7,884	24,713	31,311	62,786	9,240
부동산	23,447	61,577	70,630	113,164	26,014
거주주택	13,536	29,382	30,148	39,427	14,422
경상소득	4,447	8,791	10,287	14,311	4,741
금융소득	23	116	125	329	3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만 65세 이상 가구도 전체 표본과 자산 및 소득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남(<표 IV-22, 23, 24> 참조)

<표 IV-22> 저축액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만 65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저축액(만 65세 이상)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자산총액	17,245	42,435	56,127	116,744	32,865
순자산액	1,479	5,853	8,119	29,778	5,389
금융자산	14,905	37,149	49,900	107,403	29,255
부동산	15,429	35,139	46,647	83,521	26,644
거주주택	9,567	19,146	21,524	35,062	13,944
경상소득	1,539	3,096	3,710	5,991	2,301
금융소득	3	23	44	241	3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3> 적립·예치식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만 65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적립·예치식 저축(만 65세 이상)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전체
자산총액	17,433	44,651	57,257	118,157	32,865
순자산액	1,527	6,129	8,391	30,449	5,389
금융자산	15,045	39,127	50,842	109,087	29,255
부동산	15,565	37,058	47,444	84,196	26,644
거주주택	9,646	19,667	21,637	35,368	13,944
경상소득	1,555	3,172	3,749	6,028	2,301
금융소득	3	23	45	252	3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구간별 자산 및 소득 평균 금액(만 65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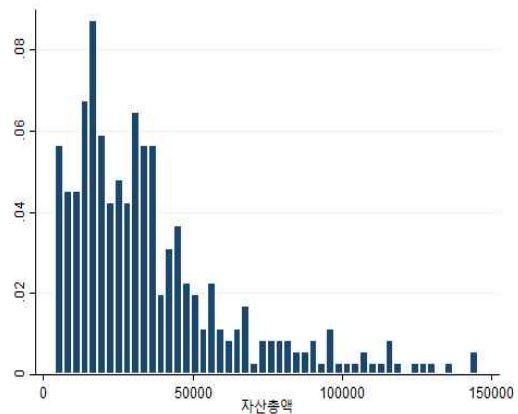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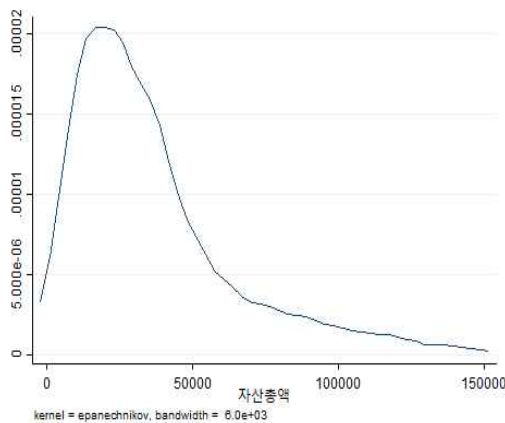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만 65세 이상)				전체
	4천만 미만	4천만~6천만	6천만~1억	1억 이상	
자산총액	28,700	107,627	112,817	269,281	32,721
순자산액	4,257	23,745	23,559	78,571	5,373
금융자산	25,493	97,584	98,710	242,805	29,118
부동산	23,797	78,476	85,572	180,208	26,516
거주주택	12,942	36,206	43,181	52,333	13,884
경상소득	2,126	5,551	6,088	11,799	2,296
금융소득	27	115	137	458	3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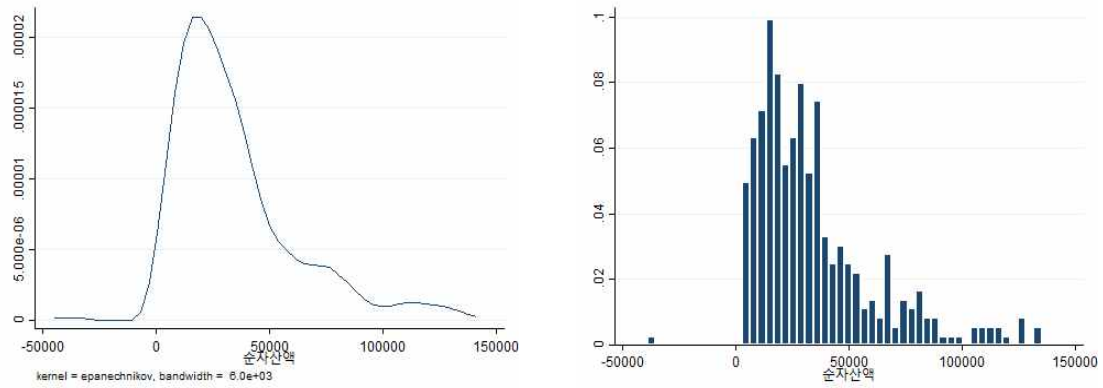
- [그림 IV-1,2,3,4,5]는 만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저축액이 4천만~6천만원 사이인 가구들의 총자산액, 순자산액, 금융자산, 경상소득,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IV-1,2,3,4,5]의 왼편의 그림은 각각의 변수의 분포를 연속성 있게 추정한 결과이며, 오른편의 그림은 같은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결과

[그림 IV-1] 저축액 기준 - 자산총액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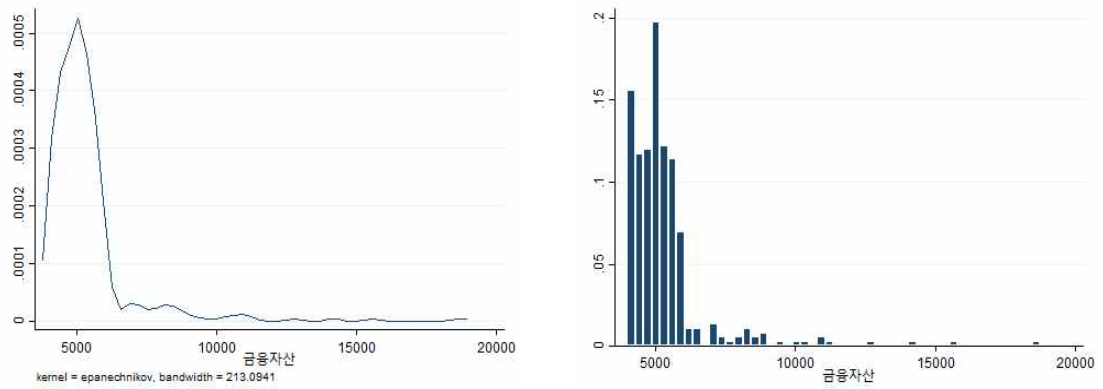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 저축액 기준 - 순자산액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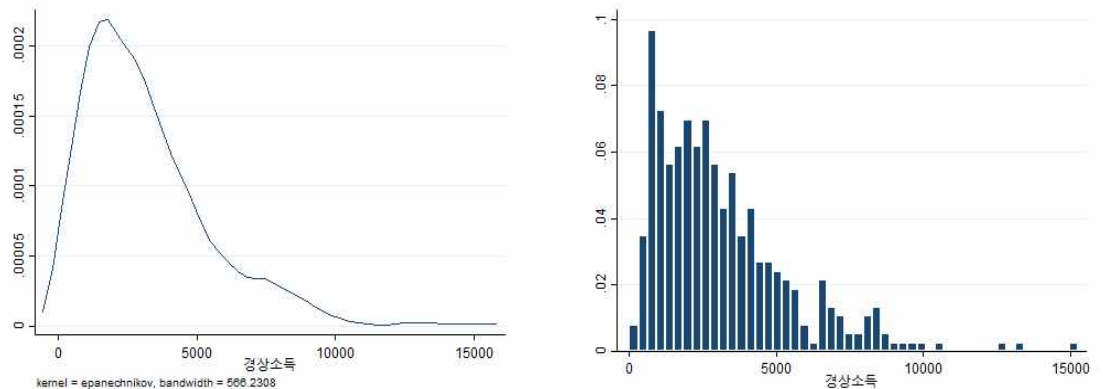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3] 저축액 기준 - 금융자산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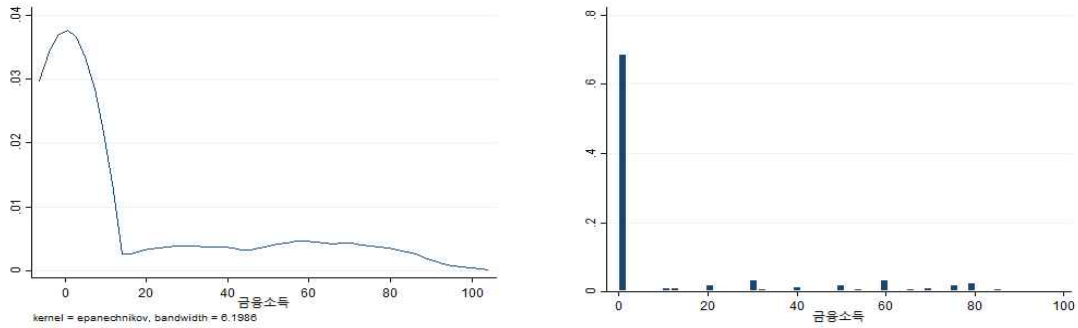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4] 저축액 기준 - 경상소득 65세 이상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5] 저축액 기준 - 금융소득 65세 이상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설문조사를 활용한 비과세종합저축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설문대상자에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는지와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저축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가입 전에 비해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의 수혜자인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조사됨
 - 반면, 해지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에 대한 효과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해지자의 상당수가 해지 이유를 결혼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해서’로 응답하고 있어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판단(부록 참고)

[그림 IV-6]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인식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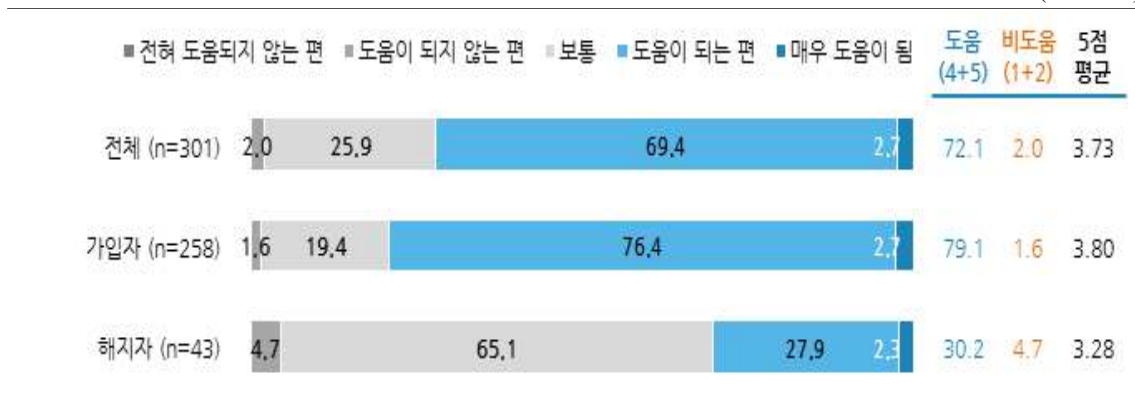
	■ 전혀 향상되지 않음	■ 향상되지 않는 편	■ 보통	■ 향상되는 편	■ 매우 향상 됨	향상 (4+5)	비향상 (1+2)	5점 평균
전체 (n=301)	3.3	35.5		58.1	3.0	61.1	3.3	3.61
가입자 (n=258)	1.9	29.1		65.5	3.5	69.0	1.9	3.71
해지자 (n=43)	11.6		74.4		14.0	14.0	11.6	3.02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응답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9.4%로 나타남
 - 그 중 가입자의 79.1%가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 마련에 매우(2.7%) 또는 도움이 되는 편(76.4%)으로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가입자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이 자산형성지원효과가 있다고 인식
 - 해지자의 경우에도 30.2%의 비율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이 저축률 향상보다는 목돈마련에 더 큰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

[그림 IV-7] 비과세종합저축의 효용성: 목돈마련에 도움 정도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직접적인 자산이동효과 분석을 대신하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자산이동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한 경우는 35.5%로 조사됨
 - 또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한 경우는 8%로 조사되어 직접적인 자산이동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이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재원이 타 금융자산 등의 자산이전이 아닌 신규 저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또한 저축효과에 대해 61.1%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35.5%)으로 나타나 저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

3. 수혜자 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가. 금융소득 수준별 수혜자 분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 기준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혜택이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금융소득 구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로 수혜자 분포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 수혜자 분포의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수준별 가입자 분포를 제시해야 하나, 국세청 납세자료로는 자산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세자료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은퇴를 미루고 소득을 창출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평균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표본일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자산 및 소득 등 저축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금융소득을 상정하고, 금융소득 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을 파악하여 수직적 형평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한 금융소득 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은 전체 36.1%로 금융소득분위가 높은, 즉 저축여력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도가 높음
 - 금융소득 하위 5분위의 가입률은 평균 약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분위의 가입률은 약 69%임
 - 저축여력이 큰 집단일수록 본 과세특례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 측면에서 본 과세특례가 수직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함
 - 가입률 외에 정확한 수혜의 크기를 파악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

- 종합소득의 크기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나, 금융소득처럼 가입률이 단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
 - 금융소득 분위별 종합소득은 1분위~2분위, 6분위~7분위로 넘어가며 감소하는 와중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은퇴 전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대체로 저축여력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신고자 수와 신고 평균금액이 소득분위가 늘어감에 따라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저축여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소득보다는 보유 자산이 저축여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은 지표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

<표 IV-25> 금융소득 분위별 가입현황

(단위: 원, 명, %)

금융 소득분위	금융소득 범위		가입자수	표본수	가입률	종합소득 신고자수	비중	종합소득 평균금액 (천원)
	분위별 최솟값	분위별 최댓값						
1분위	1	97	7	1,000	0.7	4	0.4	4,242
2분위	98	559	8	1,000	0.8	15	1.5	2,404
3분위	560	2,057	15	1,000	1.5	51	5.1	8,092
4분위	2,059	7,087	36	1,000	3.6	72	7.2	9,202
5분위	7,088	30,531	96	1,000	9.6	131	13.1	11,075
6분위	30,545	168,243	343	1,000	34.3	101	10.1	17,691
7분위	168,597	502,004	660	1,000	66.0	100	10.0	16,578
8분위	502,169	1,093,926	791	1,000	79.1	100	10.0	16,881
9분위	1,093,946	2,402,770	840	1,000	84.0	105	10.5	19,586
10분위	2,403,648	29,160백만	815	1,000	81.5	223	22.3	223,179
소계			3,611	10,000	36.1	902	9.02	66,006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소득수준별 수혜자 분포: 비과세금융소득 기준

- 위의 수혜자 분석은 단순 가입률 분포를 제시한 것이며, 실질적인 과세특례의 혜택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금융소득 상위 3분위가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
 - 금융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액도 높은 추세를 나타내지만, 금융소득 6분위 이하에서는 평균수익률 가정 시 가입액 차이가 크지 않고, 7분위부터 가입액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중위 이자수익률(2.05%)를 가정 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평잔액이 1천만원
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소득 분위는 7분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표 IV-26> 금융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단위: 명, 원, %)

금융소득분위	가입자 수	가입자당 평균 비과세 금융소득	분위별 총비과세 금융소득	비중
1분위	7	14	99	0.0
2분위	8	276	2,208	0.0
3분위	15	429	6,428	0.0
4분위	36	2,293	82,546	0.0
5분위	96	12,484	1,198,485	0.1
6분위	343	79,555	27,287,463	1.3
7분위	660	268,395	177,140,805	8.2
8분위	791	589,543	466,328,191	21.5
9분위	840	818,626	687,646,107	31.7
10분위	815	992,547	808,925,686	37.3
합계 및 소계	3,611	600,559	2,168,618,018	100

자료: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약 62.5%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으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약 0.8%에 해당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금융소득은 전체의 1.3%

<표 IV-2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

비과세 종합 가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합 계
	예	아니오	
예	30	3,581	3,611
(비중)	(1)	(36)	(36)
아니오	18	6,371	6,389
(비중)	(0)	(100)	(64)
합 계	48	9,952	10,0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분석 결과의 요약

가. 타당성 분석

- 본 과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 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다시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중요한 정책목표
 - 이러한 가계저축의 효과로서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금융 자산 축적을 통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
 - 2017년 현재 한국의 총저축률은 36.3%로 독일,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가계저축률도 2010년 4.1%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7.6% 수준
- 또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 관점, 사회정책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지원대상의 적정성) 본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
 -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전체 장애인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자가 11.3% 존재
 -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고려
- 일정 소득요건을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
- 그러나 재산요건을 설정한 과세특례 상품은 없는 상황
- (지원방식의 적정성) 본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의 비과세방식,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5천만원 납입한도 및 다양한 가입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과세특례방식: 금융소득 비과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방식이 보다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적용 금융상품의 가입률 보다는 높은 수준
 - 조합 등의 예탁금은 2016년 전체 가입대상자의 77.3%인 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가입률이 각각 0.49%, 0.08%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의 본 과세특례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동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동성 수준이 낮은 저축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축적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높은 저축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

- 그러나 본 과세특례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해치는 효과는 없음
- (납입한도: 5천만원) 납입한도는 세수손실이라는 조세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자산 이동효과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 총납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징수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해당 저축원금에서 발생한 비과세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총납입한도와 함께 저축원금 발생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총납입한도 및 저축원금 발생 금융소득 한도와 함께 연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
- (가입 금융상품의 다양성) 본 과세특례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법정 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납입한도액 내에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
- 그러나 국세청 미시자료 분석결과, 본 과세특례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예·적금에 집중
 - 예·적금 성격의 금융상품 97.05%, 채권 등 1.42%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0.23% 순으로 저축 성격의 금융상품에 편중
 - 가입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에 한계가 있을 의미
- (유사·중복사업)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편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 국세청 미시자료에 따르면, 조합 등 예탁금 가입자의 84.61%,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의 79.02% 그리고 조합 등 출자금 가입자의 52.18%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 만 65세 이상 저축자들이 중복 가입이 많은 상황
- 또한 현행 조세지출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용 중

나. 효과성 분석

- (제도의 활용도)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본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36%가 가입
 - 은행연합회 자료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53.2%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
 - 상대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약 70%가 다른 과세특례 상품을 활용 중인 반면 비가입자 중 다른 어떤 특례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5%를 차지
 - 가입자 중 약 70%가 다른 과세특례 상품을 이용 중이며, 그 중 대부분은 조합 예탁금·출자금 대상 과세특례임
- (가입자 특성)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활용 중인 저축자일수록, 본 과세특례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소득 하위 5분위의 가입률은 평균 약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분위의 가입률은 약 69%임
 - 금융소득 상위 3분위가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약 62.5%가 비과세종합저축을 보유 중이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약 0.8%에 해당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금융소득은 전체의 1.3%
- (경제적 효과성)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 자산이동, 자산형성지원 등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여부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2012~2017년간 가입 자격이 갈린 1954년생과 1955년생 간의 저축 행태 등을 비롯한 평균적인 정책효과를 비교한 결과
 - 데이터 제약으로 자산이동효과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또한 계좌당 약 5만원의 비과세 혜택(계좌당 약 33만원의 이자 발생)이 측정가능한 정도의 행태변화를 낳긴 어렵다고 판단
- (설문을 통한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전후를 비교하여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1.1%를 차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조사됨
 - 반면, 해지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이 저축률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해지 이유의 상당수가 목돈마련 등을 이유로 제시
-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69.4%로 나타남
- 그 중 가입자의 79.1%가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매우 또는 도움이 되는 편으로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가입자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의 재산형성 지원 효과를 인지
 - 해지자의 경우도 30.2%가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재산형성지원효과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

2. 제도 개선방안

- 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다시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

- 또한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 관점, 사회정책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
-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동일하게 고소득자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
 - 국세통계연보상 만 60~69세의 1인당 총급여액은 7,300만원이며, 만 70세 이상자는 1억 1,50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또한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전체 장애인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자가 전체 장애인의 11.3%를 차지
- 따라서 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원대상의 개선 측면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와 고소득자를 제외시킴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
 - (2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
- 본 장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각 개선안별 비과세종합저축의 지원대상자(가입자) 규모, 금융소득 및 조세지출액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국세청 미시자료는 귀속연도 2013~2017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 10분위별 200명씩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총 10,000명(=10분위×200명×5개년)으로 표본을 구성

- 그러나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저축원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율 중위수 2.05%를 적용하여 저축원금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이 820,000원인 경우 저축원금이 40,000,000원(=820,000÷0.0205)이 되며, 금융소득이 615,000원인 경우에는 저축원금이 30,000,000원(=615,000÷0.0205)이 됨
- 또한 저축원금이 몇 개년에 걸쳐 납입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없어 2.05%의 연금현가계수를 활용하고자 함
 - 매년 20,000,000원씩 5년간 불입할 경우 연복리방식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31.60353%(=Σ(1+0.0205)ⁿ)로 5년간 6,320,706원이 됨

<표 V-1> 국세청 미시자료 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
(N=10,000, 금융소득분위별 1,000명)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89,543	1,060,000	466,328,191	65,285,947
9	840	84.0	818,626	2,070,569	687,646,107	96,270,455
10	815	81.5	992,547	12,038,449	808,925,686	113,249,596
합계(평균)	3,611	(36.11)	(276,416)		2,168,618,018	303,606,523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현행 금융소득 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36.11%이며, 이 과세특례에서 발생한 총금융소득은 21.69억원이며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7.6만원 수준
 - 금융소득분위별 가입률은 5분위 구간까지는 10% 이하인 반면, 9~10분위 구간은 각각 84% 및 82%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저축자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
 -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3.04억원으로 금융소득분위 9~10구간이 약 70%를 차지

1) 지원대상 개선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의 실효세율이 비금융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 기본세율만큼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포함)에는 비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15~42%)
 - 비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4%만을 적용받게 되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존재
 - 2017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총 133,711명으로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1.26억원으로 금융자산 보유수준이 높은 소득분위에 속함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상 금융소득 중위수 이자율 2.05%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9.76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수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난 결과
 - 저축여력이 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납입한도까지 가입하고 높은 금융소득자는 이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회피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나 작은 비과세 금융소득 한도를 적용

<표 V-2> 가입대상 개선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단위: 명, 천원, %)

소득 분위	가입자			비과세종합저축 총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현행	개선안	감소율	현행	개선안	감소율	현행	개선안	감소율
1	7	7	-	0	0	-	0	0	-
2	8	8	-	2	2	-	0	0	-
3	15	15	-	6	6	-	1	1	-
4	36	36	-	83	83	-	12	12	-
5	96	96	-	1,198	1,198	-	168	168	-
6	343	343	-	27,287	27,287	-	3,820	3,820	-
7	660	660	-	177,141	177,141	-	24,800	24,800	-
8	791	791	-	466,328	466,328	-	65,286	65,286	-
9	840	840	-	687,646	687,646	-	96,270	96,270	-
10	815	785	3.68	808,926	780,446	3.52	113,250	109,262	3.52
계	3,611	3,581	0.83	2,168,618	2,140,138	1.31	303,607	299,619	1.3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총 0.83%, 비과세종합저축의 총금융소득과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
 - 특히 금융소득이 가장 높은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만 가입자가 3.68%가 감소하며, 비과세종합저축 총금융소득 및 조세지출액도 3.52%가 감소
 - 전체적인 조세지출액은 현행 약 3.04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1.31%가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현행 약 1.13억원에서 약 1.09억원으로 3.52%가 감소하는 효과(세부적인 내용은 <표 V-2>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저축과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2) 지원대상 개선 2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3.5천만원 초과 사업소득자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1안에 추가적으로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금융소득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통한 금융자산 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노인에 대한 정부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의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또한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중 서민형으로 분류되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까지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 소득자를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총 2.38%, 비과세종합저축의 총금융소득과 조세지출액은 3.14%가 감소하는 효과
 - 금융소득 6분위 이상의 구간에서 가입자, 금융소득 및 조세지출액이 감소하는데, 특히 금융소득이 가장 높은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8.71% 감소하며, 비과세종합저축 총 금융소득 및 조세지출액도 7.57%가 감소
 - 전체적인 조세지출액은 현행 약 3.04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3.14%가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현행 약 1.13억원에서 약 1.05억원으로 7.57%가 감소하는 효과(세부적인 내용은 <표 V-3> 참조)
 - 이러한 결과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저축과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표 V-3> 가입대상 개선 2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자 제외

(단위: 명, %, 천원)

소득 분위	가입자			비과세종합저축 총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현행	개선안	감소율	현행	개선안	감소율	현행	개선안	감소율
1	7	7	-	0	0	-	0	0	-
2	8	8	-	2	2	-	0	0	-
3	15	15	-	6	6	-	1	1	-
4	36	36	-	83	83	-	12	12	-
5	96	96	-	1,198	1,198	-	168	168	-
6	343	342	0.29	27,287	27,164	0.45	3,820	3,803	0.45
7	660	657	0.45	177,141	176,660	0.27	24,800	24,732	0.27
8	791	787	0.51	466,328	463,655	0.57	65,286	64,912	0.57
9	840	833	0.83	687,646	683,975	0.53	96,270	95,756	0.53
10	815	744	8.71	808,926	747,708	7.57	113,250	104,679	7.57
계	3,611	3,525	2.38	2,168,618	2,100,451	3.14	303,607	294,063	3.14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국세청, 내부자료.
-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연보』, 2017.
-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김복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노동리뷰』 10월호, 2014, pp. 21~35.
- 김학수·우석진·빈기범·박재성, 『2015 조세특례 임의심판평가(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임의심판평가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신동면,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2009, pp. 209~226.
- 안서연, 「노인의 소득-자산을 이용한 빈곤의 재측정」, 국민연금연구원 기획세션 기획주제,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 257~270.
- 오용협·이인구,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 『오늘의 세계경제』 제07-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오용협·이인구,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 KIEP World Economy Update 제07-26, 2007, pp. 1~9.
- 이상엽·윤성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 이상엽·한종석,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전병목·홍범교, 『현행 비과세 감면 저축의 실증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조무상·정군오,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택규모 선택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1(2), 2009, pp. 129~149.
- 최제민·김성현·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6집 1호,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장애인통계」, 2018.

한창근,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안상훈 외 편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 1~40.

홍범교·김진영.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Besley, Timothy and Costas Meghir, *Tax Based Saving Incentiv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Processed, 2001.

Brandolini, A., Magri, S., and Smeeding, T.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2010, pp. 267~284.

Duflo, E., Gale, W., Liebman, J., Orszag, P., and Saez, E.,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2006, pp. 1311~1346.

Harvey, P., Pettigrew, N., Maddens, R., Emmerson, C., Tetlow, G., and Wakefield, M., *Final evaluation of the Saving Gateway 2 pilot: main report*, 2007.

Sherraden, M., “Assets for All: Toward Universal, Progressive, Lifelong Accounts,” 2006.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1991.

Wolff, Edward N. “Recent trends in household wealth in the United States: Rising debt and the middle-class squeeze - An update to 2007,” Working paper, Levy Economics Institute, No. 589,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nnandale-on-Hudson, NY. 2010.

<웹사이트 자료>

2018 국세통계연보(https://www.nts.go.kr/info/info_05.asp)

Canada Revenue Agency(<https://www.canada.ca/>)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Investment Company Institute(<http://www.icifactbook.org/>)

OECD.Stat(https://stats.oecd.org/OECDStat_Metadata/)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농협 홈페이지(<https://img.nonghyup.com/>)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
통계청(<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27.101.213.4/index.jsp#>)

부 록



<부록 I> 부 표

<부표 I -1> 가입대상 개선방안 1: 소득분위별 가입자 및 조세지출액 분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89,543	1060000	466,328,191	65,285,947
9	840	84.0	818,626	2070569	687,646,107	96,270,455
10	785	78.5	994,199	12038449	780,446,116	109,262,456
합계(평균)	3,581	(35.81)	(276,581)		2,140,138,448	299,619,383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2> 가입대상 개선방안 2: 소득분위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초과자 제외)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2	34.2	79,427	163,832	27,163,972	3,802,956
7	657	65.7	268,889	499,364	176,660,061	24,732,409
8	787	78.7	589,142	1,060,000	463,654,735	64,911,663
9	833	83.3	821,098	2,070,569	683,974,633	95,756,449
10	744	74.4	1,004,984	12,038,449	747,707,837	104,679,097
합계(평균)	3,525	(35.25)	(277,904)		2,100,451,004	294,063,14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3>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총 납입한도 4천만원으로 인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74,956	820,000	454,789,985	63,670,598
9	840	84.0	693,985	820,000	582,947,174	81,612,604
10	815	81.5	738,216	820,000	601,645,808	84,230,413
합계(평균)	3,611	(36.11)	(237,060)		1,845,101,001	258,314,14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4>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총 납입한도 3천만원으로 인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66	173	525	309
3	15	1.5	137	747	2,061	900
4	36	3.6	1,319	4,333	47,501	11,556
5	96	9.6	9,971	24,630	957,261	167,788
6	343	34.3	74,143	159,480	25,430,951	3,820,245
7	660	66.0	261,479	488,830	172,576,101	24,799,713
8	791	79.1	506,141	615,000	400,357,645	56,521,953
9	840	84.0	553,396	615,000	464,852,666	65,272,377
10	815	81.5	575,115	615,000	468,718,696	65,739,223
합계(평균)	3,611	(36.11)	(198,177)		1,532,943,407	216,334,077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5>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89,543	1,060,000	466,328,191	65,285,947
9	840	84.0	818,626	2,070,569	687,646,107	96,270,455
10	815	81.5	983,576	6,320,706	801,614,555	111,666,082
합계(평균)	3,611	(36.11)	(275,519)		2,161,306,887	302,023,00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6> 가입대상 개선방안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총 납입한도 4천만원 인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대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74,956	820,000	454,789,985	63,670,598
9	840	84.0	693,985	820,000	582,947,174	81,612,604
10	785	78.5	738,630	820,000	579,824,228	81,175,392
합계(평균)	3,581	(35.81)	(237,102)		1,823,279,421	255,259,11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7> 가입대상 개선방안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총 납입한도 3천만원 이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대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10,402	615,000	403,728,235	56,521,953
9	840	84.0	555,037	615,000	466,231,261	65,272,377
10	785	78.5	576,186	615,000	452,305,761	63,322,807
합계(평균)	3,581	(35.81)	(200,507)		1,527,983,291	213,917,66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8> 가입대상 개선방안 1과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및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대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3	34.3	79,555	163,832	27,287,463	3,820,245
7	660	66.0	268,395	499,364	177,140,805	24,799,713
8	791	79.1	589,543	1,060,000	466,328,191	65,285,947
9	840	84.0	818,626	2,070,569	687,646,107	96,270,455
10	785	78.5	984,885	6,320,706	773,134,985	108,044,499
합계(평균)	3,581	(35.81)	(275,650)		2,132,827,317	298,401,425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9〉 가입대상 개선방안 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총 납입한도 4천만원 인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2	34.2	79,427	163,832	27,163,972	3,802,956
7	657	65.7	268,889	499,364	176,660,061	24,732,409
8	787	78.7	574,481	820,000	452,116,529	63,296,314
9	833	83.3	695,919	820,000	579,700,281	81,158,039
10	744	74.4	742,151	820,000	552,160,301	77,302,442
합계(평균)	3,525	(35.25)	(237,636)		1,789,090,910	250,472,727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10〉 가입대상 개선방안 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총 납입한도 3천만원 인하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댓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2	34.2	79,427	163,832	27,163,972	3,802,956
7	657	65.7	268,889	499,364	176,660,061	24,732,409
8	787	78.7	510,006	615,000	401,374,866	56,192,481
9	833	83.3	556,432	615,000	463,507,901	64,891,106
10	744	74.4	578,296	615,000	430,251,887	60,235,264
합계(평균)	3,525	(35.25)	(200,855)		1,500,248,453	210,034,783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표 I -11> 가입대상 개선방안2와 비과세 운영방식 개선방안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소득자 제외,
 연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금융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단위: 명, %, 원)

금융소득 분위	가입자 수	가입률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조세지출액
			평균	최대값	합계	
1	7	0.7	14	52	99	14
2	8	0.8	276	542	2,208	309
3	15	1.5	429	1,690	6,428	900
4	36	3.6	2,293	6,320	82,546	11,556
5	96	9.6	12,484	28,054	1,198,485	167,788
6	342	34.2	79,427	163,832	27,163,972	3,802,956
7	657	65.7	268,889	499,364	176,660,061	24,732,409
8	787	78.7	589,142	1,060,000	463,654,735	64,911,663
9	833	83.3	821,098	2,070,569	683,974,633	95,756,449
10	744	74.4	995,157	6,320,706	740,396,706	103,095,583
합계(평균)	3,525	(35.25)	(276,921)		2,093,139,873	292,479,627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부록 II>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 본 설문조사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효과성, 개선방향 및 향후 가입의향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
- 조사모집단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부표 II -1> 조사 설계

구분	조사 내용
모집단	• 전국 만 65세 이상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조사모집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조사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표본 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편의적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최종 표본 수	• N=507명(가입자 258명, 해지자 43명, 미가입자 206명)
조사 방법	• 온/오프라인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1:1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ing) 및 온라인조사(Online-Survey)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 2019년 5월 30일(목) ~ 6월 12일(수)(총14일간)
조사 기관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사 및 자료 처리: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자료: 설문조사자료

□ 개별면접조사 세부 설계는 다음과 같음

-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서울/인천 지역에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진행함

<부표 II -2> 서울/인천 지역 주민등록 인구현황 -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만65세 이상 인구 수	비율	단순비례배분
합계	1,720,949	100.0	400
서울	1,363,113	79.2	316
인천	357,836	20.8	84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비가입자 비율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14개의 지점(1개의 구에 1개의 지점)을 선정하고, 지점내 30명(가입자 15명, 비가입자 15명) 내외를 조사

<부표 II -3> 표본할당(안) 만 65세 이상 400명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가입자	비가입자
합계	400	200	200
서울	316	158	158
인천	84	42	42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4> 실사지점 선정 400명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표본 수	실사지점
합계	400	14
서울	316	11
인천	84	3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1개의 지점에서 표본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추출함
 - 세부적으로 가입자 15명, 비가입자 15명을 할당하여 조사함. 성별은 크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사(남성: 여성 비율은 3:7~7:3 비율 정도로 유지)
- 선정된 조사지점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비가입자를 찾기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조사원 파견이 불가능하여, 조사기간 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에서 조사를 진행함

□ 온라인조사 세부설계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만 65세 이상 일반국민 온라인패널을 활용함
- 만 65세 이상 온라인패널 수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개별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조사 방식으로는 비가입자 최대 100명까지 병행조사함(가입자인 경우는 응답이 나오는데로 설문응답을 받아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설계)

□ 최종표본수는 가입자 291명, 비가입자 206명으로 총 507명

- 조사 방법별로는 개별면접조사 314명, 온라인조사 193명이 조사됨

<부표 II -5> 조사방법별 최종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가입자	비가입자	총합계
개별면접조사	208	106	314
온라인조사	93	100	193
총합계	291	206	507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

<부표 II -6> 조사내용

단계	내용
일반현황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비과세종합상품 가입 여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가입자 대상)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현황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인식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가입 동기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혜택 및 주변 추천의향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가입 유형 - 비과세종합상품 개선방향 - 비과세종합상품의 저축향상 및 목돈마련에의 도움정도 - 비과세종합상품의 해지 이유 및 재가입의향(해지자만 응답)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의향 (비가입자 대상)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인지 여부 - (인지자만)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비가입 이유 - 비과세종합상품 상품 활성화 방안
인구학적 특성	-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 구성원 수 -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 월평균 저축액 - 월평균 개인/가구소득액 - 개인 및 가구 전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총응답 표본 수는 507명으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부표 II -7> 응답자 특성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07	100.0
성별	남성	256	50.5
	여성	251	49.5
연령별	만 65~69세	307	60.6
	만 70~74세	120	23.7
	만 75세 이상	80	15.8
지역별	서울	343	67.7
	인천	86	17.0
	경기	78	15.4
최종학력별	중졸이하	151	29.8
	고졸	252	49.7
	대재/대졸/전문대졸	92	18.1
	대학원이상	12	2.4
혼인상태	기혼	498	98.2
	미혼	9	1.8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245	48.3
	10~20% 미만	175	34.5
	20~30% 미만	46	9.1
	30~40% 미만	27	5.3
	40% 이상	14	2.8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158	31.2
	100~200만원 미만	131	25.8
	200~300만원 미만	85	16.8
	300~400만원 미만	31	6.1
	400~500만원 미만	23	4.5
	500만원 이상	26	5.1
	없음/모름/무응답	53	1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5	10.8
	100~300만원 미만	230	45.4
	300~500만원 미만	112	22.1
	500~700만원 미만	55	10.8
	700만원 이상	43	8.5
	없음/모름/무응답	12	2.4
가입현황	가입자	258	50.9
	해지자	43	8.5
	비가입	206	40.6
기초연금대상자	예	212	41.8
	아니오	295	58.2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설문분석의 결과

가.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 효과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일반예·적금’이 66.3%로 가장 높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23.3%), ‘농협 등 조합 출자금’ 2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비과세 종합저축 해지자의 경우에도 ‘일반예·적금’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이하 가입자와 동일한 순임

[부그림 II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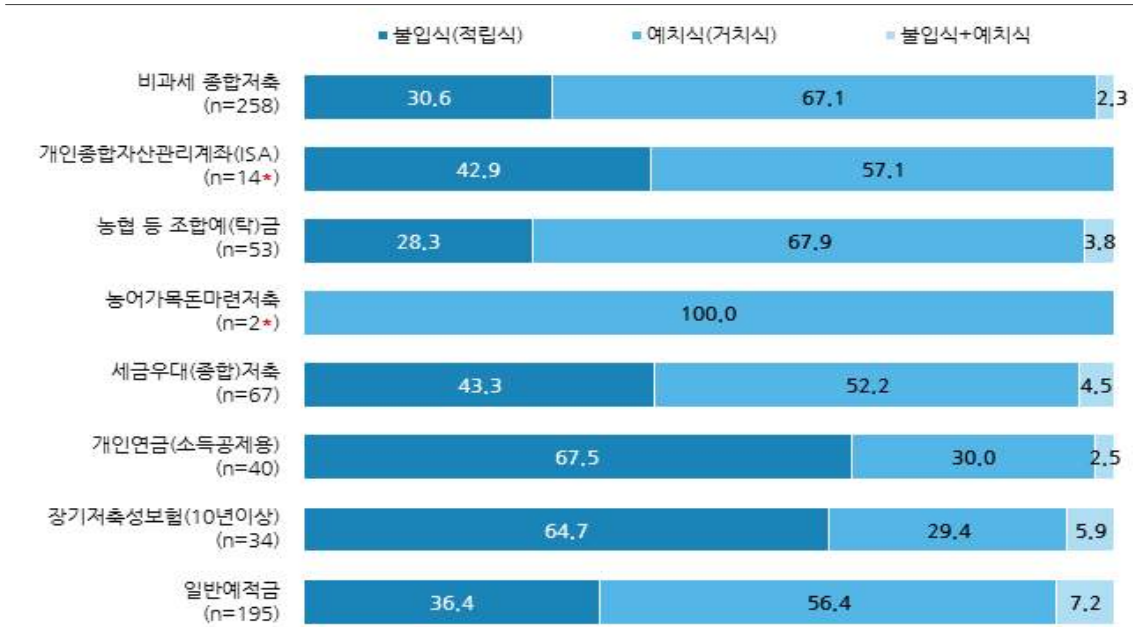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를 살펴보면(상품별 가입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n=258)의 경우 ‘불입식+예치식’이 67.1%로 나타남
-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농협 등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예적금에서는 ‘불입식+예치식’으로 가입한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나, 개인연금(소득공제용),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의 경우 ‘불입식(적립식)’ 응답 많았음

[부그림 II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

(단위: %)



*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 필요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을 살펴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의 불입액은 월평균 37만원, 총 불입액 약 2,262만원으로 나타남
- 월평균 불입액이 가장 많은 금융상품은 비과세 종합저축(37만원)이었으며, 총 불입액이 가장 많은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3,431만원)임

<부표 II -8>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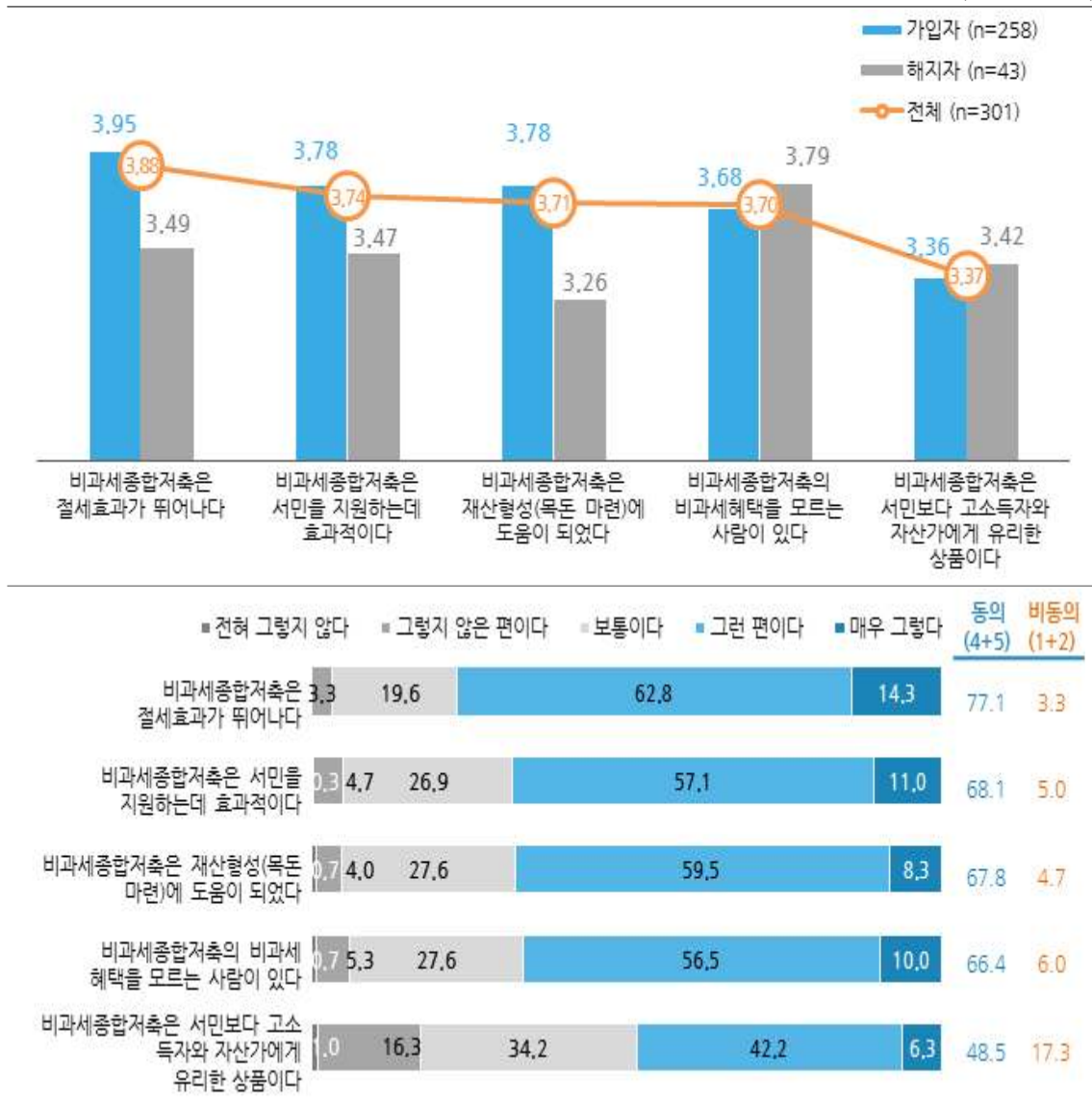
구분	월평균 불입액		총 불입액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비과세 종합저축	85	37.31	258	2261.5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6	18.33	14	1217.29
농협 등 조합출자금	-	-	59	413.10
농협 등 조합예(탁)금	17	25.47	53	1221.0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	2	1012.50
세금우대(종합)저축	32	28.00	67	1194.72
개인연금(소득공제용)	28	26.57	40	2201.00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24	17.21	34	3430.88
일반예적금	85	27.01	195	1488.10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입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3.95점), ‘비과세 종합저축은 서민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3.78점), ‘비과세 종합저축은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지자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3.7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3.49점), ‘비과세 종합저축은 서민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3.47점) 등의 순임

[부그림 II -3]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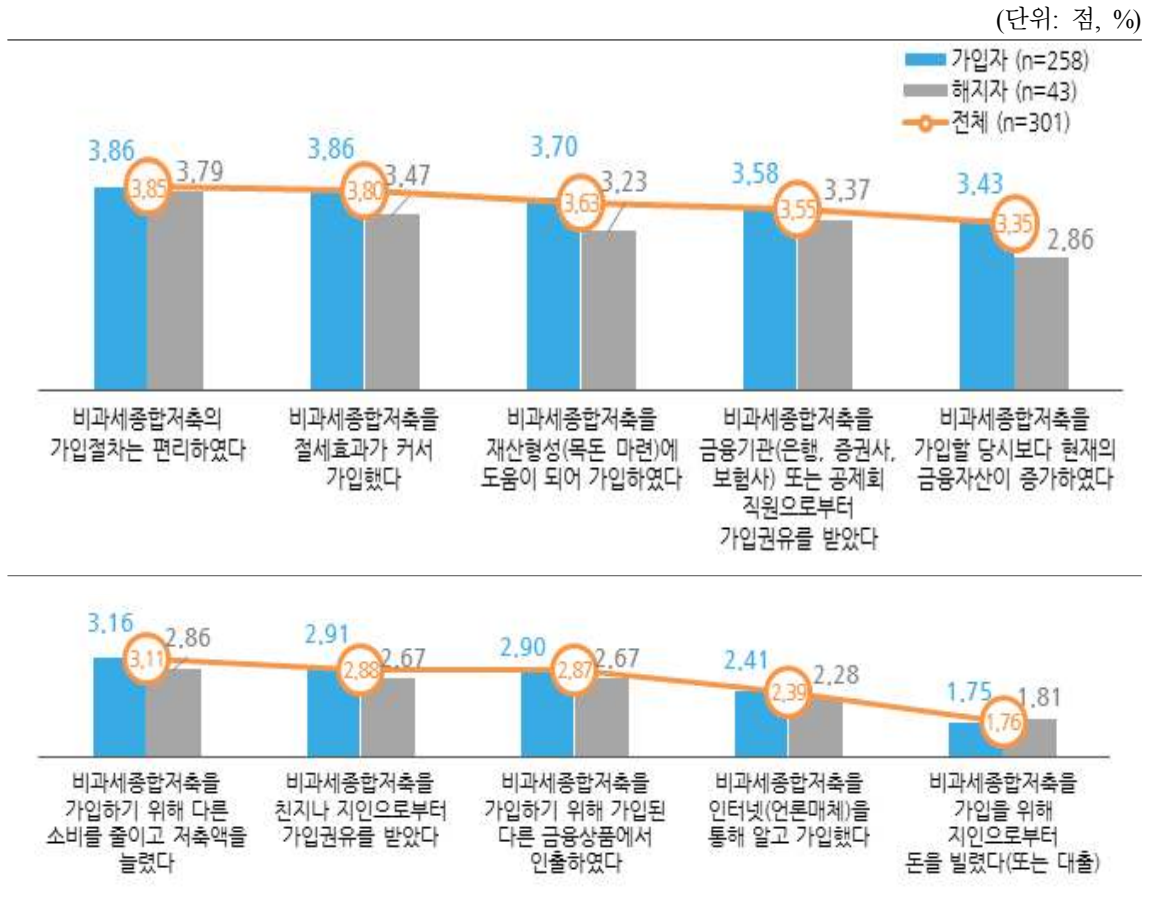
(단위: 점,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상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절차는 편리하였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효과가 커서 가입했다’가 각 3.86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해지자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절차는 편리하였다’가 3.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은 절세효과가 커서 가입했다’(3.47점), ‘비과세 종합저축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또는 공제회 직원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다’(3.37점)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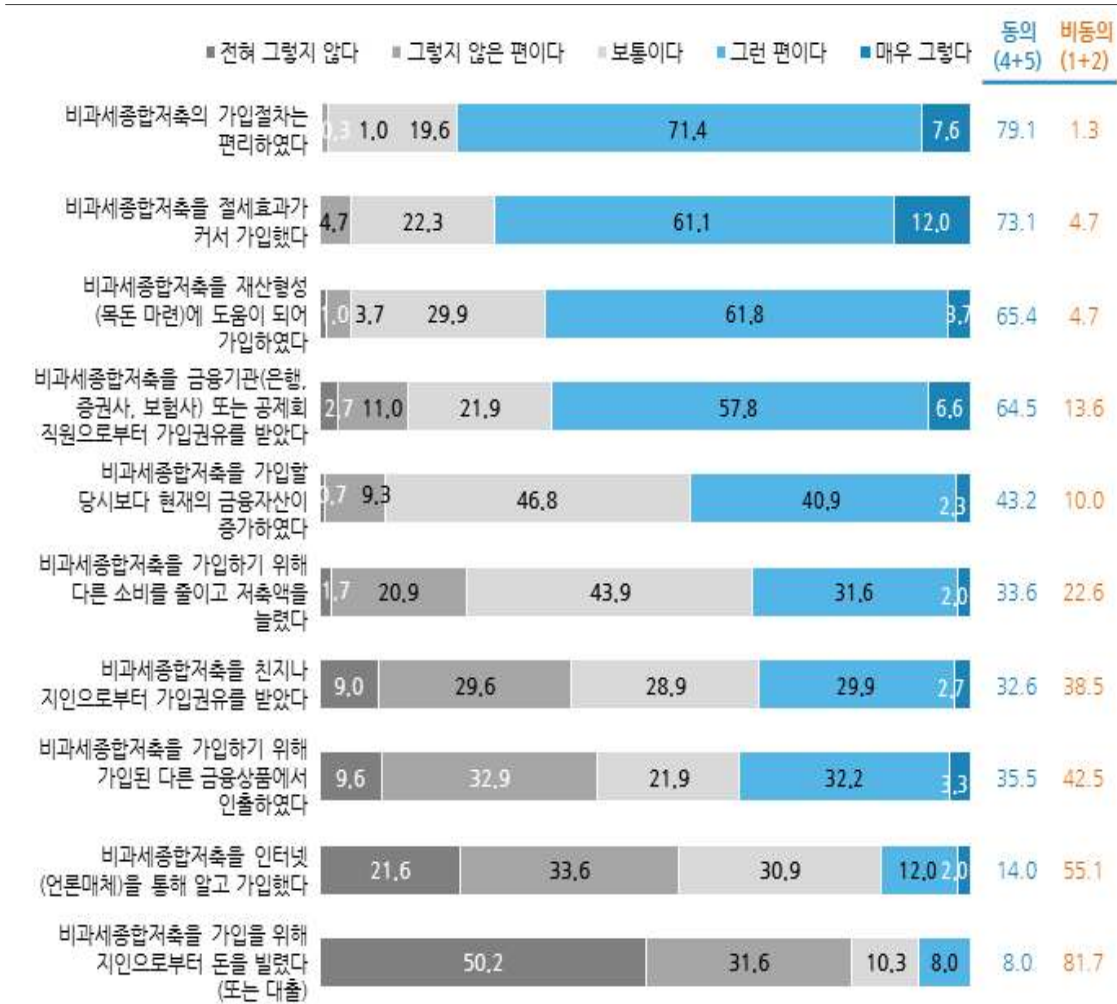
[부그림 II -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상황(1)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II -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상황(2)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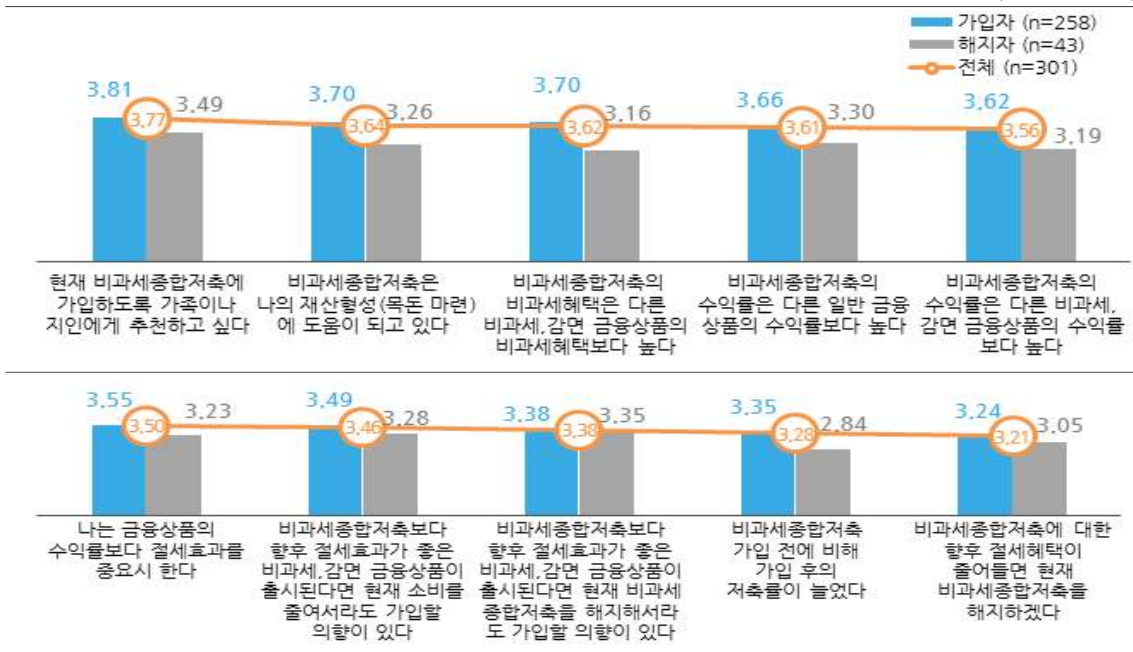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혜택 및 동기를 살펴본 결과, 가입자 기준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가 3.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나의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및 ‘비과세 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혜택보다 높다’(각 3.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지자의 경우에도,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음

[부그림 II -6]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및 가입동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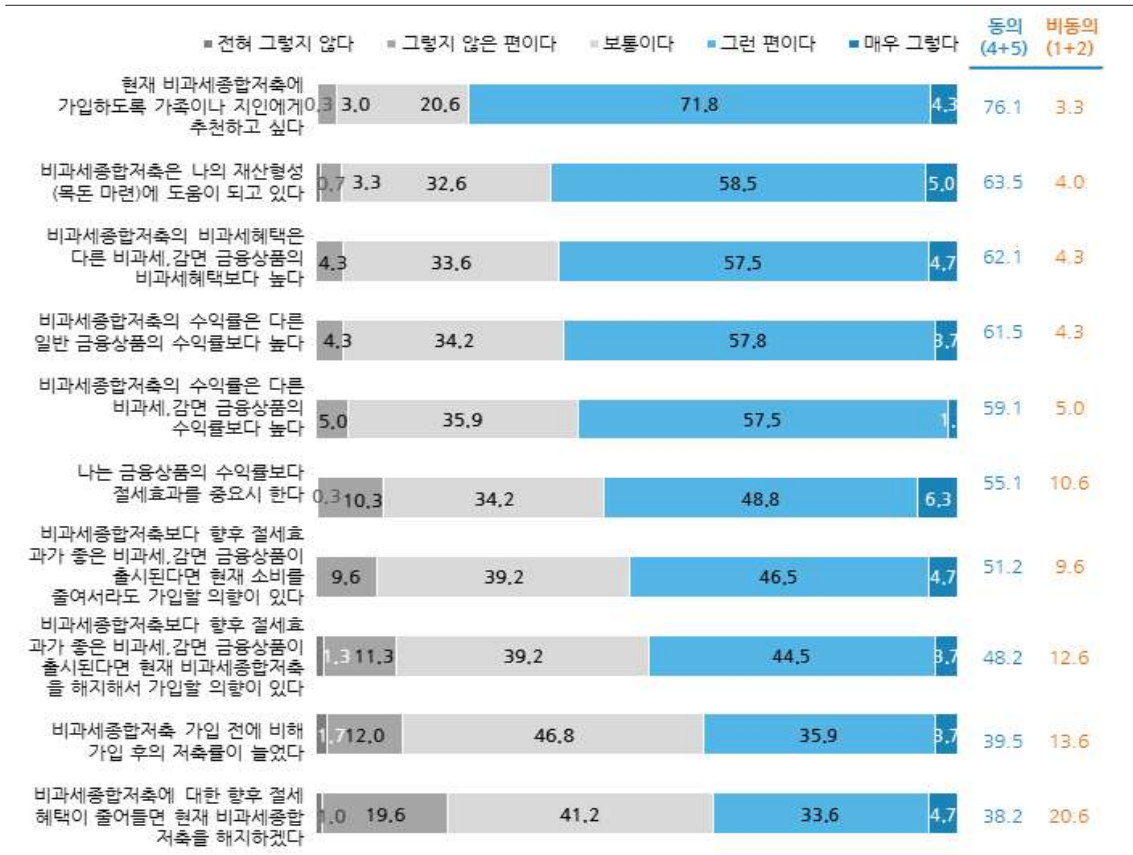
(단위: 점,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II -7]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및 가입동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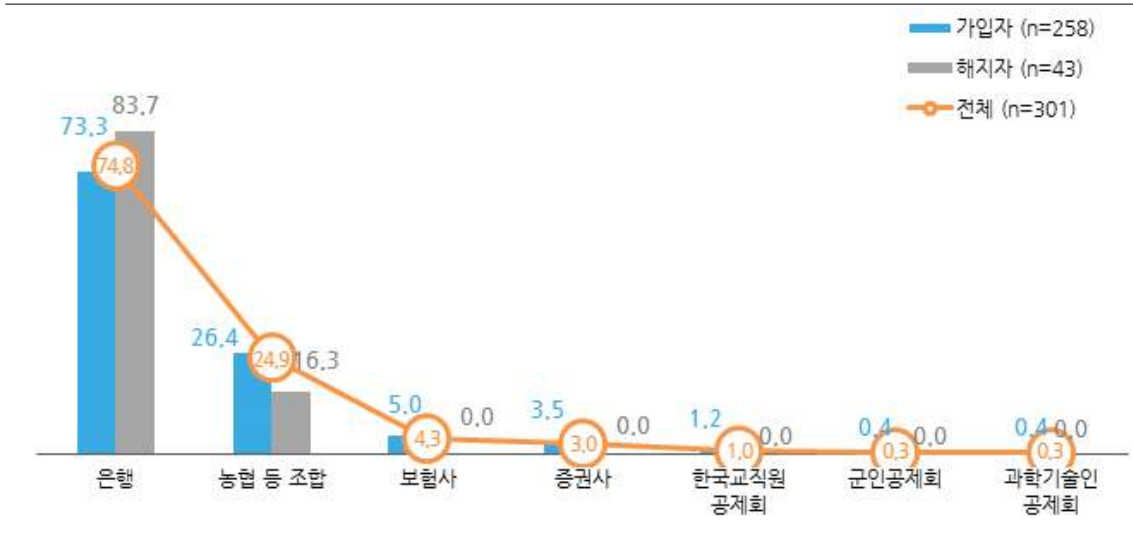
(단위: 점, %)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은 현 가입자, 현 해지자 모두 ‘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 73.3%, 83.7%), 다음으로 ‘농협 등 조합’ 응답이 많았음

[부그림 II -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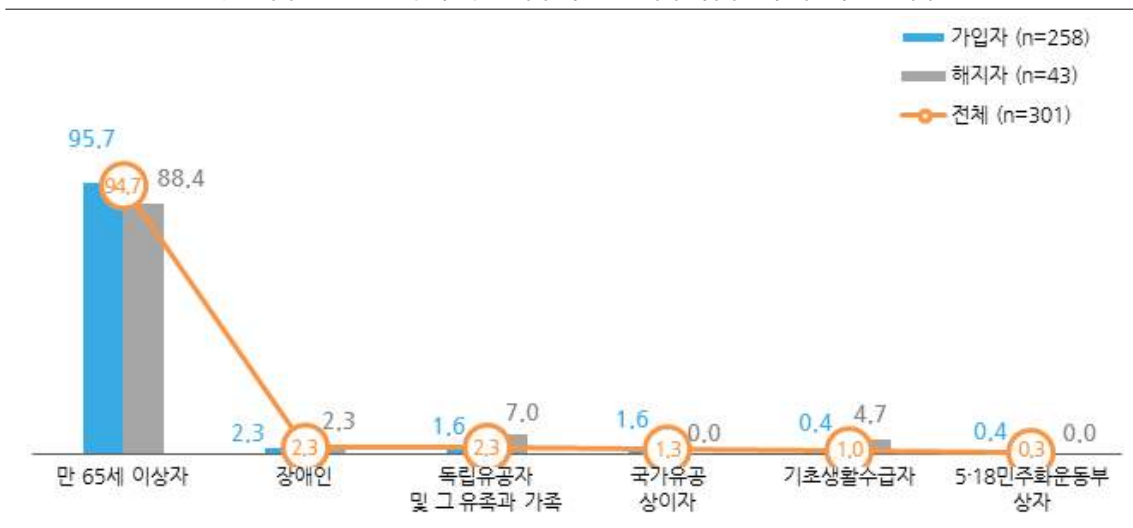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한 자격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자’가 전체 응답자 기준 94.7%로 대부분이 연령 조건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입자 95.7%, 해지자 88.4%) 이 외 조건의 경우 10% 이내임

[부그림 II -9]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가입 자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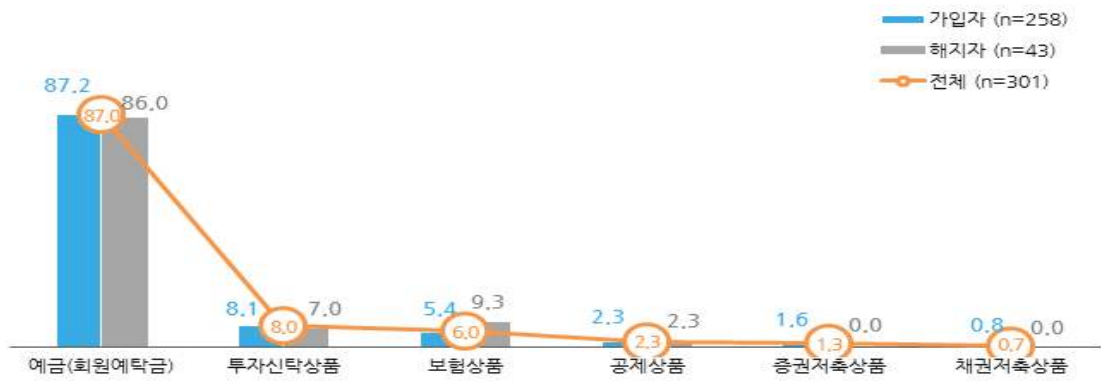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시 저축 종류로는 ‘예금(회원예탁금)’이 전체 응답자 기준 8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투자신탁상품’, ‘보험상품’ 등의 순임

[부그림 II -1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저축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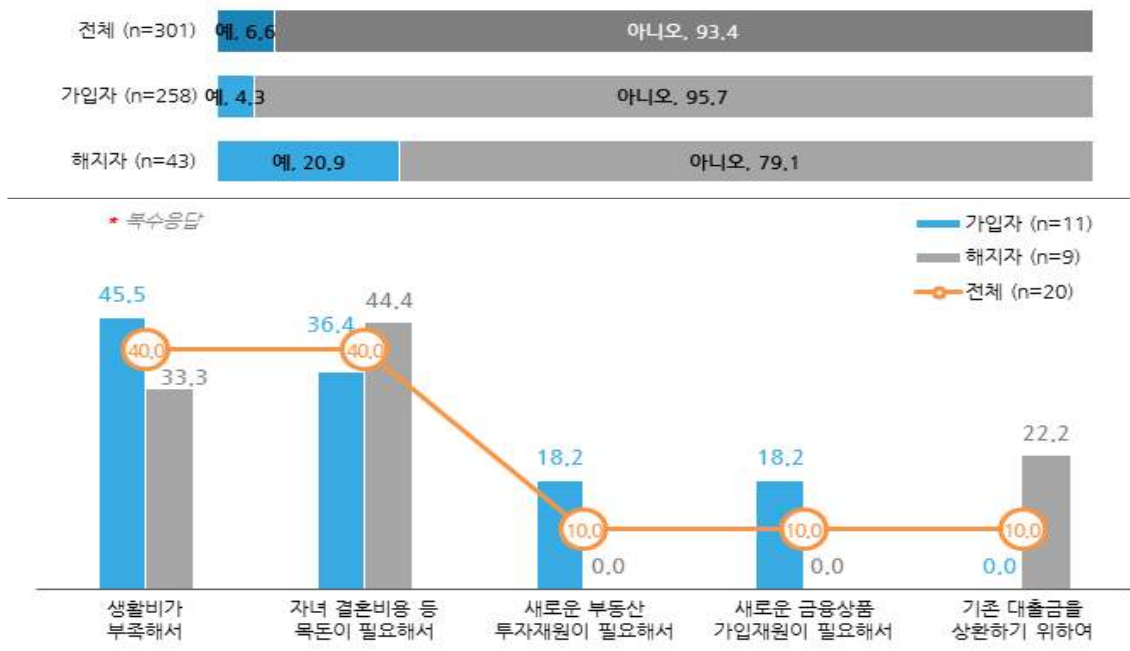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중 중도 인출 경험은 전체 응답자 기준 6.6%로 나타남(가입자 4.3%, 해지자 20.9%), 인출 이유로는 가입자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서’(45.5%), 해지자의 경우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해서’(44.4%)를 주로 꼽음

[부그림 II -1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중 중도 인출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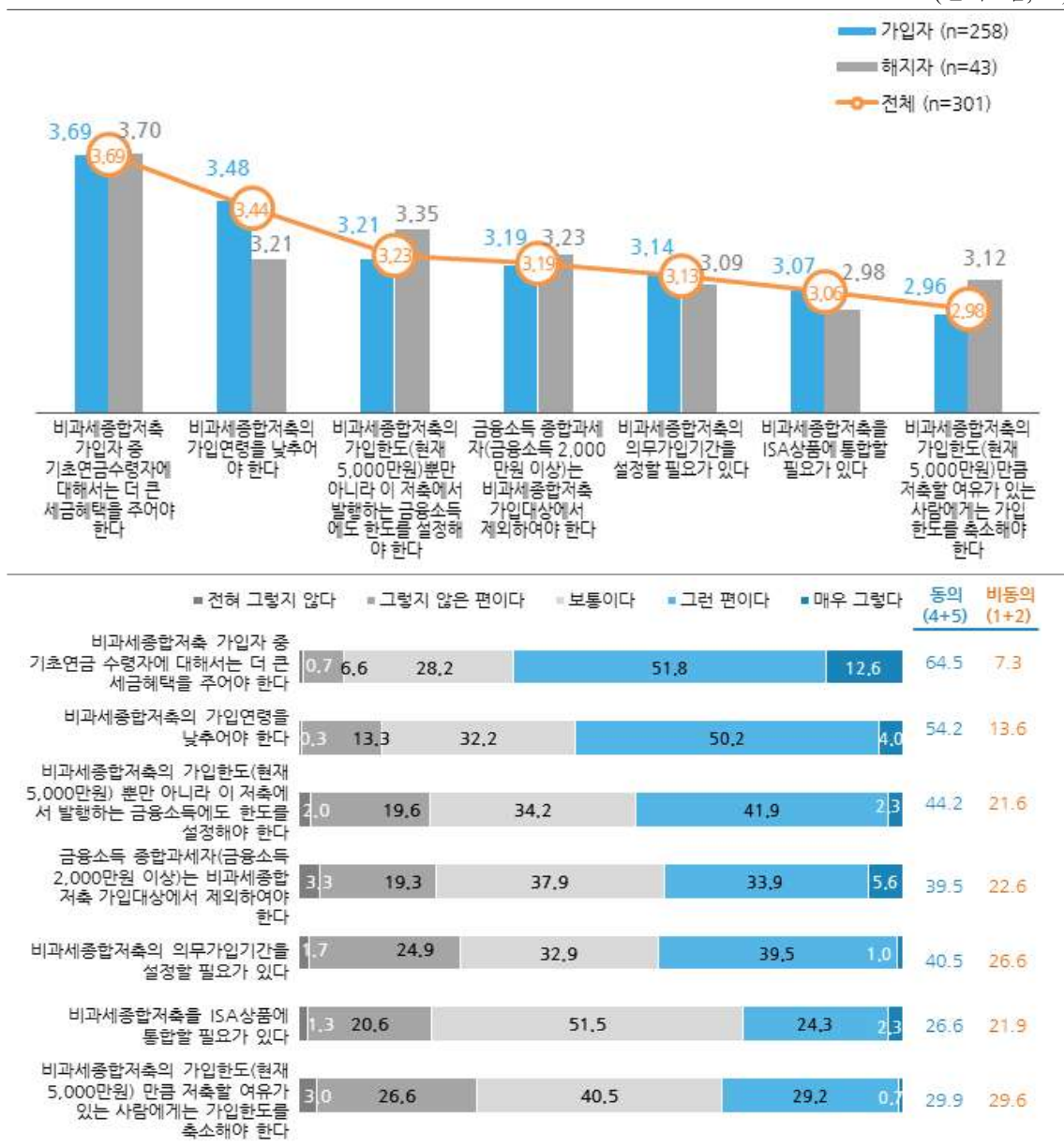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 결과, 가입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초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3.69점),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낮추어야 한다’(3.4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지자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초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3.70점),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한도뿐만 아니라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3.35점) 등의 순임

[부그림 II -12] 비과세 종합저축 개선방향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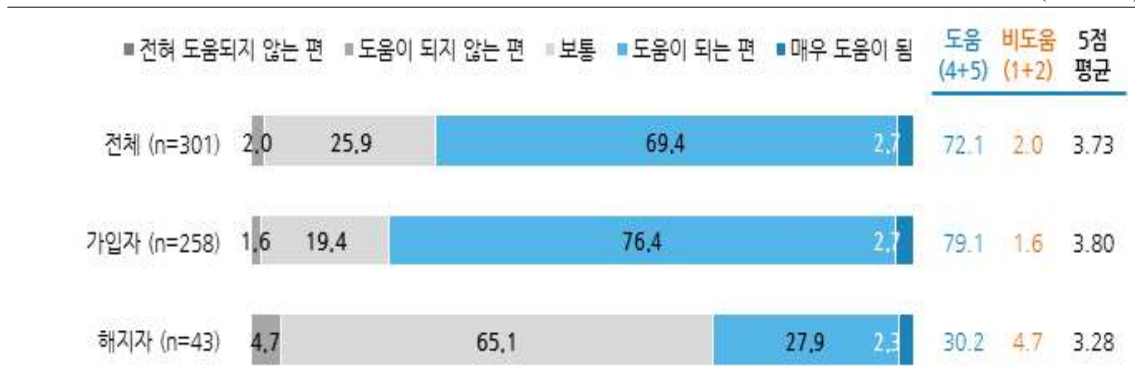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기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72.1%로 나타남(매우 도움이 됨 2.7% + 도움이 되는 편 69.4%)

○ 가입자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79.1%이나, 해지자의 경우 30.2%

[부그림 II -13] 비과세 종합저축의 효용성: 목돈 마련에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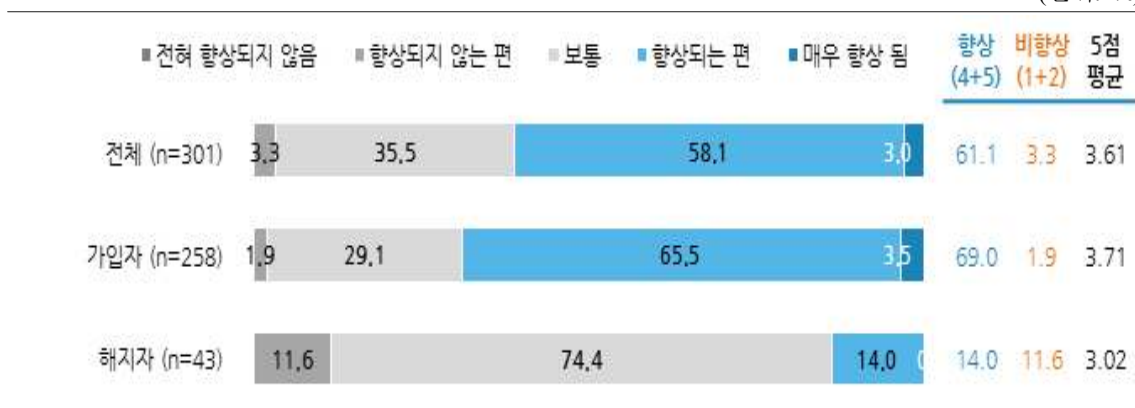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을 통해 본인의 저축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61.1%로 나타남(매우 향상됨 3.0% + 향상된 편 58.1%)

○ 가입자의 경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69.0%이나, 해지자의 경우 14.0%

[부그림 II -14] 비과세 종합저축의 효용성: 저축률 향상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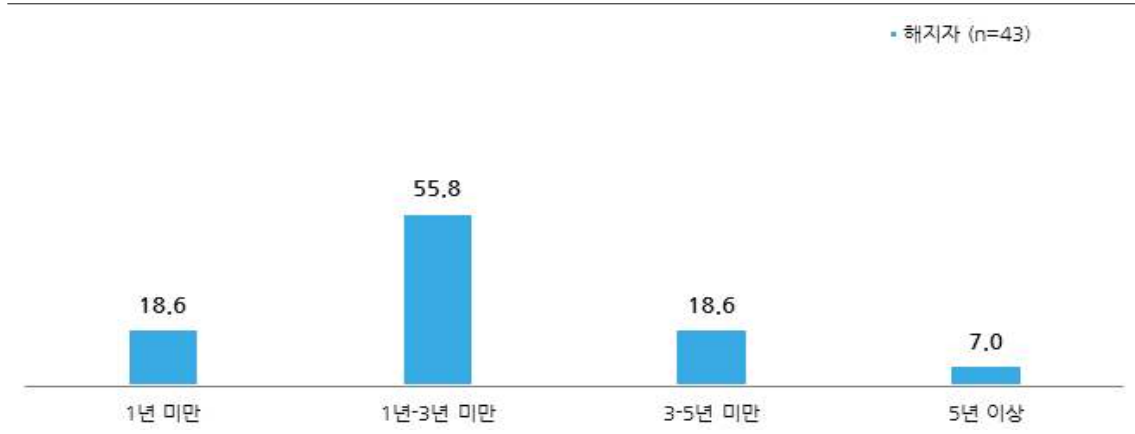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소득 상품 해지 전까지의 가입기간을 살펴보면(해지자 기준), ‘1~3년 미만’이 5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 미만’, ‘1년 미만’이 각 18.6%, ‘5년 이상’(7.0%)의 순으로 나타남

[부그림 II -15]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기간(해지자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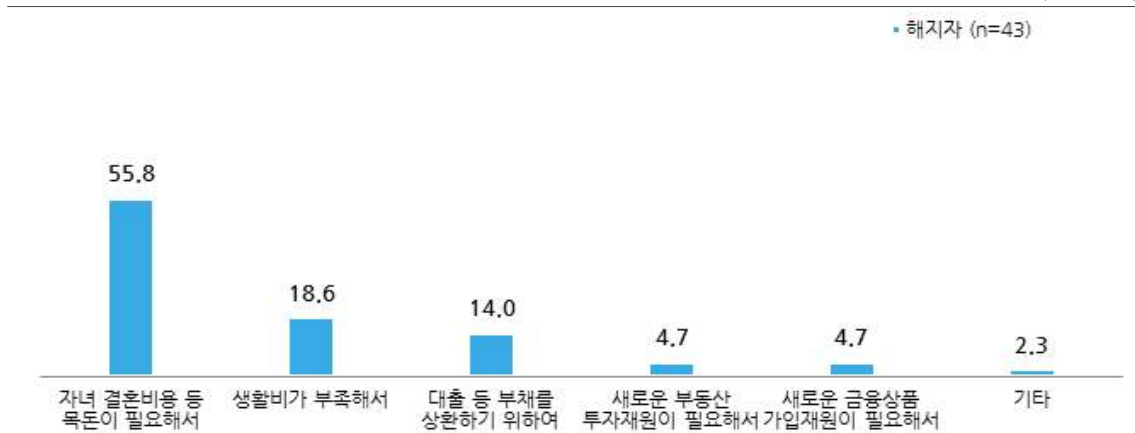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해지자 기준)로는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해서’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18.6%), ‘대출 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14.0%) 등의 순임

[부그림 II -16] 비과세 종합저축의 해지 이유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의 재가입 의향은 86.0%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그림 II -17] 비과세 종합저축의 재가입 의향(해지자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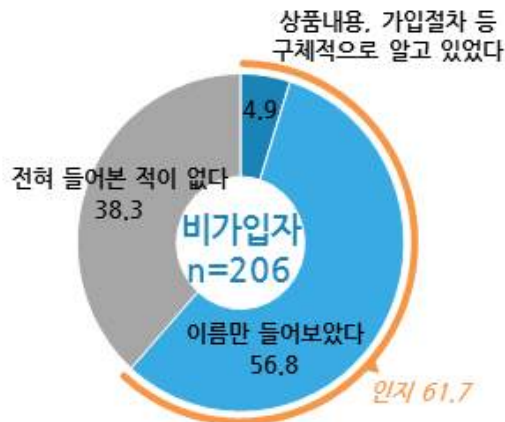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비과세 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 비과세 종합저축 비가입자(n=206)의 61.7%는 본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름만 들어보았다 56.8% + 상품내용, 가입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4.9%)

[부그림 II -18] 비과세 종합저축 인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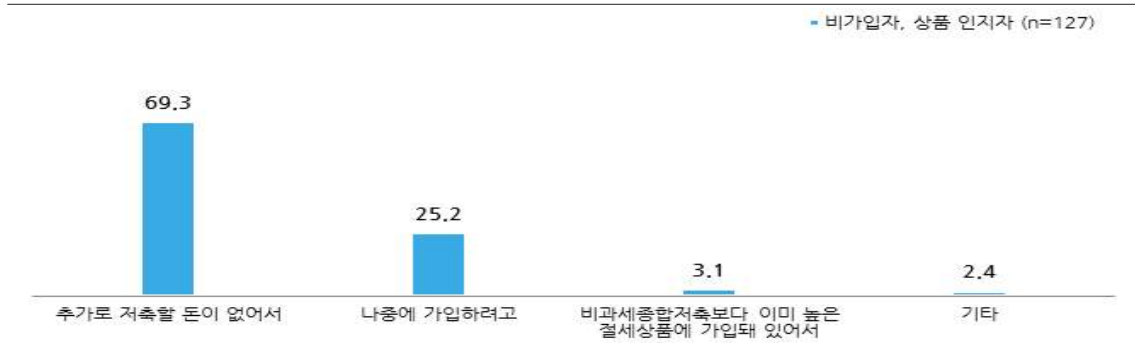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로 저축할 돈이 없어서’가 6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중에 가입하려고’(25.2%)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이 외 항목은 5% 미만으로 나타남

[부그림 II -19] 비과세 종합저축에 비가입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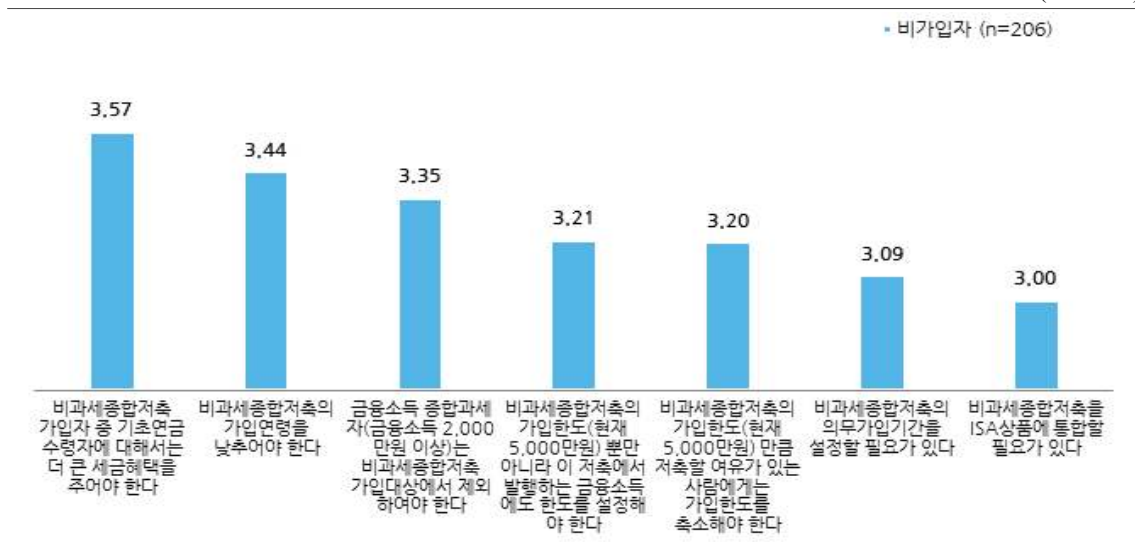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가입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상품의 가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가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낮추어야 한다’(3.44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3.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그림 II -20]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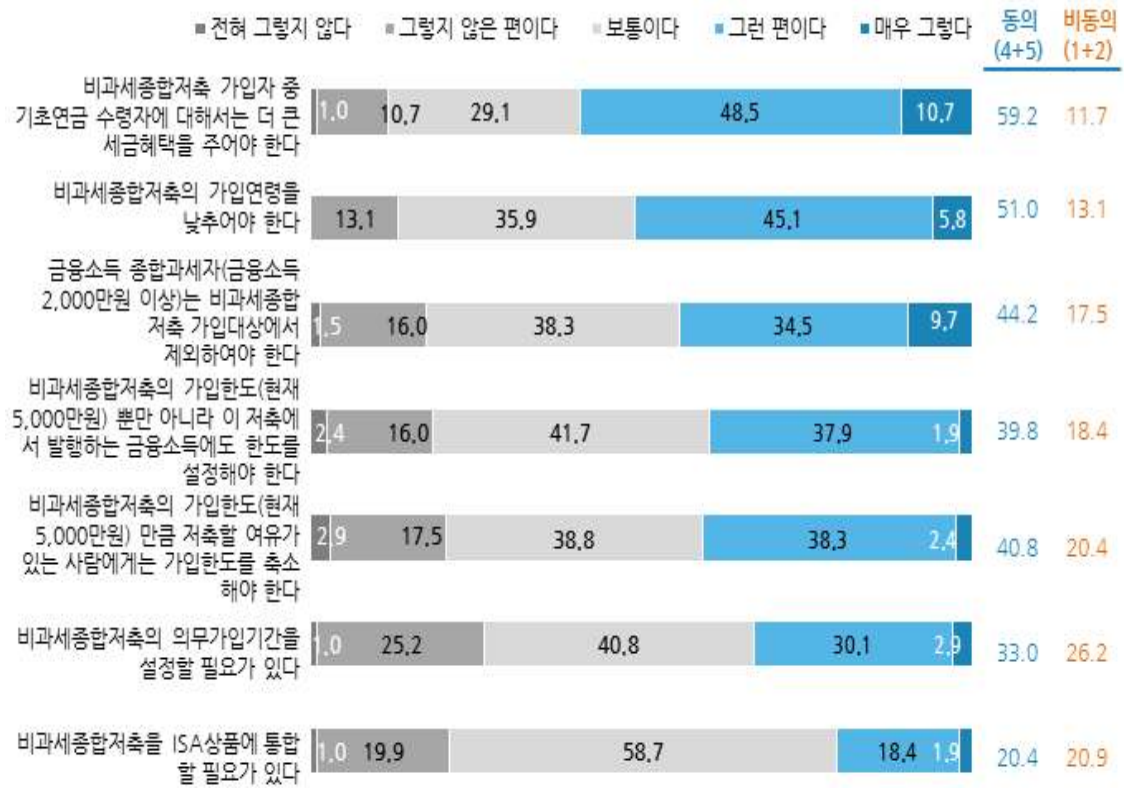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II -21]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2)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